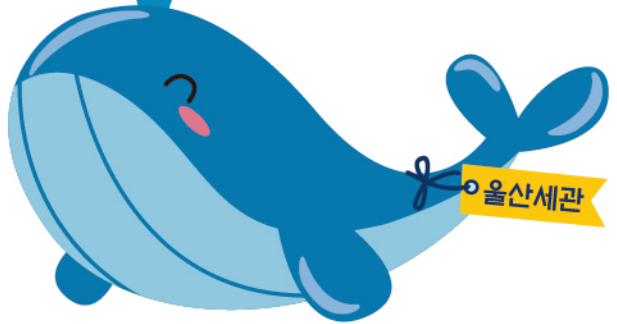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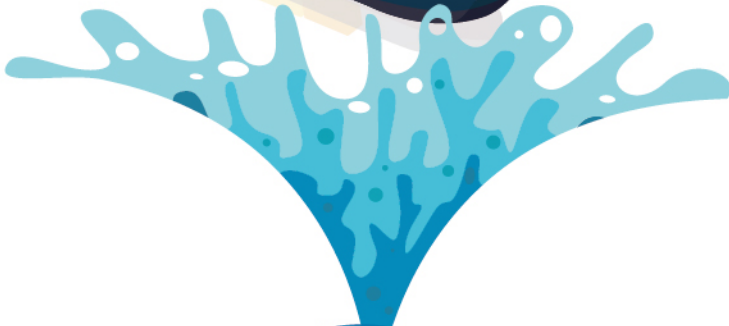


스스로 찾아가는
FTA 단계별
묻고 답하기



스스로 찾아가는
FTA 단계별
묻고 답하기 





안녕하십니까. 울산세관장 김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현재 16개 협정, 55개국과 FTA가 발효되어 있고 내년에는 한영 FTA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또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RCEP(15개국 /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협정 서명 및 남미 최대시장인 MERCOSUR(4개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협상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어, 대외경제규모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환경에서 FTA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의 FTA 수출활용도는 75%에 육박하여 FTA가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및 해외 시장개척 성패를 판가름하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FTA 체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협정관세를 통한 관세혜택 향유 단계를 넘어 적극적으로 FTA 활용전략을 수립해야 하지만, FTA 관련 정보와 수출경험 부족 및 각 협정별 복잡한 절차와 구비 서류 등은 수출기업 FTA 활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수출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보 수출기업부터 FTA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지원 컨설팅 업무담당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스스로 찾아가는 FTA 단계별 묻고 답하기’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부터 원산지 검증까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FTA의 개념, 수출부터 검증까지 협정 단계별 절차,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인증수출자 관련 서류 작성예시, 업무상 의문을 바로 해소할 수 있는 주요 질문사례 등을 수록하여 FTA 활용 흐름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본 책자의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본 책자가 FTA 활용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 수출기업의 교역확대 및 새로운 해외시장 진입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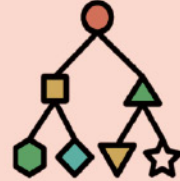
울산세관장 **김정**

FTA 수출부터 검증까지

수출 절차



① FTA체결국 확인



② 품목분류 확인

수입 & 검증 절차



원산지증명서 제출



협정관세 적용신청



결과통보

직접검증 : 조사결과 통보
간접검증 : 수입국에 조사결과 회신



현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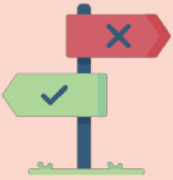


현지조사 예정통지

조사개시 30일 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BOM, 제조공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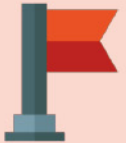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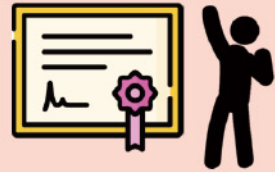
③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④ 증빙서류 제출



⑤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입신고 수리



관세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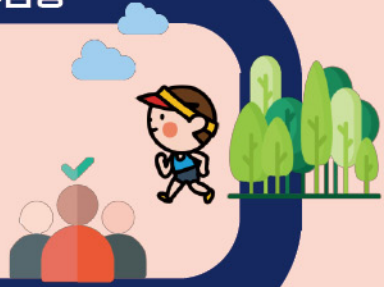
사후검증

직접검증 : 수입국이 직접조사
간접검증 : 수출국에 조사의뢰

서면검증 불충분 시
현지조사 실시



서면조사 통지



조사대상자 선별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 가능

조사개시 7일 전

CONTENTS

I FTA 개요 (7)

II 단계별 확인하기 (11)

III 자주하는 질문사례 (19)

IV 참고 (125)

- 1 원산지증명서 발급 20
- 2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 34
- 3 원산지인증수출자 61
- 4 원산지확인서류 71
- 5 원산지결정기준 81
- 6 협정적용 요건 107
- 7 관련서류 보관하기 121

- 1 서류 작성사례 127
- 2 FTA 용어사전 154
- 3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서식.... 162
- 4 한 눈에 보는 FTA 200

I. FTA 개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FTA 적용 없이는
♡♡무역과 거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OO회사 대표 돈조앙



에이 FTA 요?
다음 수출 건에는
꼭 반영시키겠습니다.
걱정마십시오~!!!

한국 ♡♡무역 대표 이비굴



큰소리는 쳤는데
도대체 FTA가 뭐야...
이 회사가 유일한
수출업체인데

FTA가
먹는 거야 뭐야

어디서 알아보지...?



오지랴
오지랴

으이구~!!!
아직도 FTA를
몰라요?

제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지나가던 세관 직원

들어가기 전에

관세 철폐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FTA적용을
받으면 차별화 되는 게
뭔가요?

원산지 증명 규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원산지결정기준이
뭔가요?



원산지증명서
발행 절차 전반이
궁금해요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양국 또는 지역 간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협정

FTA 체결목적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교역증진
교역물품에 대한 관세 철폐 또는
인하로 수출증대, 국내산업 발전,
고용증대, 소비자 후생 증가 도모

FTA 적용요건

거래 요건, 품목 요건, 직접운송, 원산지결정기준 및 증명절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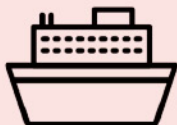
절차요건



-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증빙자료 구비
- 협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칠 것

운송요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양국 간에 직접 운송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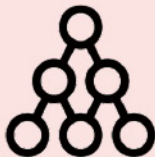
거래요건



체약국 소재 당사자간 거래

원산지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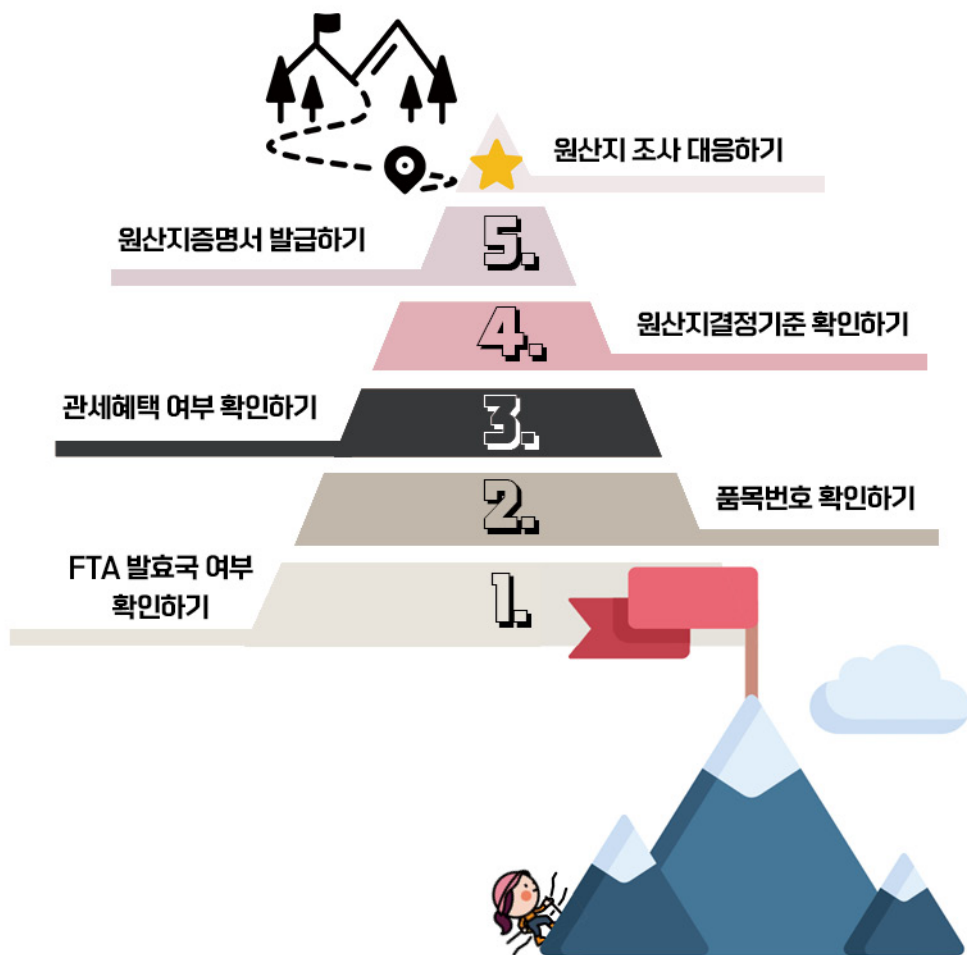
원산지 규정에 의해 원산지가 역내산으로 충족될 것



양허대상으로 지정된 세번에 해당할 것

품목요건

지금부터 FTA 수출활용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해볼까요?



II. 단계별 확인하기



지나가던 다른 세관 직원

1) FTA 발효 현황 ('20. 1. 기준, 16개 협정·56개국 발효)



EFTA(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ASEAN(10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EU(28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핀란드,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몰타,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중미(5개국)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미발효)



한-영국 FTA

유럽연합(EU) 의회에서 영국의 EU 탈퇴를 비준함으로써 영국의 EU 탈퇴 절차가 마무리되어, 우리나라 시간 '20년 2.1. 오전 8시 기준으로 EU를 탈퇴. 하지만 영국과 EU와의 합의에 따라 이행기간인 올해 말까지 한-EU FTA가 지속적으로 적용되며,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1년 1.1.부터 한-영국 FTA가 발효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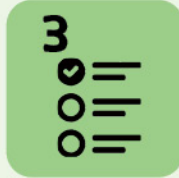
2 품목분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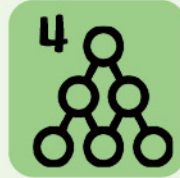
관세사 상담



세계 HS
(품목분류)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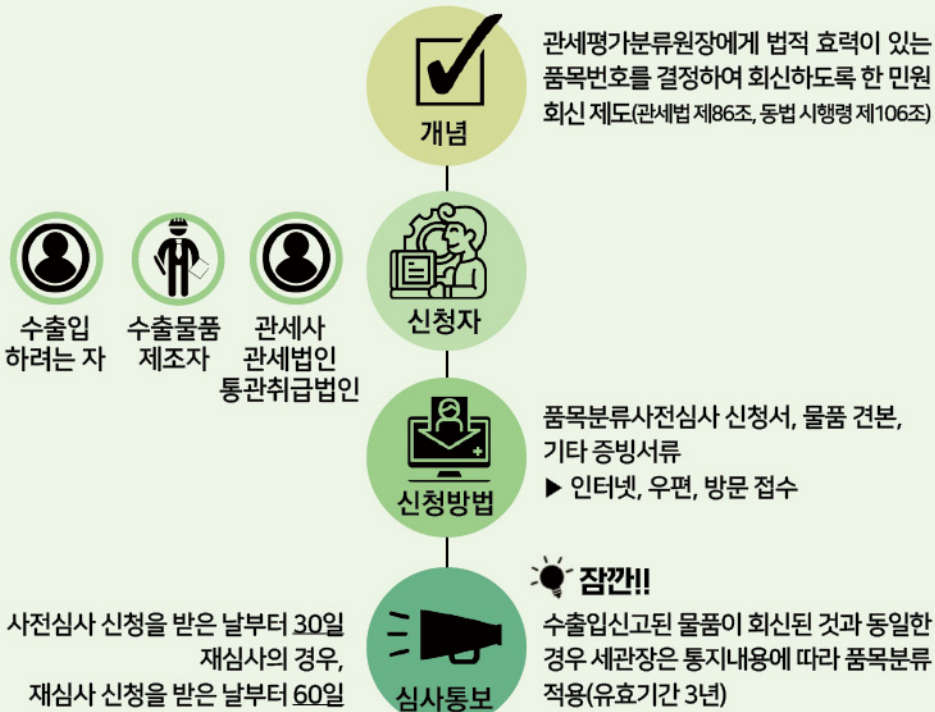
수입당사국
HS 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 인터넷 접수 : UNI-PASS(<http://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신고서 작성)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 우편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우) 34027

3 FTA 관세혜택

관세혜택 = (상대국의 일반세율 - FTA협정세율) × 수출금액

💡 FTA 협정세율과 실행세율의 차이가 없으면 관세혜택이 없는 일반 수출과 동일하므로 원산지 결정기준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세혜택 확인 방법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외국관세율상세(UI-ULS-0201-008Q)

구분기호	관세율	관세구분
MFN	6.5%	최혜국
FTA_CHL	0%	칠레
FTA_PAK	0%	파키스탄
	0%	뉴질랜드
	0%	페루
	0%	코스타리카
FTA_CHE	2%	스위스
FTA_JSL	0%	아이슬란드
FTA_KOR	2.6%	대한민국
FTA_AUS	0%	호주

**MFN(실행세율) 6.5%, 한-중 FTA 협정세율 2.6%
→ 관세혜택 3.9%**

4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



비원산지재료와 상품의 세번이 일정 수준 이상 변경 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부가가치기준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가공공정기준



역내에서 협정이 정한 생산공정을 거쳐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FTA 원산지결정기준 구성(P.157 용어사전 참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FTA포털 접속



FTA 자료실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선택



HS번호 입력

https://customs.go.kr/taoportalkor/ad/ftaTftaPsr/psr.do?mi=3529

FTA 포털

FTA 자료실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FTA 자료실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신체(새 FTA)	칠레 Chile	싱가포르 Singapore	유럽자유무역협정 EFTA	아세안 ASEAN 2012
아세안 ASEAN 2017	인도 India	유럽연합 EU	페루 Peru	미국 USA
타타 Turkey	호주 Australia	캐나다 Canada	중국 China	뉴질랜드 New Zealand
베트남 Vietnam	콜롬비아 Colombia	중미 Central America		

HS코드(HS Code)
 한국 품목명(Korea Item Name)
 영문 품목명(Eng Item Name)

30 폴리에틸렌의 개, 폐품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Polymers of ethylene in primary forms.

국가 Country	품목번호 HS	분류 Division	품명명 Item	원산지기준 Preference Criterion
중미	390110	1	중미(베트남)에서 용이 0.94 이하인 폴리에틸렌 Polyethylene having a specific gravity of less than 0.94	다른 조에 해당하지는 아니함 A change to subheading 3901.10 through 3904.10 from any other heading.

사이트 바로가기

5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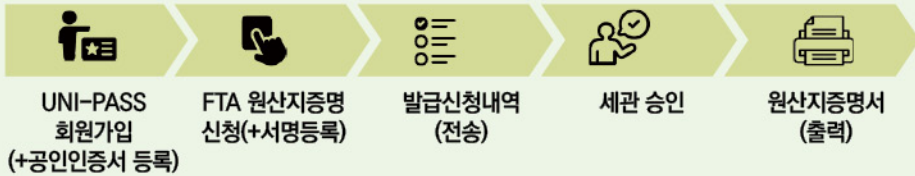


구 분	기관발급	자율발급
정 의	관세당국 또는 기타 발급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	수출자 등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하는 방식
대상협정	한-싱가포르, ASEAN, 인도, 중국, 베트남	한-칠레, EFTA, EU, 터키, 페루, 콜롬비아,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미
발급주체	세관, 상공회의소	수출자 등 협정에서 정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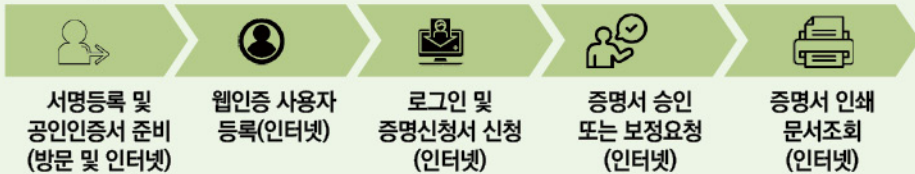


기관발급

▶ **세관에 발급 신청시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
(<http://unipass.customs.go.kr>)



▶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신청시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http://cert.korcham.net>)



※ 원산지증명센터 : 무역인증안내 ▶ 원산지증명서 ▶ 신청 및 발급절차 메뉴 참고



자율발급



6 원산지 조사는 무엇인가요?

‘원산지 조사’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을 조사하는 업무입니다.



조사대상

1. 수입자, 수출자·생산자(계약상대국 수출·생산자 포함)
2.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3. 당해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 (계약상대국 거주자 포함)
4. 당해 물품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 FTA 관세특례법은 ‘원산지 조사’ 협정은 ‘원산지 검증’으로 규정



주요확인사항

1. 형식적 요건 (발급주체·유효기간 경과여부·기재사항 누락)
2. 거래당사자 요건
3. 양허대상 품목 및 적용세율 적정성
4.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운송요건 충족 여부



진행방식

직접검증(미주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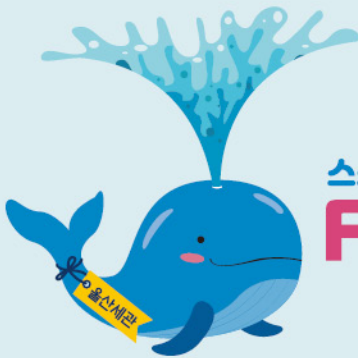
수입국 세관이 해외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검증

간접검증(유럽형)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의 요청을 받아 자국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하며 수입국 세관 참관 가능

서류보관의무

수출자 및 생산자 : 원산지증명서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단, 계약상대국이 중국인 경우 3년간 보관



스스로 찾아가는

FTA 단계별

문고 답하기

Ⅲ. 자주하는 질문사례



1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및 신청서류

? 제조회사로부터 한국제품을 구매하여 추가 가공없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무역회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구체적인 서류는 무엇인지, 또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가 이 서류를 작성해도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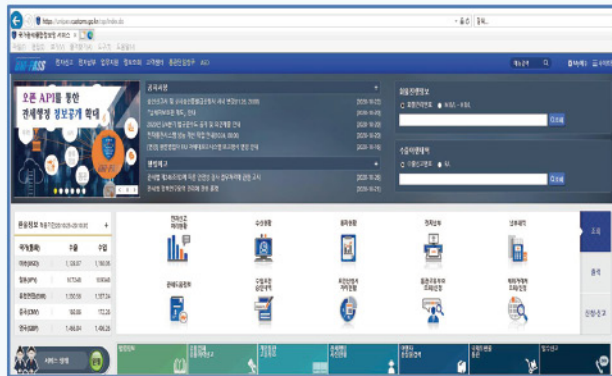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수출신고수리필증, 송품장(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 결정기준에 따라 상이), 국내제조확인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원산지확인서는 생산자(공급자)가 작성합니다.
- 원산지소명서는 생산자가 원산지 명세, 생산 원가 등을 제공해 주면 수출자가 작성해도 무방하나, 영업비밀 등에 의해 자료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생산자가 작성하여 증명서발급 기관(세관, 상공회의소)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유니패스 HOME



전자신고



신고서 작성
'클릭'



FTA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관련규정

■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를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 다. 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계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FTA 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① 규칙 제10조제2항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 (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3. 규칙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
 4. 규칙 제13조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
 5.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 ② 제26조 제5항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 간이발급대상 물품의 경우 규칙 제13조의 국내제조(포괄) 확인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17.12.29.>
1. 공급물품명세 '주요 생산공정'란에 '간이발급대상물품' 문구를 추가로 기재
 2. 재료명세 중 '품목번호·원산지재료 해당여부·가격' 내역은 기재 생략 가능

원산지증명서 신청기한(1년 이내 소급발급 가능)



안녕하세요. 이번 인사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9.16일 인도 수출물품을 수출신고하고 선적하였는데 언제까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해야 하나요?



- ▶ 원칙 : 선적이 완료되기 전 발급 신청
- ▶ 부득이한 경우 : 수출물품의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급발급" 문구를 기재하여 발급)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스탬프]

협정	기준일	소급발급 문구
한-인도 (C/O 6번란)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후(선적일 포함)	"ISSUED RETROSPECTIVELY"
한-싱가포르 (C/O 15번란)	-	"ISSUED RETROACTIVELY"
한-아세안 (C/O 12번란)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후(선적일 포함)	
한-베트남 (C/O 12번란)		
한-중국 (C/O 5번란)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후(선적일 미포함)	

※ 협정별 소급발급문구 날인 기준일 이전 발급 시 선적 전 발급 가능

관련규정

■ FTA 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

1.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싱가포르와의 협정) : 15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3.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인도와의 협정) : 제6란(Remarks)에 날인
4. 규칙 별지 제22호서식(베트남과의 협정) :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5.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중국과의 협정) : 제5란(Remarks)에 날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지 아니한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한다)에 발급하는 경우
2. 인도와의 협정 :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3. 베트남과의 협정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4. 중국과의 협정 : 선적일 후 7 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소급발급" 문구를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하여 발급한다.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저희는 중국으로 기계를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확인해 보았더니 소급발급문구가 누락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급발급문구가 미기재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 ▶ 한-중 FTA에서는 협정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에 사소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정정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규정된 바와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제3국 발행 송장정보·소급발급 문구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FTA 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① 제33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 수리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의 착오,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또는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시에는 정정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정발급 신청 사유서
 4.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정정발급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정정발급 할 수 있다.
- ④ 규칙 제10조제11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이미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일자는 본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 한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2. 베트남과의 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HS번호



저희 회사에서 태국으로 수출하는 물건을 HSK 제3921.19-1090호로 수출신고 하였습니다. 수출신고한 HS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려고 하는데 태국에서 수입국 기준인 제3921.19-90호로 요청하였습니다. AK Form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신청 시 수입국 HS번호로 발급 가능한가요?
또, 이런 경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 ▶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할 경우 수출신고서에 입력하는 HS번호와는 별개로 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당해품목에 대한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① 수입신고필증
 - ② 품목번호 확인서
 - ③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 ④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 ⑤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규정된 품목임이 입증되는 해당 국가 정부기관 홈페이지 등록정보 등
 - ⑥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HS번호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협정상대국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만 충족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 수출자는 협정상대국에서 수출국 HS번호로 원산지검증 요청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협정상대국 HS번호로만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면 가능)
 - ▶ 위 언급된 정부 공식의견서의 서류로 HS번호가 다름이 확인되고 우리나라 HS번호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품목에 대해 협정상대국 HS번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협정상대국의 HS번호로 추가 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2020. 8. 4)

1.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 1)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 2) 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는 당해품목에 대한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수입신고필증
 - 나) 품목번호 확인서
 - 다)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 라)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 마)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3) 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의 제출 관련,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신청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 C/O 발급번호를 기재*하여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 다만, 동일물품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제출 필요(2017.6.12. 신설)

* (세관) '메모' 란, (상공회의소) '발급기관 전달사항' 란

<예시>

동 물품은 2017년 0월 0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발급번호 : 0000-00-0000000, 발급코드 : 0000-0000) 시 상대국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한 물품과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이므로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함

- 4) 위 1)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HS번호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다만, 협정상대국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만 충족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되, 수출자는 협정상대국에서 HS번호를 수출국 HS번호로 변경하여 원산지검증 요청 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위험이 있어 주의 필요(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협정상대국 HS번호로만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면 가능)(2018.7.9. 신설)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 1) "1-가-2)"에서 정한 서류로 HS번호가 다름이 확인되고 우리나라 HS번호로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품목에 대해 협정상대국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협정상대국 HS번호로 추가 인증 처리(2020.8.4. 개정)

세관 및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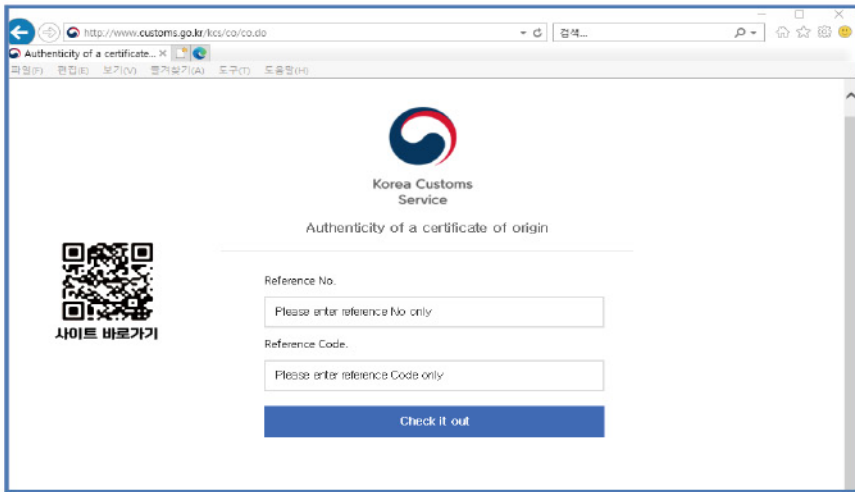


베트남으로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았습니다. 베트남 수입자가 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인터넷에서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요?



▶ 세관 및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방법입니다.

1. 원산지증명서 상단 우측의 QR코드 스캔하여 해당 페이지 이동 후 확인
 - ※ QR코드 스캔시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ID(Reference No.) 및 PW(Reference Code.) 자동 입력
2. 원산지증명서 하단에서 안내하고 있는 사이트로 이동하여 확인
 - ※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조회 : www.customs.go.kr/co.html
 - Reference No. 및 Reference Code.는 원산지증명서 상단 QR코드 아래에서 확인



▶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방법입니다.

1.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조회화면 및 ICC 원산지증명서 조회화면에서 확인
2. 특혜 원산지증명서 및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조회화면에서만 확인 가능
 - ※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조회 : <http://cert.korcham.net/search/index.htm>
 - ※ ICC 원산지증명서 조회 : <http://certificates.iccwbo.org/>

중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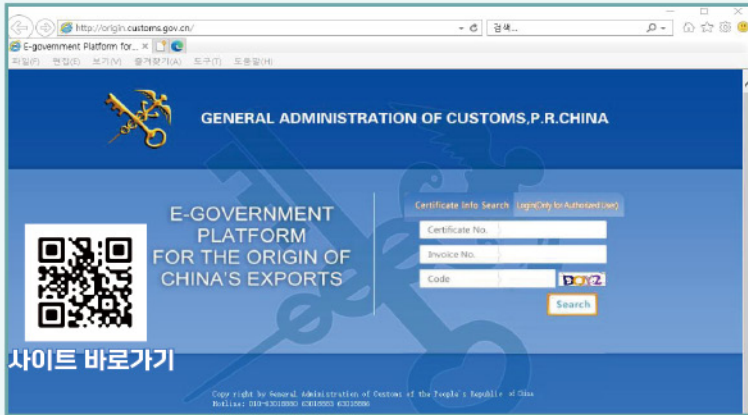


저희 회사는 중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올해 수입 건부터는 원산지증명서를 받기로 했는데 한-중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EODES) 외에 인터넷에서 원산지증명서 진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요?



- ▶ 중국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해관총서(GACC)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있습니다.

※ 해관총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확인 : <http://origin.customs.gov.cn>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발급 원산지증명서 확인 : <http://check.ccpiteco.net>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시 구비서류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구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활용 가능한 시스템이 있나요?



- ▶ 한-EU FTA에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물품의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소명서를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자재명세서(BOM), 원가계산서, 제조공정도 등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서류 및 원산지확인서(재료 또는 최종물품)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또한 검증에 대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관련서류 및 해당물품이 생산되어서 수출되기까지의 일체의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보관하여야 합니다.
- ▶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위해 관세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www.ftypass.or.kr) 시스템을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와 연계하여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 시 편의성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관련규정

■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①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11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자율발급 양식(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이탈리아로 수출예정인 업체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수 계약 조건이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상공회의소에 물어보니 한-EU FTA는 기관발급이 아닌 자율발급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발급하여야 하는지요?



▶ 한-EU* FTA에서는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서명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자율증명방식)

* EU :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 선사에서 발행한 B/L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 가능한 상업서류로 불인정

▶ 원산지신고서 문안 - 영어 본(예시)

- 원산지신고서는 영어 이외에도 23개 EU 체약국 언어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됩니다.(다만,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인증수출자번호' ^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 ^② preferential origin.

장소 및 일자 ^③

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 ^④

- ①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 기재하며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생략하거나 빈칸으로 작성
- ② 원산지 판정 결과 한국산인 경우에는 "KR", "KOREA" 또는 "THE REPUBLIC OF KOREA" 라고 기재
(참고)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하나의 인보이스 상에 혼재된 경우
- 원산지를 구분해서 표기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인보이스 상 물품별로 원산지를 표기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로 만들거나 한국산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만 별도로 나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합니다.
- ③ 해당 서류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표시 생략 가능
- 상업송장에 발행일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생략 가능
- 상업송장 발행일자와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기재
- ④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생략 가능



이번에 폴란드 바이어와 계약이 체결되어 하반기에 저희 제품을 폴란드로 수출할 예정입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가능한가요?



- ▶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6,000유로 초과 : (원칙) 송품장의 물품가액 기준
(예외) 단일탁송화물에 여러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서류에 표시된 물품가액 기준

관련규정

■ 한-EU FTA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 가. 인증수출자 또는
-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원산지증명 일반 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4. 원산지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독일 소재 거래처에서 원산지신고서를 받아서 확인했더니, 원산지신고문안에서 원산지국가 기재 란에 'CE'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 ▶ 귀하가 제시한 원산지신고서의 국가 기재 란에 기재된 'CE(Conformity European)'는 EU와 EFTA 국가에 적용되는 유럽공동체인증 표시로 EU 국가를 의미하는 표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 ▶ 따라서, 원산지신고서의 원산지국가 기재 란에 'CE'가 기재된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의 정정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 원산지신고문안의 '제품의 원산지표기' 관련 사항(2011.7.12.)

(1) 원산지신고문안의 '원산지표기' 인정범위

-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예)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EUROPEAN UNION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예) Greece, England, Scotland, Wales
- 당사자 국가의 ISO 코드 (예) GR, GB, DE, IT
- 'EU' 표기, 'EC' 및 'European Community' 표기
- 원산지가 영국인 제품 : 'UK' 표기 (협정문상 표기된 약어)
- 당사국의 형용사 표기 (예) Danish, German, Italian, French
- EU측 각 당사자 언어 협정문에 표현된 'EU' 표기

언어종류	'EU' 표기 (원어)	약어표기
스 페 인	Unión Europea	'UE'
프 랑 스	l'Union européenne	
이 탈 리 아	dell'Unione europea	
폴 란 드	Unii Europejskiej	
포르투갈	União Europeia	
루 마 니 아	Uniunii Europene	'ES'
말 타	tal-Unjoni Ewropea	
라 트 비 아	Eiropas Savienības	
리투아니아	Europos Sąjunga	'EE'
그 리 스	Ευρωπαϊκής Ένωσης	
불 가 리 아	Европейския съюз	'EC'

(2) 원산지표기 이외에 다른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원산지표기'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다른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 (예) EEC/Germany, Europe/FR/EU

(3)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혼재된 경우

- ②란 '제품의 원산지'에는 원산지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비원산지 제품은 구분될 수 있도록 해당 서류에 달리 명확하게 표기 ※ 구분 표기하는 방법은 제한 없음

자율발급 양식(한-미국 FTA 원산지증명서)



한-미 FTA는 원산지증명서 양식이 별도로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당사는 기계 부품 등을 미국 법인으로 수출하는데 당사가 발행하는 인보이스 상에 COUNTRY OF ORIGIN : KOREA로 표기하고 별도의 원산지양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무관한지요?



▶ 한-미 FTA 적용을 위해서는

- ①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 물품일 것
- ② 동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③ 동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 ④ 직접운송원칙 충족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원산지증명서에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5조제8항에 따라 다음의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① 작성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② 수입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수출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 ④ 생산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⑤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6단위) 및 품명
- ⑥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⑦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⑧ 작성일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에는 협정에서 정한 상기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Made in KOREA'가 아닌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또한, 우리나라는 국내법령에 '표준양식(권고서식)'을 만들어 업체가 쉽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조 : 관세청 FTA 포털(<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 > FTA 자료실 > FTA 서식모음 > 원산지증명서 발급 > [별지 17]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권고서식의 작성요령을 문의 드립니다.

1. 원산지포괄증명기간 : 동일한 물품을 계속 수출할 경우 포괄증명기간(12개월) 동안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생산자와 수입자 :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serial no. : 기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 수량 및 단위 : 원산지포괄증명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량 및 단위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5. 서명권자의 서명 : 서명카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지요?



-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이 한-미 FTA에 의하여 특혜 관세 적용 품목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인지 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1번 :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가능합니다.
2번 : 아는 경우에 기재하고, 모르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3번 : 예를 들면 1. 2. 3. ... 등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4번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에서 포괄증명의 경우에는 “Quantity & Unit(수량 및 단위)”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포괄증명이 아닌 경우 “수량 및 단위”는 수출입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5번 :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발급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서명할 자를 지정하여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서명권자는 서명카드에 등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한-미국 FTA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2. 각 당사국은 증명이 정하여진 형식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을 규정한다. 다만, 그 증명이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되어야 하며, 다음 요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가.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 증명인의 성명
 - 나.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라.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마.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 바. 상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사. 증명일, 그리고
 - 아. 제4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
- [참고 : 우리나라는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정형화된 권고 서식용 마련 운영]

2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와 인보이스 발행일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신고서의 유효기간의 기산일자를 알고 싶습니다.



- ▶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 인도증서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 발행하고, 수출당사자가 발급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한 것으로 협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 ▶ 원산지신고서 발행시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와 인보이스 발행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작성일자 생략이 가능하고 다른 경우에는 기재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가 인보이스 발행일자와 다른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를 원산지신고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 또한,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정	증명방식	증명서식	유효기간
칠레	자율발급	통일서식	서명일부터 2년
싱가포르	기관발급	각자 증명서식	발급일부터 1년
EFTA	자율발급	송품장 신고방식	발급일부터 1년
아세안	기관발급	통일서식(AK Form)	발급일부터 1년
인도	기관발급	통일서식	발급일부터 1년
EU	자율발급	송품장 신고방식	발급일부터 1년
페루	자율발급	통일서식	발급일부터 1년
미국	자율발급	자율(권고서식)	발급일부터 4년
터키	자율발급	송품장 신고방식	발급일부터 1년
호주	자율발급 (호주 : 자율/기관)	표준(권고)서식	(기관)발급일/(자율)서명일부터 2년
캐나다	자율발급	통일서식	서명일부터 2년
중국	기관발급	통일서식	발급일부터 1년
베트남	기관발급	통일서식	발급일 다음날부터 1년
뉴질랜드	자율발급	송품장 신고방식/권고서식	서명일부터 2년
콜롬비아	자율발급	통일서식	서명일부터 1년
중미	자율발급	통일서식	서명일부터 1년

한-중국 FTA 원산지증명서



동일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와 APTA 원산지증명서 동시에 발급 가능하지요?



- ▶ 동일한 물품이라도 협정이 다른 경우 각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수입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할 때는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선택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한-중국 FTA

제3.17조(특혜관세대우의 신청)

나. “가”호에 언급된 수입 신고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한다.

■ APTA 부속서II

제7조(원산지증명서)

특혜양허를 받고자 하는 상품은 수출 참가국 정부에 의해 지정된 기관에 의해 발행되고, 첨부된 원산지증명서 견본 및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다른 참가국에게 통보된 원산지증명서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수출신고서 란별로 구분하여 한-중 FTA와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한가요?



- ▶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서명합니다.
 - 수출신고서는 품목번호 또는 품목별로 별도의 「란」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따라서, 수출신고서의 「란」별로 구분하여 한-중 FTA와 APTA 원산지증명서를 신청·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 1란은 한-중 FTA, 2란은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관련규정

■ FTA 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 ①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을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발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 :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
2. 수출신고한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
- ③ 체약상대국과 두 개 이상의 협정을 체결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마다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여러 가지 부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하는데, 모델·규격이 전부 다른 경우 작성요령이 어떻게 되나요?



-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물품은 상품 송장의 모델·규격별로 각 란에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20란을 초과하는 경우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최대 20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HS번호가 같더라도 모델·규격이 다른 경우 란을 달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 <시행 전> 제3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합의('20.8) : C/O 기재 품목수 확대(중전 20개→50개)

관련규정

■ 한-중국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제6란 : 물품의 연번을 기재하며, 물품의 연번은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란 : 포장의 수량 및 종류를 명시한다. 각 상품의 물품명세를 제공한다. 물품명세는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상품을 식별할 수 있고, 그 상품을 송장 물품명세 및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물품명세와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상품이 포장되지 아니하는 경우, "IN BULK"를 기재한다.



여러 개의 인보이스를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로 발급 시 일부 인보이스 번호는 원산지증명서의 제12란(송장번호 및 일자)에 기재하고 나머지는 다른 란에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그리고, 한-중 FTA에는 사용할 수량 단위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 한-중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인보이스 번호는 제12란(송장번호 및 일자)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다만, 여러 개의 인보이스로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제12번 란에 모든 인보이스 번호를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다른 란에 기재하여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한-중 FTA에서는 사용할 수량 단위를 양국 간 합의에 의해 따로 정하고 있어, 반드시 합의된 수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한-중국 FTA 원산지증명서 수량 단위 입력 유의사항(16.12.5.)

연번	수량단위	수량단위 정의(영문)	수량단위 정의(국문)	금지되는 유사표기 예시
1	2U	Pair	쌍, 켈레, 족	PA, PAI
2	BAG	Bag	가방	BG, BA
3	BLL	Barrel	배럴	BA, BAL
4	BOX	Box	박스	BX
5	BTL	Bottle	병	BO, BOT, BV
6	CAN	Can	캔	CA
7	CT	Carton	카톤, 케이스	CTN, CS, BR
8	DRM	Drum	드럼(drum)	DR, DM
9	DZ	Dozen	더즌(dozen, 12개)	DZN
10	EA	EA	개	
11	GLI	UK gallon	갤런(4.54062 dm3, UK)	
12	GLL	US gallon	갤런(3.74581 dm3, US)	
13	GR	Gram	그램	GRM
14	GT	Gross Ton/long ton	그로스 톤, 롱톤	
15	KG	Kg	킬로그램	KGS
16	KMT	Kilometer	킬로미터	KM, KT, KL
17	L	Liter	리터	VI, LT, LTR
18	LBR	Pound	파운드	LB, PN
19	M	Meter	미터	MTR
20	M2	Square meters	square meters(제곱미터)	SM
21	M3	Cubic meter	입방미터	CBM
22	PC	Piece	피스(Piece)	PCS, PCE, PSC
23	PKG	Pack, Package	팩키지(Package)	PK, PH
24	RL	Roll	롤(Roll), 코일(Coil)	RO, CL, CX, ROL, LAN
25	SET	Set	세트(Set)	ST
26	SF	Square feet	제곱피트	
27	SH	Sheet of Paper	매	
28	TNE	Metric ton	1,000Kg(Metric Ton)	MT, TN
29	TU	Thousand unit	천개	
30	U	A unit	개,본,매,두,필,대,량,기,척,착,갑	UN, 1B, MR, NO, PL, OU
31	YD	Yard	야드	

※ 유의사항

1. 국·영문 수량단위 정의를 참조하여 수량단위 입력
2. 유사표기방법으로 예시된 수량 단위는 사용할 수 없음
3. 수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수량단위가 없는 경우 예시된 수량코드로 환산하여 입력

예시 : ① 100CM → 1M, ② 100V(10,000ml) → 10L

 중국으로 전기자전거를 수출할 예정입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 HS번호를 확인하니 제8711.60호였는데 한-중 FTA 협정문에 해당 HS번호가 없습니다. 찾아보니 그 당시에는 HS2012 기준으로 협약이 체결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면 될까요?



▶ 한-중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9번란(HS Code)에는 HS2017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합니다. 10번란(Origin Criterion)에는 HS2012에 기초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명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 예시]

품명	HS코드	C/O상 HS코드(9번란)	원산지결정기준(10번란)
전기자전거	(HS2012)8711.90→ (HS2017)8711.60	8711.60	PSR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9번란(HS코드) : HS2017에 따른 HS번호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10번란(원산지기준) : HS2012에 기초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HS2017 → HS2012 연계표 활용하여 HS2012 매칭)
- 2017년 1월 1일 이후 발급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부터 적용

관련규정

■ **협정별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의 적용기준**

1) 협정별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구 분	PSR 현재기준
인도, EU, 페루, 터키, 뉴질랜드	HS2007
칠레, 싱가포르, EFTA,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HS2012
아세안	HS2017

2)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 기재요령

- 한-중국 FTA : HS2017
- 이 외의 기타 협정 : 각 협정별 기준에 맞는 기준연도를 적용하여 작성

3) 수출입신고 기준 : HS2017

※ HS 6단위 연계표는 FTA 포털(<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 > 공지사항을 참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의 제8란(원산지기준)에 부가가치기준 기재시 실제 부가가치 비율(RVC 85%)과 원산지기준(RVC 40%) 중 어느 것을 기재하나요? 만약 원산지기준이 완전생산기준(WO)인데 원산지증명서의 제9란[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에 FOB가격을 기재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한가요?



- ▶ 원산지상품의 원산지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8란 (원산지기준)에는 원산지기준 충족에 필요한 "RVC"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RVC를 기재하여도 인정 가능합니다.
 - 원칙 : RVC 40%, 예외인정 : RVC 85%(실제부가가치 비율)
- ▶ 한-아세안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원산지증명서의 제9란에 FOB가격은 원산지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그러나, 원산지기준이 완전생산기준인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FOB가격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수의 제조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한 건으로 수출신고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도 한 건으로 발급 가능한가요?



- ▶ 「FTA 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신고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제조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여 하나의 수출신고서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 기준으로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FTA 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 ①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을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발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 :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
2. 수출신고한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 수출 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
- ③ 계약상대국과 두 개 이상의 협정을 체결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마다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입통관 당시 C/O가 없는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으로 수출하면서 FTA 적용을 받지 못하고 통관하였는데, 혹시 필리핀에도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한지요?




- ▶ 한-아세안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은 가능하나 FTA 사후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당사국들의 국내법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 ▶ 우리나라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하나, 각 체결국별로 사후적용 가능 여부가 상이하므로 각 나라별로 협정관세 사후신청 규정이 있는지 사전확인 필요합니다.
- ▶ 한-아세안 FTA 10개국의 특혜관세 사후신청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Country	Applicable Period	Conditions of the treatment
브루나이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신고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사후신청 의사표시
캄보디아	소급기간 없음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인도네시아	소급기간 없음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라오스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 시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의사표시 수입자는 지급해야 하는 관세와 세금에 대한 보증금 120% 납부
말레이시아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
미얀마	소급규정 없음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리핀	수입일 이후 6개월 이내	수입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 MFN 세율과 AKFTA 협정세율간의 차이에 상응하는 사후보증서* (Post guarantee bond) 제시 * 수입 후 6개월 내에 원산지증명서가 제시되면 이 보증서는 취소, 미제시 되면 보증서 몰수
싱가포르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 특혜관세 사후신청 및 적용 이후에 수입자에게 관세 환불
태국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
베트남	수입신고 후 30일 이내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


- ▶ 참고로 한-중 FTA 특혜관세 사후신청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으로 수입 시에는 수입신고시 사후적용 의사표시를 하고, 실행세율과 협정세율간의 차이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수입일 후 1년 이내)

한-아세안 FTA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

 한-아세안 FTA에 따른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합니다. 중간 경유로 한국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보세상태로 신청해야 하는지 수입통관 후 발급 가능한지 여부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한-아세안 FTA에서는 연결원산지증명서는 최초수출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당사국에 의해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로 보세상태 또는 수입신고수리 후와 관계없이 경유국에서 발행될 수 있으나,
- ▶ 최초 원산지증명서상의 물품과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물품이 동일하여야 하고 수입신고수리 후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는 중간경유국에서 추가가공이 없는 경우 발급 가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또한,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경유국에서의 수입자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해야 하며, 이 경우 최초의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태국(A社)-한국(B社)-태국(C社)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태국 A사가 발행한 AK FORM을 근거로 한국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 발급 가능한가요?



- ▶ 원산지증명서 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은 한-아세안 FTA 협정문 및 협정당사국(한국, 아세안 10개국)간 합의한 내용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국으로부터 특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 한-아세안 FTA 연결원산지증명서는 최초 수출국과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중간 경유국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로 우리나라에서 최초 수출국으로 다시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관련규정

■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2. 중간 경우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물품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수출자/생산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가.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것
 - 나. 중간 경우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우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할 것
 - 다. 제14조에 규정된 검증절차가 적용될 것

■ 한-아세안 FTA 연결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지침('17.3.14)

- 연결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산정 기준
 - 최초 수출국 C/O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 산정

- 기재 방법
 - 연결원산지증명서 7번란(포장·품명·규격란)에 '최초 수출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 및 발급번호' 기재

- 7번란에 미기재된 경우 처리방법
 - C/O 발급시
 - C/O 발급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C/O 7번 란에 최초 수출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 및 번호를 기재토록 조치 후 발급
 - 협정관세 적용 심사 시
 - (원칙) C/O 7번 란에 최초 수출국 C/O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기재 필요
 - (예외) 한-아세안 FTA 협정 개정 전까지는 기재되지 않은 C/O도 사용 가능하며,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기간 기산일은 최초 수출국 C/O 발행일 기준

- ※ 미기재 또는 기재된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등 요구 가능
(「FTA 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9조)

한-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 활용



당사는 신선한 딸기(HS 제0810.10호)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면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수입업체가 통관시 FTA 협정세율(0%)이 아닌 상호대응세율(5%)로 부과받았다고 하는데 상호대응세율이 정확히 무엇인지, 다른 FTA 활용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상호대응세율제도는 FTA 계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이에 따라 한-아세안 FTA상 한국에서 민감품목(Sensitive Track)으로 지정한 품목은 해당 수입국에서 일반품목(Normal Track)으로 지정하였더라도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상호대응세율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 이때 상호대응세율은 한국의 민감품목 세율이 ① 10% 초과하는 경우 ② 10% 이하인 경우에 따라 수입국의 관세율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 ① 한국의 해당 민감품목 세율이 10% 초과 : 수입국 최혜국(MFN)세율 적용
 - ② 한국의 해당 민감품목 세율이 10% 이하 : 한국과 수입국 FTA 세율 중 높은 세율 적용
- ▶ 또한,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한-아세안 FTA의 상호대응세율 대상품목이면 상호대응 세율제도가 없는 '한-베트남 FTA' 활용을 권해드립니다.

관련규정

■ 한-아세안 FTA 부속서 2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

7. 수출 당사국에 의해 E 그룹이 아닌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상호적 관세율 대우는, 그 동일 관세품목이 수입국에 의해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경우, 다음의 조건에 따른다.
- (1) 수출 당사국에 의해 E 그룹이 아닌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관세율은 10% 또는 그 이하이어야 하며 수출 당사국은 상호주의를 향유하기 위해서 다른 당사국에 그러한 취지로 통보되어야 한다.
 - (2) 수출 당사국에 의해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적용되는 상호주의 관세율은 그 수출 당사국 관세품목의 관세율 또는 상호주의를 요청받는 수입 당사국의 동일한 관세품목의 일반품목군 관세율 중 높은 것이어야 한다.
 - (3) 전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은 그 일반품목군 관세율이 수출 당사국의 관세율보다 낮더라도 재량에 따라 일반품목군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4) 수출 당사국에 의해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적용되는 상호주의 관세는 어떤 경우에도 상호주의가 요청되는 수입 당사국의 동일한 관세품목에 대한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제8476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단순 운송 상의 이유로 미조립상태로 운송되고 수출신고시 'HS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에 따라 완성품 세번(HS 제8479호)으로 수출되는 경우 완성품 세번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 한-인도 CEPA 협정문 제3장(원산지규정)의 제3.16조(해석 및 적용)에 의거, 세번분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기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HS해석에 관한 통칙2'의 규정에 따라 최종 수출품의 세번이 미조립품이 아닌 완성품 세번으로 적정하게 분류되었다면 해당 완성품 세번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 한-인도 CEPA

제3.16조(해석 및 적용)

이 장의 목적상, 가. 이 장의 세번분류의 기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다.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 HS 해설서

통칙 제2호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인도로 수출하는 물품의 HS번호가 HS2017 개정에 따라 바뀌게 되었습니다. HS2017 기준으로는 한-인도 CEPA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 한-인도 CEPA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기준 HS Code는 현재 HS2007입니다. 따라서 동 물품 HS2007에 해당하는 세번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으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원산지 증명서도 HS2007기준에 해당하는 세번을 기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 또한, HS 6단위 연계표는
FTA 포털(<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한-베트남 FTA를 활용해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출력오류로 재발급시 “CERTIFIED TRUE COPY” 기재되어 발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가능한가요?



- ▶ 한-베트남 FTA와 「FTA 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도난·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12번 란에 “CERTIFIED TRUE COPY”를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재발급 받은 원산지증명서의 12번 란에 “CERTIFIED TRUE COPY”가 기재되어 발급되었다면, 동 협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것입니다.

관련규정

■ FTA 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① 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2. 재발급 신청 사유서
3. 원산지증명서 제4부분(인도와의 협정에만 해당)

②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발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일자는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가 기재된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서면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재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

1.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싱가포르와의 협정) : 15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 12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3.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인도와의 협정) : 제6란(Remarks)에 날인
4. 규칙 별지 제22호서식(베트남과의 협정) : 12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5.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중국과의 협정) : 제5란(Remarks)에 날인하고 "of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발행번호) dated(날짜)"를 추가로 기재

④ 증명서발급기관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정등본(CERTIFIED TRUE COPY)" 문구를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베트남에 매니큐어(제3304.30호)를 수출합니다. 베트남에서 FTA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데,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중 어느 협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 ▶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2개의 협정이 발효된 국가입니다. 해당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중 수출자가 유리한 협정으로 선택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 ▶ 1국 2개 협정이 해당되는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동일품목이라도 협정에 따라 특혜세율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즉, 2개 협정의 상대국 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원산지증명이 유리하고 원산지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협정을 선택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말씀하신 매니큐어(제3304.30호)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베트남 FTA(협정세율 8.8%) 또는 한-아세안 FTA(협정세율 20%) 모두 적용 가능하지만,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면 관세절감 효과를 더욱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1국 2개 협정국가 안내

국가	발효협정
중 국	한-중국 FTA / APTA
인 도	한-인도 CEPA / APTA
베트남	한-아세안 FTA / 한-베트남 FTA
싱가포르	한-아세안 FTA / 한-싱가포르 FTA

-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및 중국은 우리나라와 2개 특혜협정을 동시에 체결하고 있는 1국 2개 협정국입니다.
- 1국 2개 협정 해당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2개 협정의 상대국 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원산지증명이 유리하고 원산지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협정을 선택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최초 물품 수입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통관하였습니다. 동일 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적용을 취소하고 한-베트남 FTA로 사후적용이 가능한가요?



- ▶ 1국의 원산지물품이 2개 이상의 FTA 적용이 가능한 경우, 세율차 등의 사유로 수입 시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취소 후 다른 협정의 특혜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합니다.
-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적용받았던 협정세율을 기본세율로 보정 또는 수정신고 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원산지증빙서류 및 보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한-베트남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 1국 2개 이상 협정이 적용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시 업무 처리 지침(18.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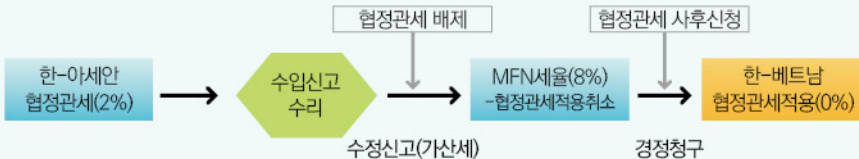
1. 적용 대상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 이미 적용받은 협정과 다른 협정으로 동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2. 적용 절차

- 관세법 제38조의2 또는 제38조의3 규정에 따라 보정·수정 등 절차를 통해 이미 적용받은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 새로 신청하고자 하는 다른 협정의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 다른 협정으로 협정관세 적용 가능
- ※ 이 경우 이미 적용된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가산세) 규정을 준용함

〈베트남(한-아세안&한-베트남 FTA) 사후 재적용 절차 예시〉



EU-베트남(EV) FTA 직물관련 누적기준 활용



저희는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베트남에서 발효예정인 EU-베트남 FTA 직물관련 누적조항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EV FTA에서는 한국산 직물(fabrics)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제품(제61류, 제62류)을 EU로 수출할 때,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하여 FTA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원산지 누적기준이 적용됩니다.
- ▶ 원산지 누적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직물이 한-EU FTA 규정에 따른 원산지규정*과 직접운송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 직물의 원산지는 한-EU FTA상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과 직물이 우리나라에서 EU로 직접 수출되는 것과 동일한 원산지증빙방식으로 결정
- ▶ 한-EU FTA는 6천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베트남으로 직물을 수출하는 섬유업체는 EV FTA에 따른 원산지 누적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업체별 인증 또는 직물 제품에 대한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 *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EU-베트남 FTA' 원산지 '누적기준' 활용도



관련규정

■ EV FTA 원산지의정서 누적 관련 조항

원 문	국 문
<p>(7) Fabrics originating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Viet Nam when further processed or incorporated into one of the products listed in Annex V to this Protocol obtained in Viet Nam, provided that they have undergone working or processing in Viet Nam which goes beyond the oper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6 (Insufficient Working and Processing).</p>	<p>(제7항) 베트남에서 제6조(불충분공정)에 규정된 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처리가 수행될 경우, 부속서 5에 기재된 품목(제3조제7항에 언급된 품목)으로 추가 가공 또는 결합되는 대한민국 원산지 직물은 베트남 원산지 직물로 간주된다.</p>
<p>(8)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7, the origin of the fabrics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o the rules of origin applicable in the framework of the Union'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except for the rules set out in Annex II(a) to Protocol 1 of that preferential trade agreement.</p>	<p>(제8항) 제7항의 목적상 '원산지 물품의 정의와 행정협력방식에 관한 의정서(한-EU FTA Protocol 1)' 부속서2(a)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직물의 원산지는 한-EU FTA 협정상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p>
<p>(9)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7,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fabrics 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Viet Nam to be used in further working or processing shall be established by a proof of origin as if those fabrics were exported directly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on.</p>	<p>(제9항) 제7항의 목적상, 추가작업 또는 공정에 사용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직물의 원산지 지위는 직물이 대한민국에서 EU로 직접 수출되는 것과 동일한 원산지증빙방식을 통하여 결정된다.</p>
<p>(10) The cumul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s 7 to 9 applies if: (a) the Republic of Korea applies with the Union 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XXIV of GATT 1994; (b) the Republic of Korea and Viet Nam have undertaken and notified to the Union their undertaking to: (i) comply or ensure compliance with the cumulation provided for by this Article; and (ii) provide the administrative cooperation necessary to ensure the correct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both with regard to the Union and between themselves.</p>	<p>(제10항) 제7항에서 제9항까지 규정된 누적 규정은 다음을 조건으로 적용된다. 가. 대한민국은 1994년 GATT 제24조에 따라 EU와 체결한 특혜협정 조항을 적용한다. 나.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다음을 이행하고 EU에 이행사실을 함께 통보한다. (1) 동 조항에 규정된 누적조항을 준수 또는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2) EU와 한국, 베트남간 동 조항의 올바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협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p>

한-미국 FTA 원산지증명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중입니다. 관세청에서 제공된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 ▶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표기할 것을 권합니다.
 -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 WO
 -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 PSR
 -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c) of the Agreement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다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 PE
- ▶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에 원산지결정기준을 표기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 '가'호에 따른 원산지물품(완전생산물품)의 경우 'WO'
 - '나'호에 따른 원산지물품(품목별원산지기준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 기준 등 적용품목)의 경우 'PSR'
 - '다'호에 따른 원산지물품(원산지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은 'PE'

관련규정

■ 한-미국 FTA

제6.1조(원산지상품)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상품임을 규정한다.

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

나.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 1)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재료가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 2) 상품이 부속서 4-가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역내 가치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또는

다. 원산지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가 작성할 경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권고서식에 따라 수입자가 작성한 후 세관에 제출하면 되나요?



- ▶ 한-미 FTA에서는 수출자나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출자나 생산자가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원재료내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국의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 미국 관세당국에서는 FTA 검증시 수입자가 세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 대우를 철회하고 즉시 특혜관세를 추징하고 있으며 자료보관 유지위반에 관한 벌칙이 있습니다.
- ▶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작성할 경우 세관의 요청이 있는 때 해당 수입물품이 원산지물품인 것과 운송요건 등을 충족하였음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아래와 같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1.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인으로서 원산지를 증명하는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수입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 동협정 제6.1조(원산지상품) 및 제6.13조(통과 및 환적)에 따라 그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기록과 제6.17조(기록유지요건)제1항에 따라 그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
 2. 「FTA 관세특례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의무사항은 수입자는 서명권자를 지정 관리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재·관리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한-미국 FTA

제6.17조(기록유지요건)

1. 각 당사국은 제6.15조에 따라 증명을 제출하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미국으로 침대(제9403.30호, 무세)를 수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관세가 무세라도 한-미 FTA 적용 혜택이 있을까요?



- ▶ 미국은 관세가 무세인 경우라도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문 제2.10조에 따라 한국 원산지상품에 대해서는 무세인 상품에 대해서도 수수료 면제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 수수료 면제혜택은 한-미 FTA에 따라 당사국 원산지상품에 한하여 주어지므로 추후 미국세관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해 상품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련규정

■ 한-미국 FTA

제2.10조(행정수수료 및 형식)

4.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물품취급수수료*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 물품취급수수료(MPF : Merchandise Processing Fee)란 미국 관세 및 국경보안청(The U.S. Customs Border and Protection, CBP)이 수입물품이 미국 관세법과 무역법을 준수한 것인지 심사하는 명목으로 징수하는 비관세 행정수수료



원산지증명서 서명을 대표이사가 아닌 담당 직원도 할 수 있는지요?



- ▶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은 서명카드에 등록된 서명권자가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이든 담당직원이든 서명카드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직원도 서명카드에 등록하면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FTA 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지정 및 해제)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증명하는 자는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증명하는 자가 서명권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종전의 서명권자에 대하여는 서명 권한 해제일자 및 사유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한-미국 FTA(원산지포괄증명서)



미국에서 월 1회 정기적으로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로부터 원산지포괄증명서를 받았습니다. 한-미 FTA의 경우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 ▶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증명일로부터 12월 이내의 범위에서 포괄증명 유효기간을 명시한 경우 각 당사국은 동일상품의 복수선적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14.8.19)

- ①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은 원산지포괄증명서의 발급일자과 다를 수 있으므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소급 발급되거나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보다 먼저 발급된 원산지포괄증명서는 인정되며 해당 수입물품은 협정관세 적용 대상

(예시)

구 분	원산지 포괄 증명기간	증명일자	협정관세 적용여부
소급 발급되는 경우	2014.1.1. ~ 2014.12.31	2014.4.1. 또는 2015.2.1	적용
먼저 발급되는 경우	2014.1.1. ~ 2014.12.31	2013.12.1	적용

- ② 원산지포괄증명은 동일상품을 복수 선적할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산지포괄증명기간에 협정계약상대방인 수출국(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적용
 -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물품이 아닌 경우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하되,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배제
 *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

(예시)

구 분	원산지 포괄 증명기간	선적일자	수입신고일자	협정관세 적용여부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경우	2014.1.1. ~ 2014.12.31	2014.12.15	2015.1.15	적용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경우	2014.1.1. ~ 2014.12.31	2013.12.15	2014.1.15	적용배제

- ③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28 ('12.6.19)호]'에 따라 원산지 검증 의뢰된 건에 대한 처리방법
 - (원칙) 검증대상에서 제외
 - (예외) 원산지위반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한하여 검증 실시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작년에 수출한 기계에 대해 프랑스의 수입자로부터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사후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 받았는데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지요? 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 ▶ 한-EU FTA에서는 수출자가 원산지제품임을 판정하여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하여 자율발급합니다.
- ▶ 또한, 한-EU FTA에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사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전 수입상대국 법령에 명시된 협정세율 사후 적용신청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수출건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추가 기재하여 발행할 때에는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를 별도 표기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6.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제19조(특혜관세대우 신청과 원산지 증명의 제출)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목적상 원산지 증명은 수입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출된다. 해당 당국은 원산지 증명의 번역을 요구할 수 있고, 제품이 이 협정의 적용에 요구된 조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수입자의 진술서가 수입신고서에 수반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FTA 관세특례법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적서류(B/L)에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인정가능한가요?



▶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작성하여야 하며, 선하증권(B/L)은 한-EU 협정에서 상업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인정되는 상업서류 : 송품장, 포장명세서, 인도증서

- 인정되지 않는 상업서류 :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기타 별도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

관련규정

■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2.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 또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에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3.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4. 원산지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5.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 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에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한-터키 FTA 원산지증명서



당사는 인증수출자로서 제3국 소재 판매자(A사)를 통해 터키에 플라스틱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A사는 자신이 발행한 송장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는데 협정상 적정하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원산지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면 원산지신고문안에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요?



- ▶ 한-터키 FTA에서는 제3국 발행 송장을 허용(협정문 제27조)하나, 원산지신고문안은 협정당사국(한국, 터키)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작성(협정문 제17조)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제3국 발행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되어 있는 원산지신고서는 부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 또한, 한-터키 FTA의 경우 협정문에 인증수출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증수출자 번호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아울러 원산지신고서는 재사용이 불가하여 개별 수출 건마다 별도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협정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하고, 장소·일자·서명자 이름·수출자 수기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규정

■ 한-터키 FTA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에 관한 의정서

제17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1. 제2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 제품이 어느 한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2.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본과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회계기록을 조사하거나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그 밖의 감독을 행할 권리를 가진다.
3. 원산지신고서는 수출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영어로 타자를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4. 원산지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

 한-호주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 및 원산지증명서 작성 주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제3국 발행 송장정보가 누락된 경우에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 ▶ 호주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상품의 한-호주 FTA 협정적용을 위해서는 ① 동 협정에서 정한 협정관세 적용대상 물품일 것 ② 동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기준 충족 ③ 한-호주 FTA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신청에 의해 호주상공회의소, 호주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④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한-호주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자율발급입니다. 그리고 호주의 경우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신청에 의해 호주상공회의소, 호주산업협회에서 기관발급도 가능합니다.
 - ▶ 한-호주 FTA에서는 비당사국 발행 송장거래를 인정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서 비당사국 발행 송장 거래시에는 원산지증명서 비고(9번)란에 비당사국 발행 송장임을 기재할 수 있으며, 이 란의 기재는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에 비당사국 발행 송장임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협정관세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비당사국 발행 송장거래의 경우 가급적 원산지증명서 비고(9번)란에 비당사국 발행 송장거래임을 기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규정

■ 한-호주 FTA

제3.15조(원산지증명서)

1. 상품이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되고 특혜관세를 받을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신청은 원산지증명서로 뒷받침된다.
2.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며,
 - 가. 그에 기술된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 나. 하나 이상의 상품에 대하여 만들어지고 여러 종류의 상품을 포함할 수 있다.
 - 다. 인쇄본 또는 전자본을 포함한 그러한 그 밖의 수단으로 작성한다. 그리고
 - 라. 영어로 작성되고 부속서 3-다의 지침에 규정된 자료요소를 포함한다. 원산지증명서 표준서식은 부속서 3-라에 따른다.

제3.16조(권한 있는 기관)

1. 제 3.15조에 더하여, 호주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 신청서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발급될 수 있다.

제3.26조(비당사국 송장)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송장이 비당사국 영역에서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한-중미 FTA 누적기준



한-중미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코스타리카 거래처로부터 원재료 일부를 수입하여, 의류(제6201.11호)를 만들어 엘살바도르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코스타리카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누적기준을 적용해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 한-중미 FTA에서는 동일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가진 당사국들 간에만 누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 한-중미 FTA에서 '제54·55·60·61·62·63류의 일부 섬유·의류품목'에 대해 엘살바도르만 별도의 원산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별도의 원산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호로 분류되는 제품을 엘살바도르에 수출할 시에는 우리나라와 엘살바도르에서 생산된 재료만 역내산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 즉, 질문사례의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규정

■ 한-중미 FTA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3.6조(누적)

1.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또는 한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나 재료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또는 한국의 영역 내에서 최종재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상품이나 재료는 그 최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후자의 영역의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된다.¹⁾

주석 1)제1항의 이행을 목적으로, 원산지 누적은 동일한 품목별원산지규정을 가진 공화국들 간에만 적용된다.

부속서3-가 제2부 품목별 원산지규정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6201.11호부터 제6217.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6201.11-6217.90	(엘살바도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204호부터 제5212호, 제5401호부터 제5408호, 제5503호부터 제5516호, 제5802호, 제5804호,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6201.11호부터 제6217.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한-영국 FTA 원산지증명서



기존에 한-EU FTA에 따라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적용받았던 업체입니다. 만약 한-영 FTA가 별도로 발효된다면 다시 새롭게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영국에서 독일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영 FTA에서도 '직접운송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 한-영 FTA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특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업체별 인증수출자) 별도의 신청 없이 한-영 FTA 발효 후 자율적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여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합니다.
 - (품목별 인증수출자) 한-영 FTA 발효일 당시에 유효한 한-EU FTA 인증수출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별도의 거부신청이 없으면 한-영 FTA 인증수출자로 자동 추가 지정됩니다. 또한, 효력은 한-EU FTA 인증기간 만료 시까지이며, EU 누적 및 직접운송 허용 만료 시점에서 한-영 FTA 인증의 유효성은 재심사합니다.
 - (신규지정)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새로이 신청하는 경우 협정 발효와 동시에 한-영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영 FTA 발효 전부터 인증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효력은 인증수출자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EU 누적 및 직접운송 허용 만료시점에서 한-영 FTA 인증 유효성은 재심사합니다.
- ▶ 한-영 FTA 발효 후 3년간은 EU를 경유하여 운송된 경우에도 직접운송으로 인정되어 협정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한-영국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3조(직접운송)

1.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국 간 또는 EU를 경유하여*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

* "또는 EU를 경유하여"는 이 협정의 발효부터(21.1.1.) 3년 후에 제13조 제1항에서 삭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발효일 후 2년 내에 제검토)

기타 원산지증명서

 한-EFTA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 신고문안에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협정적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 한-EFTA 협정에서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출자의 서명, 서명인의 성명을 명확하게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 ▶ 또한, 인증수출자로서 서면확약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원산지증명서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면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한-EFTA FTA

제15조 (원산지신고서)

- 원산지신고서는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해당 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고, 수출자, 수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송장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신고서는 읽기 쉽고 영구적인 양식으로 영어로 작성되고 수출자의 본 서명을 포함한다.

■ EFTA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국가명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예시
아이슬란드	등록번호(4자리)-IS인증년도(2자리)	0023-IS10
노르웨이	국가명(2자리)/인증년도(2자리)-등록번호(9자리)	NO/16-123456789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인증번호(3자리 또는 4자리 또는 5자리) /인증년도(4자리)	123 또는 123/1998 1234 또는 1234/1998 12345 또는 12345/1998

 칠레로 수출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영어로 작성해 주었더니 칠레 자국어인 스페인어로 요청해왔습니다. 스페인어로 작성해주어도 되는지요?




- ▶ 한-칠레 FTA의 작성언어는 영어이며 타언어로 작성된 C/O는 불인정됩니다.

[협정별 원산지증명(신고서) 작성 언어]

체약국	작성 언어	비고
EU	한국어, 영어 등 24개 언어본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미국	수출입 당사국 언어 (한)한국어 또는 영어	협정 제6.15조 특혜관세대우 신청
캐나다	/ (캐)영어 또는 불어	협정 제4.1조 원산지증명서 제2호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페루, 터키, 호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영어	-

3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는 방법

 폴란드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세관에서 업체별 인증수출자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럼 5년간 신규 FTA 및 수출품목에 대하여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도 되는지요?



-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모든 품목에 대해 인증혜택을 부여받습니다.
 - 인증 후 발효되는 모든 협정 및 신규 수출(생산)품목에 대해서도 별도 인증 없이 혜택이 가능합니다.
- ▶ 반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인증받은 협정의 물품(품목번호 6단위)에 대해서 인증혜택을 부여받습니다.
 - 인증받은 협정 이외의 국가에 수출하거나, 인증받은 품목번호 6단위 외의 신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혜택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추가 인증이 필요합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원산지 판정 책임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는 업체 책임 하에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산지인증수출자 협약서 및 여타 규정에 따라 인증 후 업체에서 작성하는 모든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서류보관의무 및 검증 책임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원산지 판정 관련 증빙서류 보관의무 및 사후 검증에 대한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려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란 무엇인가요?




-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해,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간과 비용의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 ▶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및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받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협정별 HS 6단위에 대해 인증을 받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나뉘며 인증요건 및 혜택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많은 품목을 여러 협정국가에 수출하면 인증절차가 다소 복잡하더라도 업체별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고
 - 한정된 품목을 특정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인증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품목별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간]

구 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5년	5년
인증요건	원산지관리시스템 또는 원산지증명 능력보유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상 비치, 관리 여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사실 無 최근 2년간 서류보관의무 위반 無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발급 無	해당품목(HS 6단위) 원산지결정 기준 충족여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상 비치·관리 여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 여부
인증기관	5개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세관) 및 평택직할세관 법인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에 일괄하여 인증신청 가능 법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의 원산지관리를 총괄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위로 심사하여 인증번호 부여 가능	

원산지인증수출자 협정별 혜택

 미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는 무역회사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해야 하나요?



▶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도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으므로 인증수출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구 분		내 용
자율발급	한-EU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한-EFTA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 (전자문서 이용 가능)
기관발급	한-아세안	-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 첨부서류 제출 생략 가능(「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 현지확인 생략 가능(「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 APTA 등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첨부서류 제출 생략 가능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8조제2항)

관련규정

■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거소·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이하 "현지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8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② 신청인은 수출시 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 (제24조제1항제1호의 물품은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내)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4조제1항제1호의 물품이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1년안에 원산지증명서의 사후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변경신고/수리



저희는 원산지인증수출자입니다. 최근 업체명이 변경되었는데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하나요?



- ▶ 업체의 상호만 변경되고 동일한 기업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 인증수출자 업체는 인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신고내용이 타당할 시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변경신청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호 ② 주소 ③ 대표자 성명 ④ 원산지관리전담자
- ▶ 다만, 아래의 경우 인증 변경신청이 불가하며 새로운 인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개인 사업자 :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
 -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등 기업의 분할, 인수합병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품목에 대한 품목번호 오류가 있거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품목의 변경 등 인증사항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관련규정

■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주소·대표자성명·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의 합병·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②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주소·대표자성명·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물품의 종류가 변경되었거나 기업의 합병·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신규 수출품목에 대하여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증 신청은 HS 6단위로 하였으나 인증서는 HS 4단위로 교부받았습니다. 그럼 HS 4단위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HS 6단위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것인가요?



- ▶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은 HS 6단위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증수출자 인증서는 HS 4단위로 표시되어 교부됩니다.
 - 이는 HS 6단위를 우리나라와 달리 분류하는 계약상대국이 많아 해외통관애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 따라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 HS 6단위별 신규인증을 받아야하며 원산지증빙 서류관리도 HS 6단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규정

■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
2. 원산지인증 신청품목(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별 원산지소명서. 다만, 원산지인증 수출자가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가공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제4항, 제6항, 제8항 및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3항 본문 중 "별지 제26호서식의 인증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서"로 보되, 품목번호 4단위를 기준으로 인증서를 교부한다.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이수 등 요건



담당자가 인증수출자 자격부여 교육을 듣고 점수를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매년 공고되는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FTA 포털(<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 > FTA 기업지원 > 원산지관리전담자교육

관련규정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3]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 요건

-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이수점수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다음 항목 총합 20점 이상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다음 항목 총합 10점 이상

- 다 음 -

- 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FTA 관련 교육* 이수
- ※ 단, 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종료일로부터 2년
- * 민간협회 및 공공기관에서 매년마다 사전에 관세청장과 협의한 FTA 교육

[자유무역협정 관련 교육이수 인정기준]

과 목	내 용	점 수
자유무역협정 (FTA)법령	· FTA협정문 중 원산지규정 · FTA관세특례법령 및 관련고시	시간당 2점(최대 4점)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 결정기준 판정 연습	시간당 2점(최대 6점)
품목분류	· 품목분류 이론, ·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시간당 2점(최대 6점)
인증수출자	· 인증수출자 제도, · 인증수출자 지정 실무	시간당 2점(최대 6점)
원산지관리 실무	· 증명서·소명자료 작성 실무 · 업무매뉴얼 작성·사례 실무 ·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	시간당 2점(최대 6점)
원산지에 관한 조사	· FTA 협정문 등 원산지 조사 관련 규정 · 원산지증빙서류 등 보관 관련 규정	시간당 2점(최대 6점)

- ② 관세, 상품학, 자유무역협정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당 2점(최대 6점)
- * 원산지실무사 자격증 포함,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제외(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이수 없이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 가능)
- ③ 관세청 또는 관세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 건당 5점(최대 15점)
- * 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
- ※ 컨설팅의 유효기간은 컨설팅을 받은 날로부터 2년

한-아세안 FTA PSR(HS2012→HS2017)에 따른 품목별 인증사항 변경



한-아세안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입니다. 한-아세안의 경우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변경(HS2012 → HS2017, '20.1.1 시행)되었다는 공지를 봤습니다. 저희가 인증받은 품목의 HS번호가 변경되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 2020년 1월 1일자로 한-아세안 FTA의 품목별 원산지기준(PSR)의 HS기준이 HS2012에서 HS2017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인증받았던 품목의 세번이 변경된 경우 해당업체에서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20.10.5.부터 '20.12.31.까지 다음 유형에 맞추어 새로 인증받거나,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인증효력이 있으므로 요건검토 불요

유형1 기존 인증받았던 세번의 원산지기준이 바뀐 세번의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 품목별 원산지기준 HS변경에 따른 인증사항 변경신고서 제출

〈예시〉

구분	HS2012 → HS2017
예시①	3926.90 → 9620.00 / RVC40% → RVC40%
	0301.99 → 0301.93 / WO → WO

유형2 변경 전·후 모두 세번변경기준으로, 변경된 세번으로 원산지충족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품목별 원산지기준 HS변경에 따른 인증사항 변경신고서와 원산지소명서 제출

〈예시〉

구분	HS2012 → HS2017
예시②	3926.90 → 9620.00 / CTH → CTH
	2922.13 → 2922.19 / CTSH → CTH


유형3 원산지기준 변경·강화되었을 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재확인 위해 신규 인증필요

〈예시〉

구분	HS2012 → HS2017
예시③	2008.99 → 1211.20 / RVC40% → WO
	8431.41 → 8542.33 / CTH or RVC40% → SP

- ※ 품목별 원산지기준 HS변경에 따른 인증사항변경신고서는 관세청FTA포털 (www.customs.go.kr/ftaportalkor/) → FTA 자료실 → FTA 서식모음 → 한-아세안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U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현재 우리나라 이외의 EU 수출자의 세관인증번호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사이트가 있나요?
 그리고 독일의 경우 “국가(2)/세관부호(4)/EA/인증번호(4)”로 인증코드가 구성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취한 세관인증번호는 “EA”가 아닌 “ZA”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 현재 세관인증번호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EU FTA에서 '세관인증번호 체계'는 협정문이나 법령상의 문제가 아닌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로서 그 정확성은 궁극적으로 사후검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 문의하신 DE/****/ZA/*****는 독일세관당국에 등록된 통관부호로서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유효한 세관인증번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독 일]

인증수출자번호 종류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①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	DE/0000/EA/0000 <국가/세관부호(4)/EA/인증번호(4)>
② 전자적으로 수출을 하는 업체에 부여되는 인증번호 (FTA와 관련 없음)	DE/0000/ZA/0000 <국가/세관부호(4)/ZA/인증번호(4)>
③ 단순 세관 등록번호 (1년에 3건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에 부여)	DE/0000000 <국가/일련번호(7)>

- ▶ 또한, 한-EU FTA 활용 증가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에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를 기재하여 특혜적용을 받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그 유효성을 확인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인증자수출번호 형식적 유효성 검토 방법



- EORI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os/eori_validation.jsp?Lang=en
 - VAT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vies/vieshome.do?selectedLanguage=en

관련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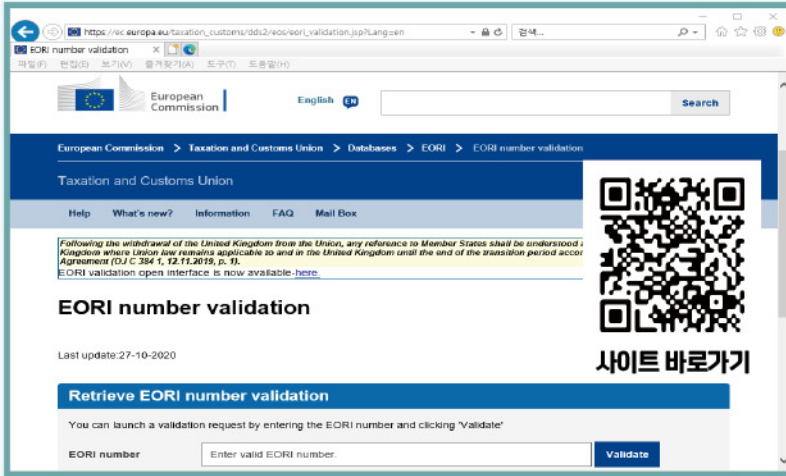
■ EU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2018.06.07.)

국가명	인증코드 예시	인증코드 체계	비고
오스트리아	AT/100/015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벨기에	BE 74	국가코드(2)/인증번호(1-4)	
불가리아	BG/1223/009/08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사이프러스	CY/NIC/000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크로아티아	HR/10/001/13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체코	CZ/02/0001/04, CZ/51/0001/13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세관코드 : 01-08 또는 51-65
덴마크	DK/51/04/237/00638 DK/51/04/239/00638 DK/04/000638	국가코드(2)/인증기관코드(2)/인증연도(2)/ 인증표시코드 237 또는 239/인증번호(5) 국가코드(2)/인증연도(2)/인증번호(6)	
에스토니아	EE/001/2004	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4)	
핀란드	FI/50/110 FI/8/36 FI/4/2014	국가코드(2)/인증번호/세관코드(3) 국가코드(2)/인증번호/Å land지역코드(2) 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4)	
프랑스	FR 003160/0025	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독일	DE/4711/EA/0007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수출자코드(EA)/ 인증번호(4)	
그리스	GR 01/1234/2004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승인연도(4)	세관코드 : 1-10
헝가리	HU123450N8000000000	국가코드(2)세관코드(5)/0/level코드(N or E)/ 인증연도(1)/인증번호(9)	N : National, E : Community
아일랜드	IE/05/06	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2)	
이탈리아	IT/001/RM/06 IT/002/MXP/13	국가코드(2)/인증번호(3)/지역코드(2-3)/인증연도(2) ○ 지역코드 : Milan, Rome, Naples, Genoa, Alexandria 경우 지역코드 2자리에 1자리 숫자(1,2,3)* 추가하여 구성 가능, * 1자리 숫자(Customs district 구분) - Rome, Naples, Genoa, Alexandria는 '1' 또는 '2' - Milan은 '1', '2', '3' 중 하나 ○ Malpensa 경우 MXP 3자리에 구성	(예) IT/032/MI2/11, IT/033/AL1/16, IT/034/GE2/16 (예) IT/002/MXP/13
라트비아	LV/100/2006	국가코드(2)/인증번호(1-3)/최초인증연도(4)	
리투아니아	LT/VMO/011	국가코드(2)/세관코드(문자(2),숫자(1))/인증번호(3)	
룩셈부르크	LU/ORDL/256	국가코드(2)/ORDL/인증번호(3)	인증번호: 1-500(국가인증), 501- 999(단일인증)
몰타	MT/D/000	국가코드(2)/D/인증번호(3)	
네덜란드	NL/361/02/1234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연도(2)/인증번호(3-4)	
폴란드	PL/042010/0001	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포르투갈	PT/000/P	국가코드(2)/인증번호(3)/발급지역(P or L)	발급지역 : P(Porto), L(Lisboa)
루마니아	RO/DRVBV/025	국가코드(2)/세관코드(5*)/인증번호(3)	* 예외 : Bucharest의 경우 4자리(DRVB)
슬로바키아	SK/1050/010/05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슬로베니아	SI/123/03	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산마리노공화국	SM/SM001/00/0000	국가코드(2)/세관부호(5)/인증번호(2)/ 최초인증연도(4)	
스페인	ES/28/0001/98, ESEAOR17000035	국가코드(2)/지역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국가코드(2)인증수출자코드(EAOR)인증연도(2)인증 번호(6)	
스웨덴	SE/SHF/123456	국가코드(2)/코드*(3)/인증번호(6)	* M6의 경우 2자리
영국	GB 12345/06	국가코드(2)/인증번호(5)/인증연도(2)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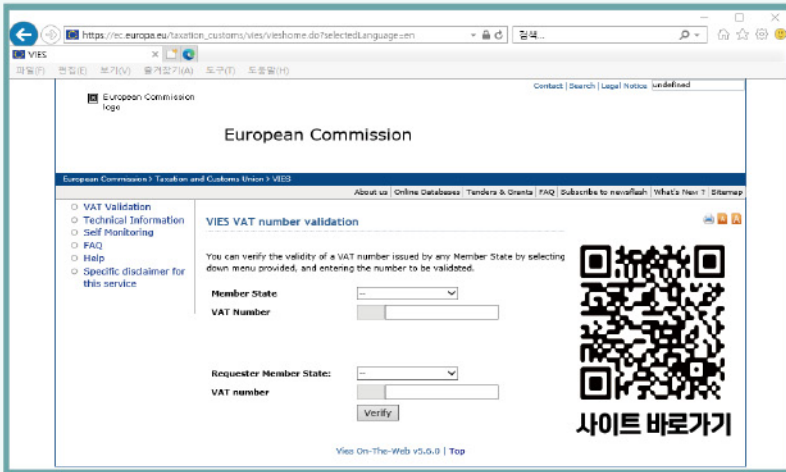
EORI 번호 입력 확인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os/eori_validation.jsp?Lang=en



VAT 번호 입력 확인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vies/vieshome.do?selectedLanguage=en



4 원산지확인서류

원산지(포괄)확인서



저희 거래처에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국내거래인데도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가요?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은 왜 해야 하나요?



- ▶ 수출업체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 및 투입 재료의 원산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산지 확인을 위해서는 수출물품에 투입되는 모든 재료가 각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수출물품의 재료 내역과 각 재료별 구입경로·원가구성내역·품목번호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 그러나, 공급업체에서 생산원가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공급물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기피한다면, 수출업체에서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 원산지(포괄)확인서 제공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 공급업체에서 자료제공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수출업체에서는 재료 원산지 확인이 곤란하므로 「FTA 관세특례법」에서는 ‘국내 공급업체가 생산 및 원가정보 등을 수출업체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는 대신에 공급물품의 원산지에 대해 공급업체 스스로가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수출업체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즉,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공급업체가 직접 공급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수출업체에 제공하는 증빙서류이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빙서류의 흐름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협정 발효일 이전에 공급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가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서류입니다.
- ▶ 협정 발효일 이후 수출된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협정발효일 이전에 공급하였다면, 해당 협정에서 규정하는 품목별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협정발효일 전에 공급된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제조사로, A사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A사의 자회사인 B사(△△ 생산)로 납품하면 A사가 결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B사가 인증수출자 신청에 필요하다며 원산지확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원산지확인서 발급시 ‘공급받는 자’를 지불을 해주는 A사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물건을 받는 곳인 B사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생산자(B사)가 원산지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재료를 공급하는 자(귀사)는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생산자(B사)를 공급받는 자로 합니다.



올해 초에 라디에이터 부품을 거래처에 납품하였습니다. 거래처에서는 몇 달이 지난 후 저희에게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 했습니다. 몇 달 전에 납품한 물품의 원산지확인서를 지금이라도 작성할 수 있는 건가요?



- ▶ 현재 「FTA 관세특례법」 및 시행령, 규칙에서는 원산지확인서 소급발급 기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급한 물건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BOM 등)가 구비되어 있다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소급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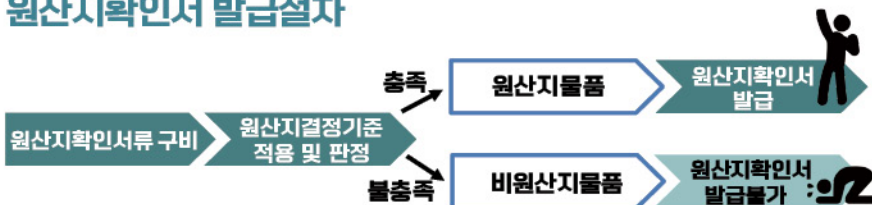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구매시 원산지재료임을 확인받았으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에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가능한가요?



- ▶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자율증명방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원산지 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 등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원산지확인서가 아닌 다른 서류나 정보를 통하여 공급받은 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원산지증명서 작성 후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가능합니다.

원산지확인서 발급절차



○ 원산지확인서류 예시

- 제품의 실제 거래 여부 : 세금계산서, 구매계약서, 공급계약서 등
- 제품의 원재료 구성내역 : 자재명세서(BOM : Bill Of Material)
- 제품의 원산지 정보 : 제품 공급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확인서, FTA 원산지증명서
- 제품의 원가구성내역 : 원가산출내역서
- 실제공정 유무 및 불인정 공정 여부 확인 : 제조공정도(사진 포함)

관련규정

■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원산지확인서)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원산지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원산지포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FTA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



쌀이 한국산(완전생산)임을 입증 가능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 원산지확인서를 받아야 할 대상물품이 농산물일 경우 매매증빙서류, 경작사실 증명서, 농지원부 등이 있어야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은 물건을 생산하여 수출할 때마다 매번 새로 구비해야 합니다.
- ▶ 이런 과정으로 수출을 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세청에서는 FTA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 즉, 원산지입증서류 구비가 까다로워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물, 전통식품 업체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구비시 원산지 증빙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 이에 따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는 아래 5개 중 하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① 친환경농산물인증서 ②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③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④ 지리적표시 등록증 ⑤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

관련규정

■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원산지확인서) ④ 관세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려면 관련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마른 김에 대한 수매확인서가 없는 경우 원산지입증 가능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 마른 김에 대한 수매확인서가 없는 경우 원산지확인을 위해서 국내에서 완전 생산되었음을 입증가능한 서류(예 : 어업권행사계약서, 출하확인서, 양식허가증 또는 물김생산 입증서류, 수산물 매매기록대장 등)가 필요합니다.

관련규정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 목 적 : 농축수산물 생산자 및 제조자 등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FTA 활용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

□ 근 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 및 품목

○ 발급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 축산물품질평가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 16개 수협(강진, 완도소안, 고흥, 의창, 군산, 영흥, 서천서부, 목포, 신안, 해남, 완도금일, 진도, 웅진, 부산, 경기남부, 장흥(마른 김에 한함))
- 한국식품연구원
- 사단법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
- 제주특별자치도청(조례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 인정서류

구분	서 류 명	발급근거	서식
농산물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서식1
	②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서식2
	③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이력추적관리)	서식3
	④ 지리적표시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서식4
	⑤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	양곡관리법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서식15
수산물	⑥ 물김 수매확인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매매방법)	서식5
	⑥ 마른 김 수매확인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매매방법)	서식6
	⑦ 수산물 품질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수산물 등의 품질인증)	서식7
	⑧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서식8
	⑨ 수산물이력 추적관리 등록증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이력추적관리)	서식9
축산물 ¹⁾	⑩ 수산물 유기수산물 인증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서식10
	⑪ 축산물(소) 등급 판정확인서	축산법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축산물 시험규칙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서식11
	⑫ 축산물(돼지) 등급 판정확인서		서식12
⑬ 축산물(계란, 닭, 오리) 등급판정확인서	서식13		
전통식품	⑭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서식14
지역특산품	⑮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서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품질인증 및 인증서 교부)	서식16

1) 국내에서 완전생산되어 도축 및 등급 판정된 축산물에 한정

○ 품목(별표 참조)

- 농산물 1,028개 품목 / 수산물 81개 품목 / 축산물 5개 품목 / 전통식품 32개 품목 / 지역특산품 47개 품목

APTA 원산지확인서



거래처의 요청으로 저희 생산 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산지포괄확인서에 APTA 협정도 기재해 달라고 요청받았는데, FTA 협정이 아닌데도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 일반특혜협정(APTA, GSTP, GSP 등)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가 없어, 수출자 및 생산자의 원산지증명서 사후검증 시 증빙서류 진위여부에 대한 부담이 있는 바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의 “원산지확인서”를 준용토록 서식을 지정했습니다.
- ▶ 따라서 「APTA 등 일반특혜협정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처리 지침 통보」에 따른 원산지(포괄) 확인서 권고서식을 활용해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FTA 포털(<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 > 참여마당 > 공지사항 515번

관련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6(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등) ① 법 제232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 이내의 자료를 말한다.

1.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사.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그 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5장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의한 관세양허 대상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32조(제출 및 확인서류) APTA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1. 신청서(별표 4-2)
2.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3.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별표 2-3)
4. 원산지(포괄)확인서(별표 2-4)

국내제조확인서와 원산지확인서의 차이

?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있는 국내제조확인서는 제12조의 원산지확인서와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용도가 어떠한가요? 그리고 섬유 등 특정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업종에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제도는 국내에서 일정 수준의 제조과정이 수행되었으나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한 원재료에 대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부분이 최종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사용범위를 특정업종에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국내제조확인서와 원산지확인서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또는 자율발급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제조확인서와 원산지확인서 비교]

구분	요청자	작성·제공자	확인 대상	용도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생산자 또는 수출자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	해당 재료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	공정과 부가가치 누적을 위해 사용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	재료누적을 위해 사용

관련규정

■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포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관련규정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18. 국내제조확인서 관련 사항

□ (효과) 생산공정 누적규정*을 활용하면 '비역내산 원재료인 원면을 사용한 면직물도 FTA 특혜적용 가능'

* 물품이 역내국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경우 前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공정을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간주 [※ 협정문 제6.5조(누적)]

〈생산자 국내제조확인서 제도 도입 전/후 비교〉

공정	브라질산 원면 (HS 5201)	→	한국에서 A사 면사제조 (HS 5205)	→	한국에서 B사가 면직물 제조 (HS 5208)	→	미국에 수출
원산지 결정 기준			CC*		CTH** (5205호에서의 변경은 제외)		
① 국내제조 확인제도 미도입	브라질산		브라질산		원산지 미충족		특혜수출 不可
② 국내제조 확인제도 도입	브라질산		원산지 충족(CTH기준, 5201→5208) B업체가 A업체 생산공정을 누적				특혜수출 可能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 5205호에서의 변경은 제외됨

- ① A사가 만든 면사 : 브라질산(5201→5205로 2단위가 변경되지 않음)
B사가 만든 면직물 : 브라질산(5205→5208로 4단위가 변경되었으나 5205호에서의 변경이므로 불인정)
- ② A,B사가 만든 면직물 : 한국산(5201→5208로 4단위가 변경되었고 5205호에서의 변경이 아님)

■ 한-미국 FTA

제6.5조(누적)

- 각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이나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 각 당사국은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상품임을 규정한다. 다만, 그 상품은 제6.1조 요건과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원산지소명서



저희 회사는 타사 완제품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위해 첨부서류인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하는데, 타사 원산지확인서로는 필요한 원재료명세를 알 수 없어 원산지소명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완제품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및 공급물품과 관련된 자재명세서, 생산공정명세서 등을 요청하여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하시되, 거래처(완제품 생산자)에서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귀사에 입증서류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거래처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FTA 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① 규칙 제10조제2항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3. 규칙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
4. 규칙 제13조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
5.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김에 식물성 유지 및 소금 등을 첨가해 조제김 (제2106.90호)을 만들어 베트남으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얼마전 조제김이 원산지증명 간이발급대상 물품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이발급대상 물품의 경우 원산지소명서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 「FTA 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출신고필증 사본,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 수출자와 생산자 다른 경우) 및 국내제조확인서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 간이발급의 대상물품은 「FTA 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2-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 조제김(제2106.90-4010호)의 경우 원산지증명 간이발급대상 물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에 식물성유지와 소금 등을 첨가해서 굽는 국내 공정이 수반되고, 동시에 한-중 FTA 또는 한-베트남 FTA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위 나열된 서류들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할 시에 원산지소명서상 내용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FTA 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④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규칙 제10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및 규칙 제13조의 서류로 제조과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 가공한 사실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표2-2(이하 “원산지증명 간이발급대상 물품”이라 한다)와 같다.

[별표 2-2] 원산지증명 간이발급대상 물품(243개 품목)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8	2106.90-4010	조제김	해초류인 김에 소금과 기름 등을 발라 구운 조미김	한-중 FTA 한-베트남 FTA	김(제1212.21호)에 식물성유지(제1515호)와 소금 등을 첨가하여 굽기	

5 원산지결정기준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같은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협정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동일 물품이라도 협정별로 원산지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 예를 들어 제3923.40호 품목에 대하여 협정별로 원산지규정을 살펴보면
 - 한-미 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한-아세안 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한-베트남 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한-인도 CEPA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한-EU FTA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한-중국 FTA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한-중미 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각 사례별 원산지결정기준 해석이 궁금합니다.



[Q-1] 한-베트남 FTA, 제2106.90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 제2106.90호

- (한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계약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소호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 (영문) CTH; or RVC(40), provided that materials of Subheading 1211.20, 1212.20 and 1302.19 are WO

⇒ (갑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가치포함비율 40% + 소호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 완전생산기준'

⇒ (을론) '4단위 세번변경기준 + 소호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 완전생산기준' 또는 '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 40% + 소호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 완전생산기준'



▶ 한-베트남 FTA 부속서 3-가(품목별원산지규정)에 따라 제2106.90호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로 해석합니다.

- 따라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생산된 것'에는 단서규정의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를 포함하지 않습니다.(갑론)



[Q-2] 한-인도 CEPA, 제1211.20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 제1211.20호

- (한글)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영문) Manufacture in which all the materials of Chapter 12 used are wholly obtained.

⇒ (갑론) 제1211.20호의 원재료 중 제12류에 해당되는 모든 재료는 완전생산을 충족하여야 하나, 그 외의 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완전생산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

⇒ (을론)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라고 표현한 것은 원재료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12류의 완제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완제품 자체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 한-인도 CEPA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라 제1211.20호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중 모든 사용재료는 제12류에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됩니다.
- 따라서, 홍삼 테블릿(HS 제1211.20-2220호)의 재료 중 홍삼(제1211.22호)은 수출 당사국에서 완전생산을 충족하여야 하나, 그 외 제12류에 해당되지 않는 원재료는 완전생산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갑론)



[Q-3] 한-EU FTA, 제7616.99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 제7616.99호

- (한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영문)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 ▶ 한-EU FTA에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 생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호의 재료가(제품과 동일한 상품명 및 호의 재료까지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불인정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경우에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완전생산기준



한-EU FTA 원산지 검증을 대비해서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가 체약당사국의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획물임을 증빙하기 위해 수출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수입자는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가 체약 당사국의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획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출자가 한-EU FTA 제16조에 따라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입증 가능하며,
- ▶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어획물이 완전생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한-EU FTA 제4조제2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선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어획물이 당사국 선박에 의해 획득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 또한 당사국 영역밖 바다 어획물에 대한 FTA 특혜를 받기위한 역내선박 인정조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국 국기게양	당사국 국기게양 + 당사국 등록	당사국 국기게양 + 당사국 등록 + 소유조건
EFTA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페루,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EU, 터키

관련규정

■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4조(완전하게 획득된 제품)

2. 제1항 바호 및 사호에서 '당사자의 선박'과 '당사자의 가공선박' 용어는 다음의 선박과 가공선박에만 적용된다.

가.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에 등록된 것

나.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국기를 게양하여 항해하는 것, 그리고

다.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

1)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국민에 의해 적어도 50퍼센트가 소유되는 경우, 또는

2) 다음의 회사에 의해 소유되는 경우

가) 그 본점과 주영업소가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에 있는 회사, 그리고

나)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공공기관 또는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국민에 의해 적어도 50퍼센트가 소유되는 회사



수산물과 축산물의 완전생산 입증서류는 무엇인가요?



- ▶ 수산물의 경우에는 ① 원양생산 시 원양생산 증빙자료(예시 : 선박국적증명서, 원양어업 허가증, 어획반입신고 확인서 등) ② 근해생산 시 근해생산 증빙자료(예시 : 어업허가증, 출하확인서류, 수산물 구매확인서 등) 등으로 할 수 있으며,
- ▶ 축산물의 경우에는 ① 실제생산자 및 목장의 증빙자료(예시 : 조합원 확인서류, 목장등록 자료) ② 생산능력자료(예시 : 연간 생산량,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 확인자료) 등으로 완전생산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농장에서는 네덜란드에서 파프리카 종자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배과정을 거쳐 생산하여 태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아세안 FTA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3조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배된 후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또는 식물 상품"의 경우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 한-아세안 FTA 부록3의 '부속서 3에 대한 해석 주석'에서도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된 농산물 및 원예상품은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입된 씨, 봉우리, 대목, 잘라진 가지, 접지 또는 다른 식물의 살아있는 부분으로부터 재배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사국의 영역의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배 이전 단계인 종자를 수입하였더라도 재배부터 역내에서 수행된다면 완전생산 기준을 충족합니다.



국내에서 역외산 원재료 철괴를 사용하여 제품 생산시 발생한 스크랩을 역내산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 협정별로 규정방식 및 용어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과 부스러기는 우리나라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당해 투입원재료의 잔여 물품이 아닌 제조공정의 결과로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어야 하며 협정별로 폐기물 및 부스러기에 대한 규정방식 및 용어에 차이가 있으므로 협정문을 참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영역의 범위 등



꿈으로 수출할 계획이 있는데, 한-미 FTA를 활용하여 관세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 ▶ 한-미 FTA에서 미합중국의 영역은 50개 주, 콜롬비아 특별구 및 푸에르토리코 등만을 명시하고 있어, 괌 및 사이판 등은 한-미 FTA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비슷하게 한-중 FTA에서 홍콩과 마카오도 중국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중 FTA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규정

■ 한-미국 FTA

제1.4조(정의)

영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나. 미합중국에 대하여는

- 1) 50개 주, 콜롬비아 특별구 및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하는 미합중국의 관세 영역
- 2) 미합중국 및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하는 대외무역지대, 그리고
- 3) 해저 및 하부토양과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미합중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미합중국 영해 밖의 지역

■ 한-중국 FTA

제1.5조(영역적 적용)

2. 중국에 대하여, 이 협정은 육지, 내수, 영해 및 상공을 포함한 중국의 전체 관세영역, 그리고 중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영해 밖의 지역에 적용된다.

※ 홍콩, 마카오는 중국과 별도의 관세영역이므로 홍콩 또는 마카오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상품은 협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협정별 영역의 범위 알고 갑시다 】

한-EU FTA	안도라공국(HS 제25류~제97류), 산마리노공화국,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도 협정관세 적용
한-미국 FTA	미국의 영역 : 50개 주, 콜롬비아 특별구 및 푸에르토리코 (괌, 사이판 등 그밖에 미국의 자치령은 협정적용 대상 아님)
한-호주 FTA	노퍽 섬, 크리스마스 섬, 코코스 (킬링) 제도, 애쉬모어와 카르티어 제도, 허드슨섬과 맥도널드 제도 및 코랄시 제도의 영역에서 생산물품 협정관세 적용
한-중국 FTA	홍콩 또는 마카오에서 생산물품 협정적용 대상 아님 (중국과 별도의 관세영역)
한-뉴질랜드 FTA	뉴질랜드의 영역에서는 토켈라우 제외



우리나라에서 양식한 미역을 베트남으로 수출 후 베트남에서 가공하여 우리나라에 재수출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가공한 미역(제1212.21호)의 원산지를 한-아세안 FTA에 따라 베트남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 ▶ 제1212.21호의 한-아세안 FTA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수출당사국 영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것'입니다.
- ▶ 따라서, 베트남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출당사국인 베트남에서 완전 생산되어야 하며, 한국에서 생산되어 베트남에서 가공한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베트남산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규정

■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2조(원산지기준)

2. 제 7조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 획득을 위한 조건은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중단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한-미 FTA 관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잣(제0812.90호)을 수확하여 중국에서 세척, 살균, 탈각, 포장 작업을 수행한 후 다시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미국으로 수출할 예정입니다.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 ▶ 한-미 FTA에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 ▶ 생산은 상품을 재배, 채굴, 수확, 어로, 번식, 사육, 덧사냥, 수렵, 제조, 가공, 조립 또는 분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물품에서 세척, 살균, 탈각, 포장 작업은 최종 상품을 만들기 위한 제조, 가공의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 ▶ 따라서 계약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되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한-미 FTA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규정

■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4. "생산"이란 재배, 채굴, 수확, 어로, 번식, 사육, 수렵, 제조, 가공, 조립 또는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물품을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충분가공원칙(불인정공정)



우리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아세안 협정을 이용하여 수출하려고 하는데, 제8529.90호의 제품생산 시 동일 소호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한-아세안 FTA 제8529.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같은 소호 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2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 ▶ 동일한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도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 제8조(불인정 공정) 규정에 의거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반드시 수행해야만 최종 제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충분가공원칙이란 역내에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할 때 충분한 공정을 거쳐야 하며 역내가공원칙, 운송요건과 함께 원산지상품이라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원칙입니다.
- ▶ 이러한 충분가공원칙과 관련하여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터키, 페루, 호주,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뉴질랜드, 중미와의 협정에서는 충분한 공정으로 볼 수 없는 불인정공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 미국의 경우 부속서 6-가 품목별 원산지기준 제1부 일반주해 1.사에서 원산지상품으로 볼 수 없는 공정에 대하여 규정
- ▶ 이러한 불인정공정이 수행된 상품이라면 해당 상품이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을 지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멕시코산 돼지를 미국에서 도축 후 냉동하여 생산된 냉동돼지고기에 대해 불인정공정 여부와 관계없이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한-미 FTA 협정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 한-미 FTA에서는 협정상 불인정공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품목별 원산지기준(부속서 6-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 돼지(제01류)를 미국에서 도축 후 생산된 냉동돼지고기(제02류)는 품목별 원산지기준과 동협정에서 정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한-미 FTA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 한-미국 FTA 부속서 6-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1부(일반주해)

1.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기준의 해석 목적상
 - 사. 제1류 내지 제40류에 대하여,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물 또는 다른 물질로 단순히 희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 품목별 기준(제1류~제40류)에서 단순희석 공정은 원산지 불인정

■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8조(불인정공정)

1. 이 부속서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공정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 단독 또는 결합으로만 수행된 경우, 그 상품은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가. 운송 혹은 저장 중에 상품을 우수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보존 공정
 - 나. 포장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합
 - 다. 먼지, 산화물,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단순한 세척, 세정, 제거
 - 라. 단순한¹ 도장 및 광택 공정
 - 마.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장
 - 바. 당류 채색 또는 각설탕 공정
 - 사. 단순한¹ 껍질 벗기기, 씨제거, 또는 탈각
 - 아. 연마, 단순한¹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
 - 자. 채질, 선별, 구분, 등급 분류, 등급화, 매칭
 - 카. 표시, 라벨, 로고 및,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식별 표시와 같은 것의 첨부 또는 인쇄
 - 타. 다른 종류간이건 아니건 생산품의 단순한 혼합²
 - 파.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그 부품의 단순한 조합 또는 생산품을 부품으로 해체하기
 - 하. 단순한¹ 실험 또는 측정
 - 거. 동물의 도축³
1. "단순한"이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2. "단순한 혼합"이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도축"이란 동물의 단순한 도살 및 이에 연이어 이루어진 저장과 운송을 목적으로 한 절단, 냉장, 냉동, 염장, 건조 또는 훈제와 같은 과정을 의미한다.

세번변경기준



우리 회사는 철삭, 연마, 윤활 등에 필요한 금속가공유(제2710.19호)를 제조하고 있으며, 이번에 중국과 인도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제조하는 금속가공유의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BOM]

NO	재료명	HS코드	원산지	수량	가격	공급자
1	A	2710.19-0000	한국	-	-	가
2	B	2710.19-0000	한국	-	-	가
3	C	3811.21-0000	미국	-	-	나
4	D	3811.21-0000	모름	-	-	다
5	E	3811.21-0000	모름	-	-	라



▶ 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번호(HS Code)가 적정하게 분류되었음을 전제로 안내드립니다.

※ 품목번호 확인 : 관세청 사이트 검색 또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이용

▶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FTA 포털(<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 → FTA 자료실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협정 선택 후 HS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품목번호	체약국	품목명	원산지기준
2710.19	중국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인도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세번변경기준은 제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에서 완제품의 세번으로 세번변경이 발생하면 물품의 실질이 변화하였다고 보는 원산지결정기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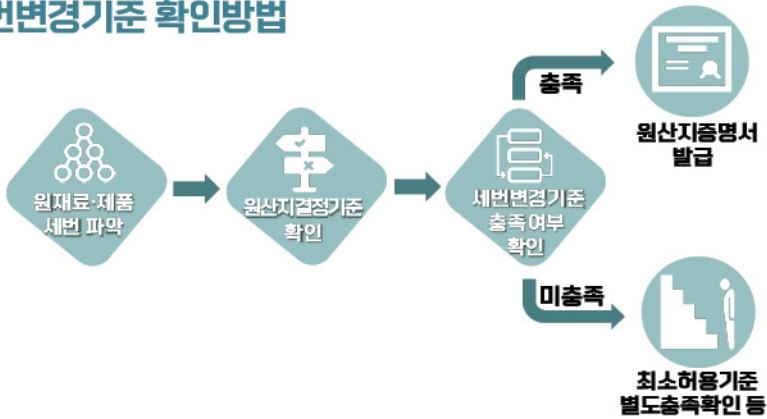
- 즉, 원산지재료의 세번변경은 고려하지 않고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과 완제품 세번이 상이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2단위,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 등이 있습니다.

▶ 원재료 A, B에 대하여 공급자가 제공한 원산지확인서가 있다면 원산지재료(한국산)로 볼 수 있습니다.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재료로 볼 수 없습니다.

- 만약 원재료 A, B가 비원산지재료로 확인되어 세번변경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허용기준 등 특례규정을 확인하여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비원산지재료(C, D, E)의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이 다르므로, 귀사의 금속가공유(제2710.19호)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단, A와 B가 원산지재료일 경우)

세번변경기준 확인방법



관련규정

■ 한-중국 FTA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1부-일반주해

5.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되면,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재료는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도록 요구된다. 세번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재료에만 적용된다.
6.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 호 또는 소호의 차원에서 특정 세번을 제외하도록 적시된 경우, 원산지 기준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제외된 특정 세번으로 분류된 재료가 원산지 재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당사국은 해석한다.
7. 이 부속서의 목적상
소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상품분류체계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상품분류체계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류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상품분류체계에서 처음 2단위를 말한다.
8. 이 부속서 5열의 목적상,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에 처음 2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에 처음 4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에 처음 6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2부-품목별 원산지 규정(발취)

류	호	소호(HS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710.19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미국으로 제7308호의 구조물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제7308.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시 제7216호의 형강이 한국산이어야 하나요?

<제7308.90호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216호의 형강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

1. 드릴링·천공·낫칭(notching)·절단·캠버링(cambering) 또는 스위핑(sweeping)공정(각 공정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
2. 복합구조물을 위해 부착물 또는 용접을 추가하는 공정
3. 취급(handling) 목적으로 부착물을 추가하는 공정
4. H형강 또는 I형강에 용접·연결기 또는 부착물을 추가하는 공정. 다만, 용접물·연결물 또는 부착물의 최대면적이 H형강 또는 I형강의 플랜지 내부 표면사이의 면적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도장·아연도금 또는 그 밖의 코팅공정
6. 기동으로 적합한 물품의 제작을 위해 드릴링·천공·낫칭 또는 절단공정(각 공정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으로 별도의 보강재 없이 단순한 기초 판(base plate)을 추가하는 공정



- ▶ 제7308.90호의 제품 생산시 비원산지재료인 제7216호의 형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제7216호의 비원산지 형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7308.90호에 규정된 공정이 수행된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한-EU FTA 관련입니다. 제7304.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제7206호, 제7207호, 제7218호 또는 제7224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인데, 반드시 이 원산지결정기준에 나열된 HS번호에 해당되는 원재료로만 생산되어야 하는지요?



-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비원산지재료에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에 원산지지위를 부여하는 기준으로서, 제품이 비원산지재료를 통해 생산된 제품이 아닌 원산지재료로부터 생산된 제품이라면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 언급한 제7206호, 7207호, 제7218호 또는 제7224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제품이 아니어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합니다.

관련규정

■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9. “세번변경기준”이란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부가가치기준



자사가 제조한 제8543.70호 제품을 아세안 국가와 EU 국가로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PSR(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한-아세안 FTA : RVC 40% 이상, 한-EU FTA : MC 45% 이하를 적용하여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고자 합니다. 상품가격 계상기준과 부가가치비율 계산방법을 문의드립니다.

※ CIF : 650, FOB : 600, EXW : 400, 총재료비 300(원산지재료비 : 270, 비원산지재료비 : 30)



▶ 부가가치 비율 산출

- ① 한-아세안 FTA 부가가치 비율(집적법) = $\frac{\text{원산지재료비(VOM:270)}}{\text{상품가격(FOB:600)}} \times 100 = 45\%$
- ② 한-아세안 FTA 부가가치 비율(공제법) = $\frac{\text{상품가격(FOB:600)} - \text{비원산지재료비(VNM:30)}}{\text{상품가격(FOB:600)}} \times 100 = 95\%$
- ③ 한-EU FTA 부가가치 비율(MC법) = $\frac{\text{비원산지재료비(VNM:30)}}{\text{상품가격(EXW:400)}} \times 100 = 7.5\%$

⇒ 집적법, 공제법, MC법 : 모두 충족

관련규정

■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4조(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지 않거나 생산되지 않은 상품)

- 제2조1항나호의 목적상, 제5조에 근거하여 부록 2에 규정된 상품을 제외하고 역내가치포함비율(이하 "RVC"라고 한다)이 FOB가격의 40% 미만인 아니거나 HS 4단위 세번변경(호변경)이 일어난 상품은 원산지상품으로 간주한다.
- RVC 계산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가. 집적법

$$RVC = \frac{VOM}{FOB} \times 100\%$$

VOM은 원산지재료의 가격을 말하며, 원산지재료, 직접 노동비용, 직접 경상비용, 운송비용과 이윤을 포함한다.

나. 공제법

$$RVC = \frac{FOB - VNM}{FOB} \times 100\%$$

VNM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으로, (가) 원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시점에서의 CIF가치, 또는 (나)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가장 이른 시점에 확인된 가격이다.

- ▶ FTA에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은 RVC(Regional Value Contents ; 역내 부가가치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법과 MC(iMport Contents ; 역외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법으로 구분합니다.
- ▶ RVC법은 집적법(BU), 공제법(BD), 순원가법(NC)으로 구분되며 집적법과 공제법은 적용되는 품목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순원가법은 한-미 FTA, 한-캐나다 FTA, 한-콜롬비아 FTA에서 자동차류(자동차 및 그 부분품)에 한정하여 사용합니다.
- ▶ 부가가치 비율을 산출하려면 산출방식과 상품의 가격 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품가격의 공제요소와 FOB 기준은 각 협정문 참조)

기준	칠레	싱가포르	EFTA EU 터키	아세안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 중국	페루 중미	미국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산출 방식	집적법 공제법	공제법	MC법	집적법 공제법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 자동차관련제품 :순원가법*	집적법 공제법	MC법 ※ 자동차관련제품 (8701호-8708호) :순원가법**, 집적법
상품 가격	조정가격	관세가격	공장도가격	FOB	FOB	FOB	조정가치	조정가치	공장도(거래)가격

$$* \text{미국, 콜롬비아 순원가 산출 방식 : RVC(NC)} = \frac{\text{순원가(NC)} - \text{비원산지재료비(VNM)}}{\text{순원가(NC)}} \times 100$$

$$** \text{캐나다 순원가 산출 방식 : RVC(NC)} = \frac{\text{비원산지재료비(VNM)}}{\text{순원가(NC)}} \times 100$$

▶ 부가가치기준 단계별 원가구성



- RVC(역내부가가치) : 역내에서 생산활동 등을 통해 창출한 부가가치
- 순원가 : 총원가 - 제외비용(로알티 등)
- EXW(공장도가격) : 총원가 + 목표이익
- FOB(본선인도가격) : EXW + 국내운송비 + 기타 경비(보험료 등)



한-아세안 FTA의 역내부가가치비율 계산시 집적법과 공제법을 선택할 수 있나요?



- ▶ 한-아세안 FTA에 따른 역내부가가치비율 산정시에는 공제법과 집적법 중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선택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한 회계연도 동안에는 선택된 방법을 유지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4조(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지 않거나 생산되지 않는 상품)

2. RVC 계산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³⁾.

3) 당사국들에게 RVC의 계산법을 채택함에 있어 그것이 집적법이던 공제법이던지 융통성이 부여된다. 투명성, 일관성 및 확실성을 증진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하나의 방법을 고수한다. 계산방식의 어떠한 변화도 새로운 방식의 채택하기 적어도 6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다. 수입 당사국에 의한 RVC 검증은 수출 당사국이 사용한 방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2015.8.23. 개정 합의)



한-인도 CEPA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이 CTSH + RVC 35%일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산정하기 위해서 생산자가격과 수출자가격 중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요?



- ▶ 한-인도 CEPA에서는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산정시 본선인도가격(FOB)으로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본선인도가격(FOB)은 수입자가 수출자(고객사)에게 실제지급 또는 지급할 가격(수출자의 이윤 포함)으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이며, 수출자가 수출시의 FOB 가격을 제공하여 준다면 그 가격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한-인도 CEPA

제3.1조(정의)

FOB 가격이란 상품이 지정된 수출항에서 운반기로 선적될 때, 상품의 가격과 운반기로 상품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 상품에 대하여 수출업자에게 실제로 지불되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이 가격산정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정해진다.

가공공정기준



중국으로부터 원사를 수입하여 면양말(제6115.95호)을 만든 뒤 인도로 수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사를 수입해 편직·봉직 등 과정을 거친 뒤 Tag를 붙여 완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산 원사만 사용하고 있고, 양말을 생산하며 큰 부가가치가 발생하진 않는데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 면양말 제품은 제61류로서, 한-인도 CEPA 협정서상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는 61류의 원산지기준을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한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이는 '가공공정기준'을 의미하며, 수입된 원사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양말을 생산하였다면 제조과정에서 세번변경이나 부가가치 발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역내산으로 원산지를 인정합니다.

관련규정

■ 한-인도 CEPA 부속서 3-가 2부(품목별원산지기준)

제61류 - 제63류	의류제품
61.01 - 63.10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



안녕하세요. 가공공정기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한-미 FTA 부속서 가 2부에서는 28류~38류까지의 화학제품과 39류~40류까지의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에 한해 원산지결정기준 외에 가공공정기준이라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되는 다른 협정이 추가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가공공정기준이란 불완전생산품(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총족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과 같이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한 종류입니다.
- ▶ 협정별로 차이는 있으나 가공공정기준이 28류~38류까지의 화학제품과 39류~40류까지의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에 한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미 FTA 부속서 6-가 제2부 품목별 원산지기준 제3류 주, 제2부 주, 제27류 주에서 들고 있는 양식, 재배, 화학반응 등과 같이 특정 제조·공정 방법 자체를 수행하면 해당 물품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제6부(28류~38류) 및 제7부(39류, 40류)와 관련하여 화학반응 등의 가공공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협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입자 크기 변화	표준 물질	이성체 분리	분리 금지
미국, 콜롬비아	28류~38류 (제3823호 해당상품 제외)	28류~38류	30류, 31류, 33류~38류 (제3808호 해당물품 제외)	30류, 31류, 33류	28류~38류	28류~38류	28류~38류
	39류, 40류	39류, 40류	39류, 40류	39류	-	39류	-
중미	28류~38류 (제3823호 해당상품 제외)	28류~38류	30류, 31류, 33류~38류 (제3808호 해당물품 제외)	30류, 31류, 33류	28류~38류	28류~38류	28류~38류
호주, 뉴질랜드	28류~38류 (제3823호 해당상품 제외)	28류~35류, 38류	30류, 31류, 제3302호, 3502.20호, 3506호~3507호, 3707호	30류, 31류	28류~32류, 35류, 38류	28류~32류, 35류	28류~38류
캐나다	28류, 29류	28류, 29류	-	-	-	29류	28류, 29류


※ 중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의 경우 제6부에 대해서만 가공공정기준을 두고 있으며, 한-캐나다 FTA에서는 화학반응, 정제, 이성체분리, 분리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음

관련규정

■ 한-미국 FTA 부속서 6-가 제2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6부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제28류~제38류)
주1	제6부의 규칙 1 내지 규칙 7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이 부의 류 또는 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그러한 규칙에서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주2	주1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이 부의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기준 또는 적용가능한 부가가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
규칙 1	화학 반응 원산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제3823호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주	이 부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 사항들은 원산지 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규칙 2	정제 정제된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다만, 그 정제는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다음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가. 불순물의 80퍼센트 이상이 제거된 경우, 또는 나.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 결과로 다음에 적합한 상품이 된 경우 1) 의약품, 의료용, 화장품용, 수의용, 또는 식용 물질 2) 분석, 진단, 또는 실험실용 화학제품 또는 시약 (하락)
규칙 3	혼합 및 배합 제30류, 제31류 또는 제33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제38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 또는 배합(분산을 포함한다)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규칙 4	입자 크기의 변화 제30류, 제31류 또는 제33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의도적이고 통제된 상품의 입자크기의 변형(중합체 용해와 그 후의 침전에 의한 미소화를 포함하고 단순 분쇄 또는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 크기, 정의된 입자크기 분포 또는 정해진 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재료와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진상품으로 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규칙 5	표준 물질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표준 물질의 생산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이 규칙의 목적상, '표준물질'(표준 용액을 포함한다)은 제조자에 의해 보증된 정확한 순도 또는 비율을 가진 것으로 분석, 검정, 또는 참조용에 적절한 조제품을 말한다.
규칙 6	이성체 분리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 또는 분리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규칙 7	분리 금지 인조 혼합물에서 하나 이상의 물질을 분리한 결과로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세번이 변경된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유리된 물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반응을 거치지 않았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특례기준 - 누적기준

 중국 현지공장에서 한국산 원재료(한-중 FTA C/O 발급)를 공급받아 완제품을 생산한 후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국산 원재료가 중국 원산지재료로 누적적용 가능한가요?



- ▶ ‘누적’이란 물품의 원산지 결정시 계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요소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하며 누적요소에 따라 ‘재료누적’과 ‘공정누적’이 있습니다.
- ▶ 재료누적과 공정누적의 인정여부 등은 협정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각 협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적기준 활용시 협정상대국의 재료를 우리나라 원산지재료로 간주되므로 재료누적에 의해서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충족이 용이해지고, 공정누적에 의해서는 가공공정기준 충족이 용이해집니다.
- ▶ 한-중 FTA는 누적기준을 규정한 조문에서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에서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를 명시하여 재료누적만을 인정하므로 최초 수출국(한국)에서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한국산 원재료가 최종제품 생산국(중국)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진다면 중국 원산지재료로 간주되어 누적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협정별 누적기준

협 정	공정누적	재료누적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	○
인도, 아세안, EFTA, EU, 터키, 중국, 베트남, 중미	×	

관련규정

■ 한-중국 FTA

제3.6조(누적)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에서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그렇게 결합된 상품 또는 재료는 다른 쪽 당사국에서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로 간주된다.



필리핀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해 다시 태국으로 수출합니다. 재료누적을 이용해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하는데 필리핀에서 수입하는 원재료의 누적 증빙자료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해도 되나요?

또, 위와 같은 경우 국내에서 수행된 공정이 충분가공원칙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 ▶ 한-아세안 FTA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는 AK Form으로 정하고 있어 재료누적의 근거서류는 수입신고필증이 아닌 해당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타당합니다.
- ▶ 그러나 필리핀 원재료로 재료누적을 활용하여 한국산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충분히 가공되지 않은 경우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8조의 불인정공정에 해당되어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심2019관0043(2019.07.17.) 발취

관세청장은 2017.5.19. 위 기획재정부장관의 회신과 관련하여 처분에 누적 입증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달하였다.

한-아세안 FTA 협정 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하고 한-아세안 FTA 적용대상 상품과 동일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세안 상품무역협정에 근거하여 발행한 원산지증명서(Form D), WTO 협정에 따른 일반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Form A), 비특혜 원산지증명서(Form B) 등이 포함될 수 있음

특례기준 - 최소허용수준



자사는 원재료 FRAME(제7209호), CENTER POLE(제7209호), TERMINAL(제8518호) 등을 사용하여 완제품 스피커(제8518.29호)를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완제품 원산지결정기준 중 CTH 적용시 TERMINAL의 부품이 부가가치비중은 미비(1.5% 이내)하지만 HS 4단위가 변경이 되지 않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한-미 FTA에서 최소허용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최소허용기준 규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제8518.29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18.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이란 최종제품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비중(가격 혹은 중량)이 협정에서 정하는 수준 이하인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해주는 특례기준입니다. 일반품목의 최소허용수준은 한-칠레만 기준가격의 8%이고, 나머지 협정은 10%까지 허용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 눈에 보는 FTA’를 참고)

▶ 해당 TERMINAL 부품이 HS 4단위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원재료가 조정가격의 10% 이내인 경우 ‘최소허용수준’을 적용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한-미국 FTA

제6.6조(최소허용수준)

1. 부속서 6-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6-가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조정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규정한다. 다만, 그러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용 요건을 위하여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제4.2조(원산지 규정 및 관련 사안) 제7항이 제1항을 대신하여 적용된다.

특례기준 - 최소허용수준(협정별 최소허용수준 해석)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 중 특정세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제외 세번에 대해서 협정 제6.6조(최소허용수준)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한-미 FTA 제8482.10호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제8482.10호부터 제8482.80호까지 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82.9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특정 세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 ▶ '협정 부속서 6-나(최소허용수준에 대한 예외)'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제외 세번의 물품도 최소허용수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에서 '제2103.90-90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에서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세번(제7류 및 제9류)에도 미소기준 적용이 가능한가요?

[한-아세안 FTA 제2103.90-9090호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제2103.90.9090호의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류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7류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한-아세안 FTA' 제10조(최소허용수준)제1항에 따르면 '최소허용수준'은 세번변경기준에 한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그러나 제2103.90호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중 단서조항은 세번변경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미소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례기준 - 중간재



우리 회사는 역내산과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여 중간부품을 생산한 후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여 국내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중간재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출자 뿐만 아니라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생산자도 원산지결정시 중간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 ▶ 중간재는 최종제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제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자가 생산재료)를 의미하며 원산지재료로서 지위를 획득한 재료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 ▶ 한-EU FTA에서는 '중간재' 규정은 없으나 원산지규정 제5조제1항 가목에서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 제품이 되어, 그 제품이 그 이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제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국내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FTA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산지결정이 이루어져야 최종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이 정확하게 확정되는 것으로 원산지확인서 작성시에도 FTA 협정별 품목별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과 방법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어야 하므로 원산지확인서의 원산지를 결정시 중간재 규정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5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

1. 제2조나호의 목적상,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제품은 부속서 2의 목록 또는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충분히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 조건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을 나타내며, 그러한 재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가.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제품이 되어, 그 제품이 그 이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제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비원산지 및 원산지 재료가 가공을 거쳐 비원산지 제품이 되어, 그 제품이 그 이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제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이 고려된다.

<주 해>

3. 제5조제1항나호의 목적상,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비원산지 재료를 생산하는데 사용된 자가 생산된 원산지 재료를 포함한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제품의 공장도 가격에서 공제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다.

4. 자가 생산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재료의 생산으로 초래된 모든 비용과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추가된 이윤과 동등한 이윤 금액을 포함한다.

특례기준 - 대체가능물품



자사는 재고관리기법(평균법)으로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는 대체가능한 원산지 상품(A)과 비원산지상품(A')을 함께 재고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원산지상품(A) : 300개, 비원산지상품(A') : 700개 중에 한 번에 상품이 100개가 선적된다면 원산지상품 30개, 비원산지상품 70개로 보는 것이 맞나요?



- ▶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할 때(일정기간 재료의 총수량 : 1,000개)
 - 총수량 대비 원산지상품 비율 $300/1,000 = 30\%$
 - 일정기간 수출된 상품 100개 : 원산지상품 30개($100 \times 30\%$)와 비원산지상품 70개($100 - 30$)가 사용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 대체가능물품은 과일, 볼트, 너트 등과 같이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원산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상업적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료 또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 즉, 원산지 결정 목적상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은 물리적·회계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리적으로 구분·보관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 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기업의 재고관리기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관리를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 ▶ 협정별 대체가능물품 적용범위

협 정	적용대상
아세안·EFTA·EU·인도·터키·중국	재료
칠레·싱가포르·미국·페루·호주·캐나다·콜롬비아·베트남·뉴질랜드·중미	재료·상품

관련규정

■ 한-중미 FTA

제3.8조(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1. 특혜관세대우 부여의 목적상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모든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는 다음에 의하여 구별한다.
 - 가. 각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의 물리적 분리, 또는
 - 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인정되는, 평균법, 후입선출법(LIFO) 또는 선입선출법(FIFO)과 같은 재고관리기법의 사용
2. 특정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재고관리기법은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회계연도 동안 그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특례기준 - 간접재료



원산지결정 특례기준 중 간접재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화학제품 제조시에 주요 원료 외에 촉매, 첨가제 등 많은 원료를 투입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원료 중 간접재료인 촉매에 대해서 원산지결정시 고려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간접재료(Indirect Materials)란 최종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지만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협정별로 간접재료를 재료로 보지 않는 협정과 원산지재료로 간주하는 협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원산지결정시 재료로 보지 않는 경우 비원산지물품이라도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충족할 필요가 없으며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재료비에 계상하지 않고, 제조간접비에 포함시킵니다.
- ▶ 간접재료는 원산지결정시 '재료'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칠레,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에서의 간접재료는 역내·역외산 재료여부 상관없이 원산지재료로 간주하고 있어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원산지재료비로 계상됩니다.
- ▶ 간접재료 예시

- 생산용 재료 : 촉매, 연료, 공구, 주형, 작업복, 윤활유
- 시험용 재료 : 상품의 시험 및 검사용 설비, 장치, 소모품
- 설비용 재료 : 설비, 건물 유지보수용 부품, 재료
- 생산에 사용된 그 밖의 재료로서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

- ▶ 협정별 간접재료 비교

구분	협정
직접재료에서 제외 (제조간접비로 계상)	싱가포르·EFTA·아세안·인도·EU·페루·미국·터키 캐나다·중국·베트남·콜롬비아·중미
원산지재료로 간주	칠레·호주·뉴질랜드

관련규정

■ 한-칠레 FTA

제4.9조(간접재료)

1. 간접재료는 생산되는 장소와 무관하게 원산지재료로 간주된다. 그 재료의 가치는 당해 상품 생산자의 회계기록에 기록된 비용이 된다.
2. 간접재료의 가치는 당해 상품이 생산되는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근거하여야 한다.

특례기준 - 기타



신발을 생산하여 EU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저희가 제조한 신발을 중국에서 수입한 포장지에 포장해서 수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FTA 관세혜택을 받는데 고려할 부분이 있을까요?



- ▶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7조에 따르면 “HS통칙 5에 따라 포장재가 품목분류의 목적상 제품에 포함되는 경우, 그 포장재는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포함되고 제품이 원산지제품인 경우 원산지제품으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 신발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지는 신발과 함께 품목분류 되는 경우 그 내용물품(신발)의 원산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내용물(신발)이 한국산인 경우 포장지도 한국산으로 인정되고, 다른 협정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7조(원산지자격 단위)

1. 이 의정서의 규정의 적용을 위한 자격 단위는 HS의 상품분류체계를 사용하여 분류를 결정하는 경우 기본 단위로 간주되는 제품이다. 따라서
 - 가. 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구성된 제품이 HS 상에서 단일의 호로 분류되어 있을 때 그 전체가 자격의 단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 나. 탁송화물이 HS의 동일한 호에 분류된 많은 동일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 의정서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각 제품이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2. HS 통칙 5에 따라 포장재가 품목분류의 목적상 제품에 포함되는 경우, 그 포장재는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포함되고 제품이 원산지제품인 경우 원산지제품으로 간주된다.

6

협정적용 요건

제3국 송장



제3국 발행 송장거래 시 이탈리아 생산자가 Packing List에 Invoice customer를 스위스 수출자로 기재하고 우리나라 수입자를 수하인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 ▶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란 EU 역내에 소재하며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입니다.
- ▶ 따라서, 이탈리아 소재 생산자가 우리나라 수입자를 수하인(Consignee)으로 발행한 포장명세서에 한-EU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거래당사자 요건]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수입자, 수출자, 생산자)간 거래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다만, 제3국 송장(협정당사국이 아닌 제3국 소재 기업이 발행한 상업송장)이 발행된 경우 칠레,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과의 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자 정보(송장발행 회사 상호, 주소, 국가명)를 기재하여야만 특혜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업서류에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받는 EFTA, EU, 터키와의 협정의 경우 협정당사국 내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3국 송장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중 FTA 적용 관련하여, 제3국 발행 송장거래에서 원산지증명서에 비당사국 정보(회사명, 국가 등)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따라 비당사국에서 송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5란에 비당사국 송장발행 회사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 ▶ 동 협정 제3.21조에서는 원산지증명서와 세관 서면 신고서간 불일치 같은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 관세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당사국 송장거래임에도 원산지증명서에 비당사국 송장발행회사의 정보가 미기재된 경우 동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3국 송장인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필수 표기항목]

협 정	적용대상
한-칠레 FTA	C/O 제9란(Remarks)에 제3국 송장 작성자 이름, 회사명, 주소 기재
한-아세안 FTA	C/O 제13란(Third Country Invoicing)에 “√” 표시하고, 제7란에 송장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 기재
한-인도 CEPA	C/O 제14란(Third country invoicing)에 “√” 표시하고, 송장 발행한 회사의 상호, 주소 및 국가명 기재
한-중국 FTA	C/O 제5란(Remarks)에 비당사국 송장발행 운영인의 법적이름 기재
한-베트남 FTA	C/O 제13란(Remarks)에 “Non-Party Invoicing”라고 적고, 송장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 기재

관련규정

■ 한-중국 FTA

제3.22조(비당사국 송장)

수입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송장이 비당사국에서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제3.21조(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

제3.23조를 저해함이 없이, 판독불가, 표면상 결함 및 원산지증명서와 세관 서면 신고서 간 불일치와 같은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가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수입자는 정정된 원산지증명서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관세당국의 요청일부터 5근무일 이상, 30근무일 이하의 기간을 부여받는다.



한-아세안 FTA에서 제3국 송장이 발급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10란(송장번호 및 발급일자)에 제3국 수출자가 발급한 송장번호와 발급일자를 기재하여도 되나요?



- ▶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증명서 제10번란에는 계약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송장번호가 기재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3국 송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관련 무역서류에 의하여 제3국 무역거래임과 원산지증명서상 물품과 실제 거래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국 수출자가 발행한 송장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13란에 제3국 송장 발행 여부 및 7번란에 상호와 국가명 기재하여야 합니다.



한-아세안 FTA에서 제3국 발행 송장거래 시 수입신고서의 해외거래처와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 ▶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와 수입신고서의 해외거래처는 동일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아세안 FTA는 제3국 송장발행의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임이 확인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와 수입신고서상 해외거래처가 상이하여도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하므로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발행송장 대상”임을 명시하고 발행회사, 국적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 한-아세안 FTA

제1조(정의)

“제3국”이라 함은 수입당사국 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을 말한다.

■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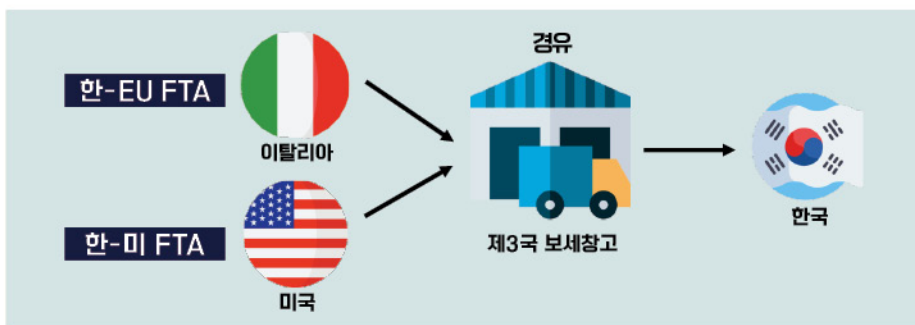
제21조(특례)

1. 상업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의 계산으로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에도,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그 물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물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발행송장 대상”임을 명시하고,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적과 같은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직접운송



당사는 이탈리아, 미국으로부터 각각 스케이트 보드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해당 국가는 모두 제3국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였다가 당사와 계약이 체결되면 동 물류기지에서 국내로 물품을 수출합니다. 물품은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하' 어떤 작업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동 물품은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여 한-EU, 미국 FTA 적용이 가능한지요?



▶ 한-EU FTA 적용 : 불가능

- 한-EU FTA 협정문에서 탁송화물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BWT 거래에 따라 제3국에서 분할 선적된 물품은 협정에서 규정한 단일 탁송화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한-미국 FTA 적용 : 가능

- 한-미국 FTA 협정문에는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지 않고,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물품을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3국 보세구역에 장치하였다가 추후 물품계약이 이루어진 때 제3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수입한 경우도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한-미 FTA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조(정의)

카. 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한다.

제13조(직접 운송)

1.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된다.

가.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나. 수출당사자에게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다.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 **한-미국 FTA**

제6.13조(통과·환적)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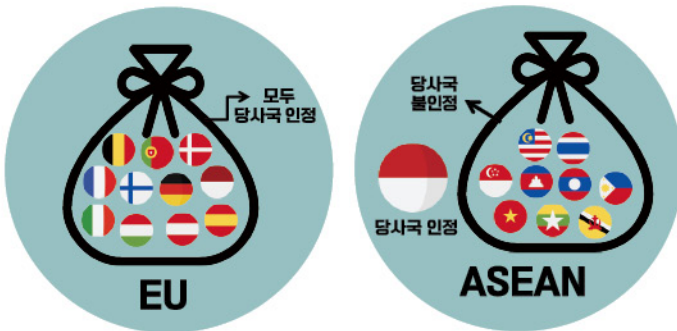
가.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인도네시아로부터 주석괴를 수입하는데 인도네시아 소재 A사는 운송 여건 등을 이유로 물품을 싱가포르로 수출하여 보세구역에 보관하다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경우에도 한-아세안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동일한 경우로 EU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EU 회원국을 경유하더라도 직접운송기준을 충족하나요?

한-EU&ASEAN FTA 비교



- ▶ 한-아세안 FTA : 직접운송 간주요건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됩니다.
한-아세안 FTA에서는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간에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 한해 직접운송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가 아세안 소속 국가라도 위 사례의 수출당사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송 요건에 관련된 고려에 의해 정당화'되고 동 협정문 부속서 부록1 제19조에 근거해 직접운송 간주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예외적으로 직접운송으로 보아 협정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 한-EU FTA : 한-EU FTA 협정의 경우 협정당사자는 유럽연합(EU)이므로 물품의 원산지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제한 없이 EU 회원국을 경유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9조(직접운송)

1. 특혜 관세 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유하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에서 기계부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사에서 운송경로가 바뀌어 중국에서 환적했습니다. 미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는 수취하였는데, 협정관세 적용을 위하여 직접운송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나요?



- ▶ 원칙적으로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FTA 체결국간 직접운송되어야 하나 불가피하게 비당사국에서 환적할 경우에는 단순환적을 증빙하는 환적국 세관통제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 ▶ 주변 환적국의 세관통제 확인서류 예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환적국에서 동 서류를 발급받아 FTA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동 서류 외에도 인정 가능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관통제 확인서류 예시 -

1. 중국 비가공증명서(상해해관만 발급, 단순환적 증빙 가능)
2. 중국 재수출증명서(전국 발급, 단순환적 증빙 가능)
3. 싱가포르 비가공증명서(단순환적 증빙 가능)
4. 홍콩 비가공증명서(중국궤 홍콩 경유시 사용, 단순환적 증빙 가능)
5. 대만 비가공증명서(단순환적 증빙 가능)
6. 일본 세관통제 확인서류(단순환적 증빙 가능)

- 불인정 세관통제 확인서류 예시 -

1. 중화인민공화국 출구화물보관단(단순환적 증빙 불가)
 2. 중화인민공화국 진구화물보관단(단순환적 증빙 불가)
- ▶ 또한 해당서류 양식은 FTA 포털(<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 > 공지사항 688번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한-EFTA FTA 직접운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스위스에서 물품을 항공편으로 운송예정이었으나 항공편 부족으로 스위스에서 T1 DOCUMENT를 발행하여 독일로 육상보세운송 후 독일세관에서 이를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적되어 한국으로 해상운송되었습니다. EFTA 협정적용을 위한 직접운송원칙의 증빙서류로 사용 가능한가요?



- ▶ 원산지물품(originating goods)의 경우에도 체약상대국이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선적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직접운송원칙)
- ▶ 다만, 한-EFTA FTA 제14조(직접운송) 및 「FTA 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에서 규정한 아래의 내용에 따라 스위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비당사국인 독일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상기 협정 및 고시내용에 따라 스위스에서 우리나라까지의 직접운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규정

■ 한-EFTA FTA

제14조(직접 운송)


1. 이 협정상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동안 그 상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 하에 있어야 한다.
2. 수입자는 관세당국의 요청시 제1항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적절한 증거를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당국에 제공한다.

■ FTA 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① 세관장은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제우편물은 주소기표지 또는 우편송장을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일체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추가적인 가공 또는 작업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개별 협정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
- ② 수입자는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관장이 원산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과선하증권

 인도네시아에서 원재료를 수입합니다. 이번에 선사 운항노선이 바뀌어 싱가포르를 경유하는데 직접운송 인정서류로 통과선하증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통과선하증권의 요건이 무엇인가요?



- ▶ 통과선하증권이란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화물 품목 및 수량 등의 상세한 선적정보를 담고 있는 선하증권으로서, 특정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일의 선하증권(AWB 포함)을 의미합니다.
- ▶ 따라서, 단일의 운송서류에 화물의 전체 운송경로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운송인이 화물에 대해 모든 운송구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확인 가능한 경우라면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9조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 3 제9조(직접운송)의 이행 목적상,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 나. 원산지증명서 원본
- 다.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분
- 라. 그 밖에 부속서 3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된 B/L의 운송경로 기재 란에 경유국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Description란에 전체 운송경로(선적항, 경유지, 도착항)가 기재된 경우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가능한가요?



- ▶ B/L이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되고, B/L상에 선적항·경유지·도착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B/L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발행한 경우 직접운송증빙을 위한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 B/L이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되고 B/L의 운송경로 기재 란에 선적지(수출당사국)와 도착지(수입당사국)가 기재되어 있고 Description란에 기재된 내용으로 물품의 전체운송경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운송경로 기재 란에 경유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율적용 우선순위



프랑스로 철강제의 관 연결구류(제7307.93호)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해당 품목은 덤핑방지관세 44%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한-EU FTA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실행관세율(3.7%)+덤핑방지관세율(44%)'로 47.7%의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다만,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도 실행관세에 대해서는 협정요건을 갖추면 FTA 특혜를 적용받아 '협정관세율+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 품목에 대해 EU는 협정세율이 0% 이므로 협정적용시 44%(0%+44%)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 ▶ 즉,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이라도 실행관세 부분은 협정요건을 갖추어 협정세율 적용시 FTA 특혜적용이 가능합니다.

[관세법상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구분	내용
제1순위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관세법 제69조제2호에 한함)(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최우선하여 적용)
제2순위	FTA 협정관세(3, 4, 5, 6, 7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제3순위	WTO일반양허, WTO개도국간양허, APTA,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도국간 협정관세, 국제협력관세(4,5,6,7 보다 낮은 경우)
제4순위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할당관세는 5순위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제5순위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GSP)
제6순위	잠정관세
제7순위	기본관세

[FTA 적용물품에 대한 관세율 적용순위]

1순위	덤핑, 상계, 보복, 긴급, 특정국 긴급, 특별긴급, 조정(제69조제2호)	▶ 관세율이 높낮이에 관계없이 최우선 적용
2순위	FTA에 의한 협정세율 < 관세법상 적용세율	▶ 협정세율 적용
	FTA에 의한 협정세율 > 관세법상 적용세율	▶ 관세법상 세율 적용
	FTA에 의한 협정세율 = 관세법상 적용세율	▶ 수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협정세율 적용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



6개월 전 독일에서 5,500유로 기계(원산지제품)를 수입했습니다. 이 기계의 수리 목적으로 지난달에 수출하여 이달에 재수입될 예정입니다. 수리비가 2,000유로인데 탁송화물 전체 가격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만약 포함된다면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요?



- ▶ 이번 재수입하는 물품은 수리된 물품이 탁송화물이고 물품이 수리되어 해당 물품의 가치가 증가된 것이므로 수리비는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수입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 한-EU FTA에서 정한 원산지기준과 기타 다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여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다면 가공비와 운임에 대해서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 또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수리비를 포함한 물품금액이 해당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므로 물품금액과 수리비를 합산한 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8조(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법 제10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원재료로 베트남에서 완제품을 생산 후 우리나라로 재수입하는 경우, 재수입시 해당 완제품의 임가공비에 대하여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 ▶ 한-베트남 FTA상 베트남에서 임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 협정과 법령에서 정한 협정관세 적용요건(원산지증명서 구비, 직접운송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베트남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으로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리비와 왕복운임은 과세하고 있는데, 한-미 FTA에서 수리비 및 왕복운임에 대한 과세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상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하며,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당초 수출된 물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수리에 소요된 기타 제비용을 포함합니다. 즉, 수리비·왕복운임을 포함한 물품의 가치가 과세가격입니다.
- ▶ 따라서 한-미 FTA 및 법령에서 정하는 수리·개조의 범위에 해당하고 관세면제대상물품 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수리비 및 왕복운임 모두를 면제합니다.

관련규정

■ 한-미국 FTA

2.6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물품)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에 관계없이,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 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그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또는
 - 나.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
2. 어떠한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3. 이 조의 목적상, “수리 또는 개조”는 다음의 작업이나 공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 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 FTA 관세특례법

제30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수리 또는 개조 등을 할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HS번호 상이시 처리방법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와 우리나라 수입신고서의 HS번호 4단위가 상이하였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보니 모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하면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상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수출국과 수입국 HS번호가 상이할 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기준으로 수입국 HS번호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원산지증명서상 결정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입신고 HS번호의 세번변경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 HS번호로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4단위 세번이 동일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CTH, 수입신고서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CTSH인 경우 협정적용이 가능한지요?



- ▶ 4단위 세번 동일하고 원산지증명서상 세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CTH, 수입신고서상 세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CTSH인 경우는 원산지증명서로 수입국 세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결정기준이 RVC 40%로 기재되고 수입신고서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CTH or RVC 40% 일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 ▶ 수입신고서의 원산지결정기준이 CTH 또는 RVC 40%인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결정기준이 RVC 40%인 경우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2020.8.4.)

2. 협정상대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와 수입신고서의 HS번호가 다른 경우 협정(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요령(2020.8.4. 개정)

가.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 1) 'HS번호'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의 'HS번호'와 무관하게 협정관세 적용
- 2) 관련협정 : 한-EU FTA, 한-EFTA FTA, 한-터키 FTA

나.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

- 1)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특혜)관세 적용(2020.8.4. 개정)
- 2) 관련협정 : 한-아세안 FTA, 한-미 FTA, 한-칠레 FTA, 한-인도 CEPA, 한-싱가포르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페루 FTA, 한-뉴질랜드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콜롬비아 FTA, 중미와의 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 3) 다음의 경우 사안별로 판단하여 협정(특혜)관세 적용 등 처리(2020.8.4. 개정)
 - 가)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협정(특혜)관세 적용 (2018.7.9., 2020.8.4. 개정)

(적용예시)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판 단 근 거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 또는 역내가치발생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 수출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이므로 원산지제물에 해당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역내가치발생기준 35%	· 역내가치기준 35%를 초과하므로 원산지제물에 해당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선택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40% 또는 세번변경기준	· 역내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 제물에 해당

나)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여부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협정(특혜)관세 적용. 다만, 세관장이 협정상대국 발급기관의 정정발급 거부 등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특혜)관세 적용 처리 후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산지조사 부서에 원산지조사 의뢰(2018.7.9. 신설, 2020.8.4. 개정)

(적용예시)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판 단 근 거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조합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40% 및 세번변경기준	·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확인 불가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	

7 관련서류 보관하기

원산지증빙서류 보관



한-아세안 FTA를 이용하는 수출자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폐기해도 되나요?



- ▶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13조는 수출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신청관련 기록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국내법령인 「FTA 관세특례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의거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13조

1. 제14조 내지 제15조에 따른 검증 절차의 목적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생산자 그리고/ 또는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신청관련 기록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FTA 관세특례법

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②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 수출자 및 생산자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5년. 다만, 계약상대국이 중국인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당사는 세관에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이 되니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했던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제출이 생략된 서류들을 5년 동안이나 보관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운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 ▶ 인증수출자의 혜택은 원산지증명 발급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등 첨부서류의 '제출'이 생략되는 것이지 첨부서류의 작성, 보관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 다만,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를 반드시 종이서류로 보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FTA포털 > 원산지검증 > 서류보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 또는 서버 등 자료보관매체 등을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③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그 구분에 따른 서류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 또는 서버 등 자료보관매체 등을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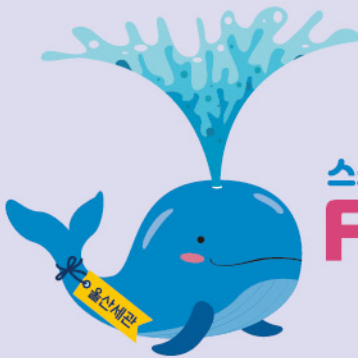
- 보관방법
 - 1개의 원산지증명서에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를 일괄하여 원산지증명서별 1권(책)으로 편철하여 날짜순으로 보관
 -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자료를 디스크 또는 이와 유사한 전산매체*에 보관하되 관련 증빙자료와 원산지증명서와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관리번호 부여
- * 원산지증빙서류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 또는 서버 등 자료보관매체 등을 이용하여 보관 가능
- 보관매체 및 관리방법
 - 아래의 매체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자료 보관, 다만 관련 증빙자료를 신속하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관리/보관
 1. (종이서류) 모든 서류를 종이로 출력하여 편철 보관
 2. (이미지 전산파일) 모든 서류를 이미지 상태로 전산매체에 보관
 3. (전자서식) 모든 서류를 전자서식으로 전산매체에 보관
 4. (혼합) 위 1,2,3을 혼합/연계하여 보관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수출자	<p>가.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p> <p>나. 수출신고필증</p> <p>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p> <p>라.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p> <p>마.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p> <p>바.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p> <p>사.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p> <p>아.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p>
생산자	<p>가. 수출자 또는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p> <p>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p> <p>다. 제2호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p> <p>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p>
수입자	<p>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 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p> <p>나. 수입신고필증</p> <p>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p> <p>라.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p> <p>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p> <p>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p> <p>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p>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관]

- 수입자 :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 수출자 및 생산자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다만, 계약상대국이 중국인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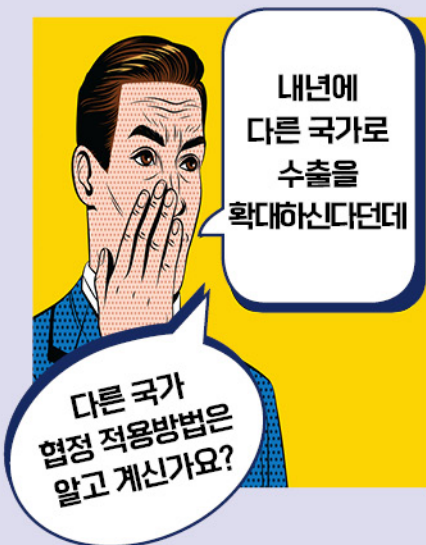


스스로 찾아가는

FTA 단계별

문고 답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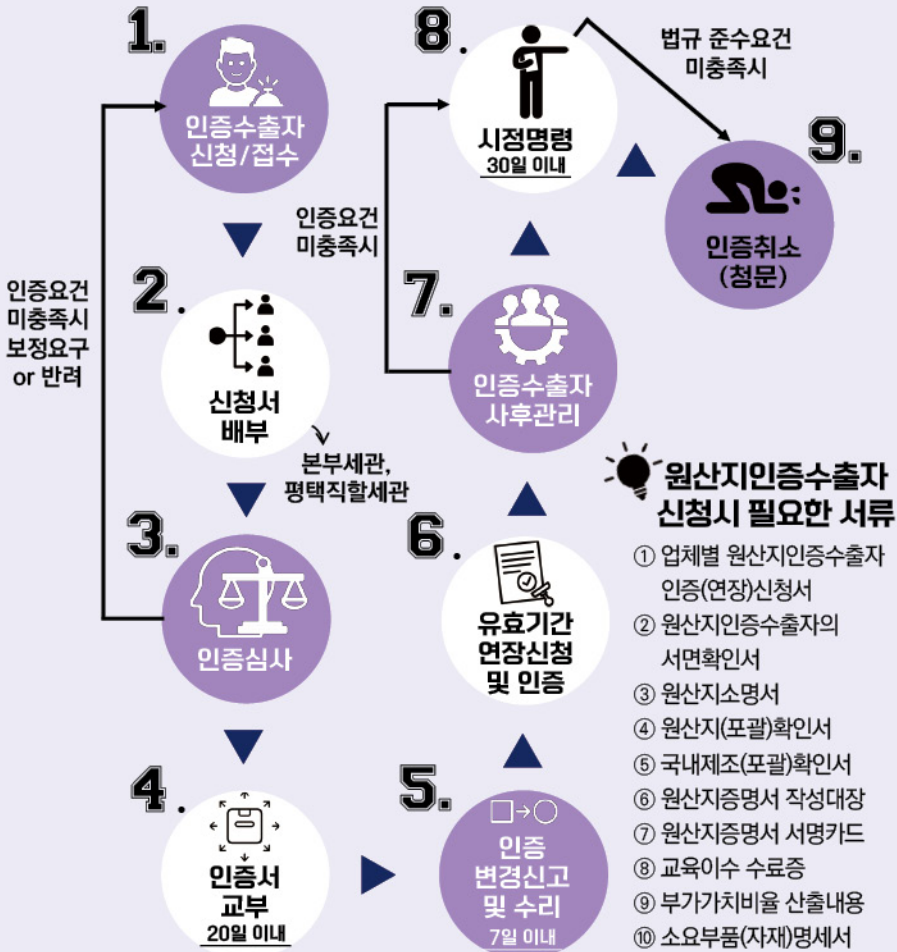
IV. 참고



1) 서류 작성사례



원산지인증수출자 업무절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2쪽 중 제1쪽)

※ 세관기재관(For Official Use Only)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 일

1. 신청 구분	신규인증 [√]	인증유효기간 연장 []
----------	------------	---------------

2. 신청인	상호	(한글) 울산무역 (영문) ULSAN TRADE CORP.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1
	주소	(한글)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90번길 27번지 (영문) 27, 90 DAEAMRO NAMGU ULSAN	대표자 성명 (한글) 김울산 (영문) Kim Ulsan
	전화번호	052-123-4567	팩스번호 052-123-4568
	전자우편주소	ulsantrade@ulsan.co.kr	인증번호

※ 세관에서 기재

3. 인증 요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생산하는 자로서 전산처리시스템 또는 원산지증명능력 보유 여부	[√]에 []아니오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 여부	[]에 [√]아니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상 비지 및 관리 여부	[√]에 []아니오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 여부	[√]에 []아니오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최근 2년간 서류의 보관의무 위반 여부	[]에 [√]아니오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최근 2년간 수입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 또는 작성·발급 여부	[]에 [√]아니오	

4. 주요 수출(생산)물품					
연번	품목번호(HS No.)	품명	적용대상협정	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
1	8708.40	TORQUE CONVERTER	한-EU FTA	KR	MC 50%

5. 원산지관리전담자						
연번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1	이나라	대리	수출과	052-123-2210	052-123-4568	Nara@bada.com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8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2020년 XX월 XX 일

신청인: 울산무역 김울산 (김울산)

123-45-47891

울산무역 김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90번길 27번지



관세청장
대구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의 원산지소명서(원산지증명을 위한 전산처리시스템 현황자료 제출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2.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제출합니다) 3.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로 없음
------	--	-----------

210mm×297mm(80g/㎡(재활용품))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요건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외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직원 중 공인받은 원산지관리 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신청인	상 호	사업자번호
	울산무역	123-45-47891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김울산	052-123-4567
	전자우편(e-mail)	팩스(FAX)
ulsantrade@ulsan.co.kr	052-123-4568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90번길 27번지	

상기 본인은 다음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후 발행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 확인서류) 일체
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020년 XX월 XX일

제 출 자 김 울 산 (김 울 산)

123-45-47891

울산무역 김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90번길 27번지



대구세관장 귀하

※ 동 서면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의 협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자율증명에 필요한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297m[백상지 80g/m²(제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원산지서명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2쪽 중 제1쪽)

수출자·생산자				
1. 수출자	상 호	울산·무역	사업자등록번호	123-45-47891
	성 명	김울산	전화/팩스번호	052-123-4567
	주 소 (전자우편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90번길 27번지 (ulsantrade@ulsan.co.kr)		
2. 생산자	상 호	울산·무역	사업자등록번호	123-45-47891
	성 명	김울산	전화/팩스번호	052-123-4567
	주 소 (전자우편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90번길 27번지 (ulsantrade@ulsan.co.kr)		

물 품 명 세				
3. 품명/규격	TORQUE CONVERTER / BDTC9027		4. 품목번호(HS No.)	8708.40
5. 물품가격	가격조건	공 장 도가격(EXW) [√] 본산인도가격(FOB) [..]	6. 원산지결정기준	MC 50%
	금 액	₩650,000	7. 자유무역협정명칭	한-EU FTA
8. 주요생산 공 정	공급자재 교정 및 검사작업 → 절삭·연삭 가공 → 최종 결함			

원재료명세서						
9. 연번	10. 재료명	11. 품목번호 (HS No.)	12. 원산지	13. 가 격		14. 공급자 (생산지)
				수 량	가 격	
1	IMPELLER SHELL	8708.40	KR	1	250,000	온산무역
2	REACTOR BLADE	8708.40	미상	1	20,000	서울정공
3	PISTON SAND	8708.40	미상	1	100,000	울산기계
4	FRICTION FACING	6813.89	미상	1	30,000	대구산업
5	TORSION SPRING	7320.20	미상	1	30,000	대구산업
6	RIVET	7318.23	미상	1	50,000	부산무역
7	SEAL RING	3926.90	KR	1	30,000	부산무역
15. 합 계	원산지재료(국산)				280,000	
	비원산지재료(수입산)				230,000	
	합 계				510,000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16. 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7.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8.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부가가치비율 : 35.3%)		
19. 결합기준	예 []	아니오 [√]	20. 특정공정기준	예 []	아니오 [√]
21. 역외가공기준	예 []	아니오 [√]	22. 최소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3. 누적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4. 직접운송 여부	예 [√]	아니오 []
25. 기 타	예 []	아니오 [√]	26. 원산지 결정	충족 [√]	불충족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제출합니다.

작 성 자 : 이 나 라 (이 나 라)
 직 위 : 대리
 상 호 및 주 소 : 울산무역(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90번길 27번지)
 작 성 일 : 2020년 XX 월 XX 일 123-45-47891



대구세관장 귀하

울산무역 김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90번길 27번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첨부서류 제출요령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제품 생산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 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을 세관에 직접 제출 가능합니다.

수출자 등 기재요령

최종물품에 대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실제 수출자와 생산자를 각각 기재합니다.

만약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품목번호 기재요령

HS code 6단위까지만 기재 합니다.

협정별 가격조건

*EXW : 한-EFTA, EU, 터키, 캐나다
 *FOB : 한-아세안, 칠레, 페루, 호주, 중미 등

재료명 기재요령

원재료가 많을 경우 'BOM 참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기재 근거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등 입증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

가격 기재 기준

부가가치 or 미소기준 적용시 작성합니다.

부가가치비율 기재 방법

원산지기준을 적용해 도출된 부가가치 비율을 기재합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기재합니다. (2쪽 중 제1쪽)

1. 발급번호(Reference No.) : 가나다 - 20-00001

2. 공급하는 자 (Supplier)	상호(Company Name) 온산무역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108-12-12345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김온산	전화번호(Tel) 051-123-5678 팩스번호(Fax) 051-123-5679
3. 공급받는 자 (Supplied to)	주소(Address)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목길 27	인증수출자 인증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 010-18-2000008
	전자우편주소(E-mail) urin@uri.com	
	상호(Company Name) 울산무역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123-45-67891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김울산	전화번호(Tel) 052-123-4567 팩스번호(Fax) 052-123-4568
	주소(Address) 울산광역시 남구 마암로 90번길 27번지	
	전자우편주소(E-mail) ulsantrade@ulsan.co.kr	

공급물품 명세서(Good(s) Statements)

4. 연번 (S/N)	5. 자유무역 협정명칭 (Name of FTA)	6. 품목번호 (HS No.)	7. 품명·규격·설명 (Description·Specification of Good(s))	8. 수량 및 단위 (Quantity & Unit)	9. 원산지 결정 기준 (Origin Criterion)	10. 원산지 충족 여부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Y) (N)	11. 원산지 (Country of Origin)	12. 원산지포괄 확인기간 (Blanket period) (YYYY/MM/DD ~ YYYY/MM/DD)
1	한-EU FTA	8708.40	IMPELLER SHELL	1	MC50%	[√] []	KR	2020.XX.XX ~ 2021.XX.XX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e origin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of 「Enforcement Rules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108-12-12345
온산무역 김온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목길 27

작성 자(Declarer) : 김온산 (김온산)
직 위(Title) : 대표
상호 및 주소(Company Name/Address) : 온산무역(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목길 27)
작성 일(Date) : 2020년 XX월 XX일 (YYYY/MM/DD)

210mm×297mm(매장지 80g/㎡(재활용품))

원산지(포괄)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입니다.

발급번호 기재요령

발급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기재요령

공급자가 인증수출자로 인정받아 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기재합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경우 기관 발급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및 원산지확인서를 제외한 그 밖의 서류 제출과 원산지의 확인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수량·단위 기재요령

포괄확인서가 아닌 단순 원산지 확인서일 경우에만 수량·단위를 기재합니다.

원산지포괄 확인기간 기재요령

작성일자가 아닌 물품 공급 일정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물품 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자 기재요령

공급하는 자가 작성합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내제조(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Inward Processing)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중 제1쪽)

1. 발급번호(Reference No.)	2020-XXXX-XX	
2.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 (Blanket period)	2020년 XX월 XX일 부터 (From YYYY/ MM/ DD to	2021년 XX월 XX일까지 (YYYY/ MM/ DD)
3. 공급하는 자 (Supplier)	상호 부산무역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123-23-25555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김부산	전화번호(Tel) 051-123-4567 팩스번호(Fax) 051-123-4568
	주소(Address)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전자우편주소(E-mail) Busan@busan.com	
4. 공급받는 자 (Supplied to)	상호(Company Name) 울산무역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123-45-67891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김울산	전화번호(Tel) 052-123-4567 팩스번호(Fax) 052-123-4568
	주소(Address)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90번길 27번지	
	전자우편주소(E-mail) ulsantrade@ulsan.co.kr	

5. 공급물품 명세(Good(s) Statements)					
연번 (S/N)	품목번호 (HS No.)	품명·규격 (Description· Specification of Good(s))	수량 및 단위 (Quantity & Unit)	가격 (Value)	주요 생산공정 (Production Process)
1	7318.23	RIVET	1EA	50,000	주물 제작 및 조립

주요 생산공정 기재요령
공급물품의 주요 생산공정을
간략히 기재하면 됩니다.

6. 재료 명세(Material Statements) → 5. 공급물품 명세에 대한 재료내역을 적어주면 됩니다.							
공급물품 연번 (S/N in Entry 5)	재료연번 (S/N)	품목번호 (HS No.)	원산지재료 해당여부 (Originating Material(Y/N))	품명·규격 (Description· Specification of G ood(s))	수량 및 단위 (Quantity & Unit)	가격 (Value)	비고 (Remarks)
1	1	7201.10	N	iron for casting	10kg	50,000	-
	2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e inward processing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1 of 「Enforcement Rules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Trade Agreements.

123-23-25555
부산무역 김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0



작성 자(Declarer) : 김부산 (김부산)
직 위(Title) : 대표
상호 및 주소(Company Name/Address) : 부산무역(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작성 일(Date) : 2020년 XX월 XX일 (YYYY/MM/DD)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수료증

회사명: 울산무역

성명: 이 나라

위 사람은 ○○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주관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 (FTA KOREA 시스템 교육)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과정명: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FTA KOREA 시스템 교육) 과정

교육기간: 2020.○○.○○. 14:00 ~17:00

이수시간: 3시간(인증점수 6점)

강의내용

- FTA KOREA 시스템 설정 및 사용설명
- 기초데이터 작성 및 원산지결정기준 판정
- FTA KOREA 실습 및 오류사항 해결

2020년 ○○월 ○○일

○○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



제품의 부가가치 비율

- 제품명 : TORQUE CONVERTER
- 모델규격 : BDTC9027
- 적용협정 : 한-EU

구분	역내산(원산지) 재료 가치의 합계	A = 비원산지 재료 가치의 합계(VNM)	B = 공장도가격(EXW)	부가가치비율 = A/B MC법 적용
원/비율	280,000	230,000	650,000	35.3%

작성일자 : 2020. XX. XX

작성 자 : 울산 무역 수출과 이나라 (이 나라)

123-45-47891

울산 무역 김 울산

부산광역시 남구 대왕동 30대길 27번지



비원산지 재료 가치의 합계 기재요령
 국내(KR)이 아닌 미상 또는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 가치의 합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역내산(원산지)재료 가치의 합계 기재요령
 국내(KR)에서 생산된 재료 가치의 합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협정상대주에서 수입한 재료 중 원산지증명이 있다면 해당재료도 국내산으로 인정 됩니다.

공장도가격 기재요령
 제품의 공장도가격에서 환급 되는 모든 내국세(부가가치세 등)를 공제한 가격을 적어야 합니다.

부가가치비율 기재요령
 한-EU에서 적용되는 부가 가치비율을 계산해 기재 하시면 됩니다.
 * MC= 비원산지재료 / 공장도가격

소요부품(자재) 명세서 (Bill of Materials)

○ 완제품 품명 : TORQUE CONVERTER

○ 모델명 : BDT09027

○ 적용대상 협정: 한-EU

연번	품명(재포명)	세번부호 (HS NO)	원산지	소요량	단가	가격(원)	제조 및 구매처	입증서류
1	IMPELLER SHELL	8708.40	KR	1	250,000	250,000	온산무역	원산지확인서
2	REACTOR BLADE	8708.40	미상	1	20,000	20,000	서울정공	거래명세서
3	PISTON SAND	8708.40	미상	1	100,000	100,000	물산기계	거래명세서
4	FRICITION FACING	6813.89	미상	1	30,000	30,000	대구산업	거래명세서
5	TORSTION SPRING	7320.20	미상	1	30,000	30,000	대구산업	거래명세서
6	RIVET	7318.23	미상	1	50,000	50,000	부산무역	국내제조확인서
7	SEAL RING	3926.90	KR	1	30,000	30,000	부산무역	원산지확인서
8								
9								
10								
				원산지 재료비		280,000		
				비원산지재료비		230,000		
				합계		510,000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관련업무 제출을 위하여 작성,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2020. XX. XX

작성 자: 이나라 (이나라)

123-45-47891



을 산 무역 김을 산

을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90번길 27번지

소요량 기재요령

부가치 기준에서는 소요량 및 재료의 원산지와 가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소요 재료명과 원산지, 비원산지의 HS Code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입증서류 기재요령

원산지재료에 대해서는 원산지 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부가치기준에서 무역협정으로 포함하기 위함) 등으로 입증서류를 표기합니다.

제조공정도

○ 제품명 : TORQUE CONVERTER

○ 모델규격 : BDTC9027

공정명	공급재료 교정 및 검사작업	철사-연삭기공 공정	부품 최종결합	완제품
세부 설명	 <p>공급부품 성능 테스트 및 교정작업 실시</p>	 <p>MCT 선반, 밀링머신 등과 같은 공작기계를 활용한 기공</p>	 <p>특수 용접작업을 통한 부품 결합</p>	
투입 재료	공급 자체 품질 및 기능 테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IMPELLER SHELL ● #2 REACTOR BLADE ● #3 PISTON SAND ● #4 FRICTION FAC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IMPELLER SHELL ● #2 REACTOR BLADE ● #3 PISTON SAND ● #4 FRICTION FACING ● #5 TORSION SPRING ● #6 FIVET ● #7 SEAL RING 	

작성일자 : 2020. XX. XX

작성 자 : 울산무역 수출팀 이나라 (이나라)

123-45-47891



울산무역 김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대안로 90번길 27번지



원산지증명서 신청 방법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필요한 서류

-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② 원산지소명서
- ③ 원산지(포괄)확인서
- ④ 국내제조(포괄)확인서
- ⑤ 부가가치비율 산출내역
- ⑥ 소요부품(자재)명세서
- ⑦ 제조공정도
- ⑧ 거래명세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적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를 기재합니다. (4쪽 중 제1쪽)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신청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작성방법 참조
------	-----	--------------

1. 신청구분 신규발급 [√] 재발급() [] 정정발급() [] 소급발급(선적 후 발급) []

2. 신청인 구분 생산자 [√] 수출자 [√] 관세사 [] 기타() []

상호(대표자) **울산무역 김울산** 사업자등록번호 **123-45-47891**

3. 원산지인증 수출자 비해당 [√] 해당 [] (인증번호:)

4. 적용자유 무역협정 **한-인도 CEPA**

5. 수출자 상호(대표자) **울산무역 김울산** 사업자등록번호 **123-45-47891**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90번길 27번지** 전화/전자우편주소 **052-123-4567**

6. 생산자 상호(대표자) **울산무역 김울산** 사업자등록번호 **123-45-47891**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90번길 27번지** 전화/전자우편주소 **052-123-4567**

7. 수입자 상호 **FTA Auto Inc.** 대표자 **Steve Karrel**

주소(국가) **3th floor ,star building ,Jordan Road, Worli NaKa, Mumbai 400030 (INDIA)** 전화번호 **+91-22-1234-5678**

8. 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신고번호(수리일) XXXXX-20-XXXXXX (20.XX.XX) 본선인도가격(FOB USD) **\$1,150**

수출신고필증란 번호 품목번호 (HS No.) 품명·규격 금액(USD) 원산지결정기준 부가가치비율 및 비율계산

완전 생산 세번 변경 부가 가치 결합 기준 특정 공정 기타

001/001 8708.40 TORQUE CONVERTER /BDTC9027 \$1,150 [] [] [] [V] [] [] [] [] 79% (\$1,150-\$103.5)/\$1,150

/ [] [] [] [] [] [] [] []

9. 운송수단/선(편)명 선박 [√] 항공기 [] 기타 [] / 10. 적재항(출항일) 20.XX.XX

11. 목적국/항구 INDIA / Port of Mumbai 12. 포장종류부호/개수 CS/1

13. 총중량 5KG 14. 송품장 번호/발급일 ABC123456/20.XX.XX

15. 원산지증명서 특례 제3국 송품장 [] 전 시 []

연결 원산지증명서 []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2020년 XX월 XX 일

123-45-47891

신청인: **울산무역 김울산 (김울산)**

울산무역 김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90번길 27번지



울산세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기재요령

- 수출물품을 분할·동시 포장해 적재할 때 : 선하 증권 및 항공운송장별로 C/O 작성합니다.
- 수출물품 중 일부품목만 C/O 발급하는 경우 : 수출 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C/O작성합니다.

재발급 근거

C/O 분실·도난·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입니다.

소급발급 시 주의사항

협정별로 선적 후 발급을 적용하는 시기가 상이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비율 기재요령

해당 품목번호 원산지기준에 따른 부가가치비율 계산

수출신고필증란 번호 기재요령

수출신고서 상에서 C/O 발급을 원하는 물품의 란 번호 기재

첨부서류	<p><신규발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다. 우편물·택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계약 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제출합니다) 원산지소명서(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p><재발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발급 신청사유서 <p><정정발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 원본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정정사유 입증 서류 	<p>수수료 7,000원 (다만, 세관장 발급 시 면제)</p>
------	--	---

작성 방법	
항 목	작성 내용
1. 신청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또는 "소급발급" 중에 해당하는 것에 "√" 를 기재합니다. - 재발급, 정정발급 뒤 괄호 안에 구(舊)신청번호를 기재합니다.
2.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수출자", "관세사" 또는 "기타" 중 해당하는 것에 "√" 를 기재합니다. ○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원산지인증 수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해당" 또는 "해당" 중 해당하는 것에 "√" 를 기재합니다. ○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합니다. ○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4. 적용자유 무역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국가와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5. 수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주소: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를 기재합니다. ○ 전화/전자우편주소: 발급신청 부서(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신청부서 공용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6. 생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주소: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를 기재합니다. ○ 전화/전자우편주소: 발급신청 부서(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신청부서 공용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7. 수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상호를 기재합니다. ○ 대표자: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회사의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 주소: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주소를 기재합니다. ○ 전화번호: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8. 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고번호(수리일): 수출신고필증상의 신고번호 및 신고수리일 기재합니다. ○ 본선인도가격(FOB USD): 수출신고필증상의 총신고가격을 미화로 기재합니다. ○ 수출신고필증 란 번호: 수출신고필증상의 란 번호를 기재합니다. (란 번호/총 란 수)
* 수출품목의 개수가 총 3개 이상인 경우에는 품목번호 (HS No.), 품명, 규격 및 금액은 기재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번호(HS No.): 품목번호 6단위를 기재합니다. ○ 품명·규격: 수출신고필증상의 품명·규격을 기재합니다. ○ 금액(USD): 수출신고필증상의 해당 물품의 신고가격을 신고환율로 환산하여 미화로 기재합니다. ○ 원산지결정기준: 해당 수출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비율 및 비율계산: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9. 운송수단 /선(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중 해당하는 것에 "√" 를 기재합니다. ○ 선명 또는 편명을 기재합니다.
10. 적재항 (출항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품목의 적재항(또는 적재예정항), 출항일(또는 출항예정일)을 기재합니다.
11. 목적국 /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품목의 최종 목적국 및 항구를 기재합니다.
12. 포장종류 부호/개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품목의 포장종류 부호와 포장개수를 기재합니다.
13. 총중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품목의 총중량을 기재합니다.
14. 송품장번호 /발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 번호와 발급일을 기재합니다.
15. 원산지증명서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국 송품장", "전시", "연결 원산지증명서" 또는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중 해당하는 것에 "√" 를 기재합니다.
* 처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지확인인 필요한 경우: 10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이내 2. 위 제1호 외의 경우: 3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이내

작성례						
신규발급의 경우	신규발급 [√] 재발급 []					
정정발급 []	정정발급 [] 소급발급 []					
수출자가 신청하는 경우	수출자 [√]					
생산자 []	수출자 [√]					
관세사 []	기타 []					
○○물산(주) 홍○○	123-45-67890					
해당하는 경우	비해당 []					
해당 [√] (인증번호:)						
한-아세안 FTA						
○○물산(주) 홍○○	123-45-67890					
□□시 ○○구 △△대로 123	02-123-4567/○○○@abcd.com					
○○상사(주) 김△△	234-56-78910					
□□시 ○○구 △△로	031-123-4567/○○○@bcde.com					
○○ Corporation	John △△					
John △△	55 Newton Road #10 ○○ house					
065-1234-5678	010-10-16-12345678(2016/07/01)					
USD 12,000	총 5란 중 3란 품목의 경우: 3 / 5					
0304.31	Tilapias(Oreochromis spp.)					
USD 12,000	세면번경 및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완전 생산	세면번경	부가가치	결합가치	특정가공	역외가공	기타
[]	[]	[]	[√]	[]	[]	[]
역내부가가치 50% 이상 기준인 경우 - 55% (USD10,000- USD4,500)/USD10,000		선박 [√] 항공기 [] 기타 []				
KE 123						
수출품목의 적재항(또는 적재예정항), 출항일(또는 출항예정일)을 기재합니다.		부산항(2016/07/01)				
수출품목의 최종 목적국 및 항구를 기재합니다.		베트남/하노이항				
수출품목의 포장종류 부호와 포장개수를 기재합니다.		CS/1,000				
수출품목의 총중량을 기재합니다.		1,000Kg				
송품장 번호와 발급일을 기재합니다.		ABC123456/2016.07.01				
"제3국 송품장", "전시", "연결 원산지증명서" 또는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중 해당하는 것에 "√" 를 기재합니다.		제3국 송품장 [√] 전시 [] 연결 원산지증명서 []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원산지명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2쪽 중 제1쪽)

수출자·생산자				
1. 수출자	상 호	울산무역	사업자등록번호	123-45-47891
	성 명	김울산	전화/팩스번호	052-123-4567
	주 소 (전자우편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90번길 27번지(ulsantrade@ulsan.co.kr)		
2. 생산자	상 호	울산무역	사업자등록번호	123-45-47891
	성 명	김울산	전화/팩스번호	052-123-4567
	주 소 (전자우편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90번길 27번지(ulsantrade@ulsan.co.kr)		

물 품 명 세				
3. 품명/규격	TORQUE CONVERTER / BDTC9027		4. 품목번호(HS No.)	8708.40
5. 물품가격	가격조건	공 장 도가격(EXW) [] 본선인도가격(FOB) [V]	6. 원산지결정기준	CTH+BD 40%
	금 액	₩1,000,000 / \$1,150	7. 자유무역협정명칭	한-인도 CEPA
8. 주요생산 공 장 지	공급자재 교정 및 검사작업 → 절삭·연삭 가공 → 최종 결함			

가격조건 작성 시 주의사항
 각 협정별로 적용되는 가격
 조건기준이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도록 합니다.
 * EXW 가격기준 :
 한-EFTA, EU, 타기, 캐나다

원재료명세서						
9. 연번	10. 재료명	11. 품목번호 (HS No.)	12. 원산지	13. 가 격		14. 공급자 (생산자)
				수 량	가 격	
1	IMPELLER/SEAL	8708.40	KR	1	₩200,000	온산무역
2	SPRING SEAT	7326.20	이상	1	₩20,000	서울정공
3	THRUST NEEDLE BEARING	8482.40	이상	1	₩100,000	울산기계
4	FRICTIONFACING	6813.89	이상	1	₩30,000	대구산업
5	TORSION SPRING	7320.20	이상	1	₩30,000	대구산업
6	RIVET	7318.23	KR	1	₩100,000	부산무역
7	SEAL RING	3926.90	이상	1	₩30,000	부산무역
15. 합 계	원산지재료(국산)			₩300,000		
	비원산지재료(수입산)			₩210,000		
	합 계			₩510,000		

'원산지인정요건 검토'란
 작성시 주의사항
 충족해야 하는 원산지기준
 외에 다른 원산지기준도 충족
 한다면 모두 예를 체크합니다.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16. 원전생산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V]	17.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예 [V]	아니오 []
18.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V] 아니오 [] (부가가치비율 : 79%)				
19. 결합기준	예 [V]	아니오 []	20. 특정공정기준	예 []	아니오 [V]
21. 역외가공기준	예 []	아니오 [V]	22. 최소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V]
23. 누적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V]	24. 직접운송 여부	예 [V]	아니오 []
25. 기 타	예 []	아니오 [V]	26. 원산지 결정	충족 [V]	불충족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제출합니다.

작 성 자 : 이 나 라 (이 나 라)
 직 위 : 대리
 상 호 및 주 소 : 울산무역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90번길 27번지) 123-45-47891
 작 성 일 : 2020년 XX월 XX일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90번길 27번지
 울산무역 김울산



울산세관장 귀하

210mm×297mm(박상지 80g/㎡(재활용품))

작성 방법																																							
항 목	작성 내용																																						
1. 수출자	○ 물품을 실제로 수출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를 기재합니다.																																						
2. 생산자	○ 물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실제로 생산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등을 기재합니다.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3. 품명/규격	○ 물품의 품명, 모델명, 규격 및 상표명 등을 기재합니다. 예) TV : CamOOng OO-1234 ; OO TV																																						
4. 품목번호(HS No.)	○ 품명은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5. 물품가격	○ 물품의 품목번호(6단위)를 기재합니다.																																						
6. 원산지결정기준	<p>○ 가격조건 : 본선인도가격(FOB) 또는 공장도거래가격(EXW) 중 해당하는 것에 “√”를 기재합니다.</p> <p>○ 금액 :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재합니다. 통화단위는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p> <p>○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원산지결정기준</th> <th style="width: 50%;">기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가. 원전생산 물품</td> <td>- WO</td> </tr> <tr> <td>나. 세번변경기준</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2단위 세번변경기준</td> <td>- CC</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4단위 세번변경기준</td> <td>- CTH</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6단위 세번변경기준</td> <td>- CTSH</td> </tr> <tr> <td>다. 부가가치기준</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td> <td>- B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td> <td>- BU</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역외산재로 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td> <td>- MC</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td> <td>- NC</td> </tr> <tr> <td>라. 결합기준</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td> <td>-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td> <td>- CC(CTH또는CTSH) + SP</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td> <td>- BD(BU, MC 또는 NC) + SP</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td> <td>-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SP</td> </tr> <tr> <td>마. 특정공정기준</td> <td>- SP</td> </tr> <tr> <td>바.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td> <td>- OP</td> </tr> <tr> <td>사. 기타기준</td> <td>- Other</td> </tr> </tbody> </table> <p>○ 결합기준 기재시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비율을 함께 기재합니다. 예) - 세번변경기준과 공제법으로 부가가치 비율이 35% 이상 : CTH + BD 35% - 집적법으로 부가가치 비율이 30%이상일 것과 특정공정기준이 동시에 적용 될 경우 : BU 30% + SP</p>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가. 원전생산 물품	- WO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CC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CTH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CTSH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BD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BU	- 역외산재로 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MC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NC	라.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CC(CTH또는CTSH) + SP		- BD(BU, MC 또는 NC) + SP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SP	마. 특정공정기준	- SP	바.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사. 기타기준	- Other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가. 원전생산 물품	- WO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CC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CTH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CTSH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BD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BU																																						
- 역외산재로 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MC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NC																																						
라.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CC(CTH또는CTSH) + SP																																						
	- BD(BU, MC 또는 NC) + SP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SP																																						
마. 특정공정기준	- SP																																						
바.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사. 기타기준	- Other																																						
7. 자유무역협정명칭	○ 해당 물품에 적용할 자유무역협정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적용협정이 아세안과의 협정일 경우: 한-아세안 FTA																																						
8. 주요생산공정	○ 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기재합니다. 예) 연사를 수입하여 직물을 가공한 후 의류를 제조하는 경우 ① 직조 : 면사 85%, 합성사 15%로 면직물 제조(3m×100m) ② 날염 : 면직물에 국내 ○○업체가 생산한 염료로 염색 ③ 재단 및 봉제 : 남성용 셔츠 제작(50Pcs)																																						
9. 연 번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사용된 원재료가 다수일 경우 별지에 기재합니다.																																						
10. 재 료 명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11. 품목번호(HS No.)	○ 원재료의 품목번호(6단위)를 기재합니다.																																						
12. 원 산 지	○ 원재료의 원산지국가명을 기재합니다.																																						
13. 가 격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과 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그 물품이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14. 공급자(생산자)	○ 원재료의 공급자(생산자)의 상호·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 및 팩스번호를 기재합니다.																																						
15. 합 계	○ 재료 중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과 그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16. ~25. 원산지기준	○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적용된 기준의 충족여부를 기재합니다. 예)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 [√]”로 기재합니다.																																						
26. 원산지결정	○ 19 - 23 란에 “예 [√]”로 기재한 경우 세부 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 원산지소명서에 적은 내용으로 원산지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충족”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불충족”에 “√”를 기재합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원산지(포괄) 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2쪽 중 제1쪽)

1. 발급번호(Reference No.) : 가나다 - 20-00001

2. 공급하는 자 (Supplier)	상호(Company Name) 온산무역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108-12-12345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김온산	전화번호(Tel) 02-123-5678
	주소(Address)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당목길 27	팩스번호(Fax) 02-123-5679
	전자우편주소(E-mail) onsantrade@onsan.or.kr	인증수출자 인증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 010-18-2000008
3. 공급받는 자 (Supplied to)	상호(Company Name) 울산무역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123-45-67891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김울산	전화번호(Tel) 052-123-4567
	주소(Address)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90번길 27번지	팩스번호(Fax) 052-123-4568
	전자우편주소(E-mail) (ulsantrade@ulsan.co.kr)	

공급물품 명세서(Good(s) Statements)

4. 연번 (S/N)	5. 자유무역 협정명칭 (Name of FTA)	6. 품목번호 (HS No.)	7. 품명·규격 [Description ·Specification of Good(s)]	8. 수량 및 단위 (Quantity & Unit)	9. 원산지 결정기준 (Origin Criterion)	10. 원산지 결정 기준 (Country of Origin)		11. 원산지 (Country of Origin)	12. 원산지포괄 확인기간 (Blanket period of Origin [YYYY/MM/DD ~ YYYY/MM/DD])
						충족 여부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충족 여부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1	한-인도 CEPA	8708.40	IMPELLER SHELL	1	CTH+ BD 40%	[√]	[]	KR	2020.XX.XX ~ 2021.XX.XX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e origin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of 'Enforcement Rules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108-12-12345
온산무역 김온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목길 27



작성 자(Declarer) : 김온산 (김온산)
직 위(Title) : 대표
상호 및 주소(Company Name/Address) : 온산무역(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당목길 27)
작성 일(Date) : 2020년 XX 월 XX 일 (YYYY/MM/DD)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작성방법																	
항목	작성내용																
1. 발급번호	○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발급번호를 기재합니다.																
2. 공급하는 자	○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하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 공급하는 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합니다.																
3. 공급받는 자	○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4. 연번	○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기재합니다.																
5. 자유무역협정명칭	○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등																
6. 품목번호(HS No.)	○ 공급물품의 품목번호(6단위)를 기재합니다.																
7. 품명·규격	○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기재합니다.																
8. 수량 및 단위	○ 원산지포괄확인이 아닌 경우 공급물품의 수량 및 단위를 기재합니다.																
9. 원산지결정기준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원산지결정기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가. 완전생산 물품</td> <td style="text-align: center;">- WO</td> </tr> <tr> <td>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6단위 세번변경기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 CC - CTH - CTSH</td> </tr> <tr> <td>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 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 BD - BU - MC - NC</td> </tr> <tr> <td>라.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CC(CTH또는CTSH) + SP - BD(BU, MC 또는 NC) + SP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SP</td> </tr> <tr> <td>마. 특정공정기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 SP</td> </tr> <tr> <td>바.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td> <td style="text-align: center;">- OP</td> </tr> <tr> <td>사. 기타기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 Other</td> </tr> </tbody> </table>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 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D - BU - MC - NC	라.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CC(CTH또는CTSH) + SP - BD(BU, MC 또는 NC) + SP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SP	마. 특정공정기준	- SP	바.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사. 기타기준	- Other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 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D - BU - MC - NC																
라.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CC(CTH또는CTSH) + SP - BD(BU, MC 또는 NC) + SP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SP																
마. 특정공정기준	- SP																
바.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사. 기타기준	- Other																
10. 원산지결정 기준 충족여부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기재합니다. 예) 원산지인정오건을 충족한 경우 충족에 "√" 를 기재합니다.																
11. 원산지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으로 기재합니다.																
12. 원산지포괄확인기간	○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기재합니다. 예) 2016. 07. 01 - 2018. 06. 30 ※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수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내제조(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Inward Processing)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중 제1쪽)

1. 발급번호(Reference No.)		2020-XXXX-XX	
2.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 (Blanket period)		2020년 XX월 XX일 부터 2021년 XX월 XX일까지 (From YYYY/ MM/ DD to YYYY/ MM/ DD)	
3. 공급하는 자 (Supplier)	상호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부산무역	123-23-25555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051-123-4567	
	김부산	팩스번호(Fax) 051-123-4568	
주소(Address)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전자우편주소(E-mail) Busan@busan.com			
4. 공급받는 자 (Supplied to)	상호(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울산무역	123-45-67891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052-123-4567	
	김울산	팩스번호(Fax) 052-123-4568	
주소(Address)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90번길 27번지			
전자우편주소(E-mail) ulsantrade@ulsan.co.kr			

5. 공급물품 명세(Good(s) Statements)					
연번 (S/N)	품목번호 (HS No.)	품명·규격 (Description· Specification of Good(s))	수량 및 단위 (Quantity & Unit)	가격 (Value)	주요 생산과정 (Production Process)
1	3926.90	SEAL RING	1EA	30,000	주물 제작 및 프립

6. 재료 명세(Material Statements)							
공급물품 연번 (S/N in Entry 5)	재료연번 (S/N)	품목번호 (HS No.)	원산지재료 해당여부 (Originating Material(Y/N))	품명·규격 (Description· Specification of G ood(s))	수량 및 단위 (Quantity & Unit)	가격 (Value)	비고 (Remarks)
1	1	3902.10	N	POLYPROPYLENE	10kg	30,000	-
	2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e inward processing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1 of 「Enforcement Rules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0



작성 자(Declarer) : 김부산 (김복산)
 직 위(Title) : 대표
 상호 및 주소(Company Name/Address) : 부산무역(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작성 일(Date) : 2020년 XX월 XX일 (YYYY/MM/DD)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방법	
항목	작성내용
1. 발급번호	○ 국내제조(표관)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발급번호를 기재합니다.
2. 국내제조표관확인기간	○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기재합니다. ※ 국내제조표관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수 국내제조확인서로 봅니다.
3. 공급하는 자	○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4. 공급받는 자	○ 국내제조(표관)확인서상의 물품을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5. 공급물품명세	○ 공급물품의 연번, 품목번호(HS No.) 6단위, 품명·규격, 수량 및 단위, 가격(원화로 기재) 및 주요 생산공정(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기재합니다.
6. 재료명세	○ 5번 항목에 기재된 공급물품별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재료에 대하여 연번, 품목번호(HS No.) 6단위, 품명·규격, 수량 및 단위, 가격(원화로 기재) 등을 기재합니다. ○ 단, 공급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중 원산지의 확인에 필요한 재료의 내역만을 기재합니다. (필요시 원산지재료 내역만을 기재하거나 비원산지재료 내역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사용된 재료가 원산지재료에 해당할 경우 '원산지재료 해당여부' 란에 'Y', 아니면 'N' 으로 기재합니다.

제품의 부가가치 비율

- 제품명 : TORQUE CONVERTER
- 모델규격 : BDTC9027
- 적용협정 : 한-인도 CEPA

구분	역내신용산액) 제로 가치의 합계	여내신지 제로가치의 합계	부가가치비율 = RVC(BD)40% 적용 = $((B - A) / B) * 100$
원/비율	₩300,000	₩210,000	₩1,000,000 79%

부가가치비율 기재요령

* 집적법과 공제법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FOB 가격 기재요령

수출자의 이윤을 포함한 실제 지급가격에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적으시면 됩니다.

작성일자 : 2020. XX. XX
작성 자 : 울산무역 수출과 이나라 (이나라)

123-45-47891



울산 무역 김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90번길 27번지

소요부품(자재) 명세서 (Bill of Materials)

○ 원재 품 명 : TORQUE CONVERTER

○ 모델명 : BDTC9027

○ 적용대상 협정: 한-인도 CEPA

번	품명(재료명)	세번부호 (HS NO)	원산지	소요량	단가	가격(원)	제조 및 구매처	인증서류
1	IMPELLER SHELL	8708.40	KR	1	200,000	200,000	온산무역	원산지확인서
2	SPRING SEAT	7326.20	미상	1	20,000	20,000	서울정공	거래명세서
3	THRUST NEEDLE BEARING	8482.40	미상	1	100,000	100,000	울산기계	거래명세서
4	FRICION FACING	6813.89	미상	1	30,000	30,000	대구산업	거래명세서
5	TORSION SPRING	7320.20	미상	1	30,000	30,000	대구산업	거래명세서
6	RIVET	7318.23	KR	1	100,000	100,000	부산무역	원산지확인서
7	SEAL RING	3926.90	미상	1	30,000	30,000	부산무역	국제제조확인서
8								
9								
10								
				원산지 재료비		₩300,000		
				비원산지재료비		₩210,000		
				합계		₩510,00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관련업무 제출을 위하여 작성,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2020. XX. XX

작성 자: 이나라 (이 나라)

123-45-47891



울산 무역 김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대안로 90번길 27번지

제조공정도

○ 제품명 : TORQUE CONVERTER

○ 모델규격 : BDTC9027

공정명	공급재료 교정 및 검사작업	 <p>공급 부품 성능 테스트 및 교정작업 실시</p>	<p>절삭·연삭기공을 통한 서브 부분품 제조</p>  <p>MCT 신반, 밀링머신 등과 같은 공작기계를 활용한 부분품 제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IMPELLER SHELL ● #4 FRICTION FACING 	부품 최종결합	 <p>특수 용접작업을 통한 부품 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IMPELLER SHELL ● #2 SPRING SEAT ● #3 THRUST NEEDLE BEARING ● #4 FRICTION FACING ● #5 TORSION SPRING ● #6 RIVET ● #7 SEAL RING 	완제품	
	세부 설명	<p>공급 자체 품질 및 기능 테스트</p>	<p>작성일자 : 2020. XX. XX</p>				
투입 재료							

작성 자 : 울산무역 수출팀 이나라 (이나라)

123-45-47891



울산무역 김을산

울산광역시 남구 대원로 90번길 27번지

거래일자		거래명세표																	
영 민 간 판 별 는 지	상호 (법인명)	울산무역		귀하	등록번호	1	9	0	-	4	5	-	5	6	7	8	9		
	사업장 주소	123-45-47891			상호 (법인명)	울산기계		영	진	충	청	도	영	진	충	청	도		
	전화번호	김울산			사업장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바다길 23													
	합계금액	₩100,000			전화	052-204-1234		팩	스	052-204-		1235							
일	일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5	1	PISTON SAND		UM1392		1		100,000		100,000									
합										계		100,000		100,000					
연수 자	김철수	납 품 자	이민아	물 결	현 금	신 용	미 수	소 계	₩100,000										

(영수증발행처)

거래명세표 기재 이유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원재료
가격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자료로 세금계산서나 거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FTA 용어사전

- **가공공정기준**(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 불완전생산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중 품목별기준의 한 종류로서 역내에서 협정이 정한 생산공정을 거쳐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석유·화학·섬유제품 등 적용범위가 제한적(가공공정 예 : 방직, 재단, 봉제, 정제, 화학반응 등)
- **간접재료**(Indirect Material)
: 제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재료를 의미하며 제품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 설비의 작동에 사용되는 재료를 포함
- **공장도거래가격**(EXW, Ex-Work)
: 물품을 생산공장에서 반출할 때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으로서 그 물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 가격
- **대체가능물품**(Fungible Goods)
: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이 상업적으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물품(재료 포함)
- **류(類)·호(號) 및 소호(小號)**(Chapters, headings, and subheadings)
: 품목분류상의 2단위(류)·4단위(호) 및 6단위(소호)의 품목번호
- **본선인도가격**(FOB, Free On Board)
: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드는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
- **불인정공정**(Non-qualifying operation)
: 역내에서 단순한 공정을 수행한 경우 비록 다른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불충분공정이라고도 함
- **비원산지물품 또는 비원산지재료**(Non-Originating Goods or Non-Originating Materials)
: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이 규칙에 따라 해당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가 대한민국 또는 체약상대국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재료

· **부가가치기준**(VAR : Value Added Rule)

: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RVC 방식 (역내부가 가치기준)	집적법(BU) (Build Up)	- 원산지재료비가 상품가격에 차지하는 비율을 역내가치로 보는 방식 $RVC(BU) = \frac{\text{원산지재료비}}{\text{상품가격}} \times 100$
	공제법(BD) (Build Down)	- 상품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가치로 보는 방식 $RVC(BD) = \frac{\text{상품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비}}{\text{상품가격}} \times 100$
	순원가법(NC) (Net Cost)	- 순원가에서 비원산지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가치로 보는 방식(미국, 콜롬비아 순원가산출 방식) $RVC(NC) = \frac{\text{순원가} - \text{비원산지재료비}}{\text{순원가}} \times 100$
MC 방식 (역외부가 가치기준)	MC (iMport Contents)	- 공장도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비가 일정비율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방식 $RVC(NC) = \frac{\text{비원산지재료비}}{\text{공장도가격}} \times 100$

· **상호대응세율제도**(Reciprocal tariff rate)

: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 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

· **생산**(Production)

: 재배·채굴·수확·어로·번식·사육·수렵·제조·가공·조립 또는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물품을 획득하는 행위

· **세번변경기준**(CTC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 역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HS와 상품의 HS가 일정 수준 이상 변경되면 그 상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Change of Chapter)	비원산지재료와 상품 2단위 세번이 변경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Change of Tariff Heading)	비원산지재료와 상품 4단위 세번이 변경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비원산지재료와 상품 6단위 세번이 변경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 **실행관세**(Applied Tariff)

: 통관당국이 실제로 국경에서 부과하는 관세율. 기본적으로 관세율 적용순위에 의하여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

· **역내생산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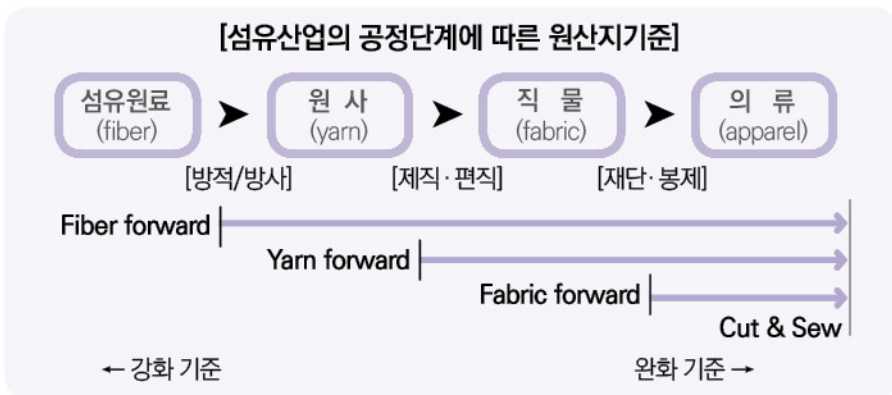
: 어떤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품 생산이 모두 체약국 역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 **역외가공(OP : Outward Processing)**

: 제품 생산에 최종 공정 또는 중간의 일부공정이 역외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역외가공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외가공에 사용된 역내재료의 부가가치를 최종 생산품의 역내부가가치 계산에 누적함으로써 부가가치기준에 의한 원산지 요건을 완화

· **원사기준(Yarn forward Rule)**

: 최종제품이 직물 또는 의류인 경우 FTA 체결국 내에서 생산된 원사로 직물을 짜고(제직·편직), 의류를 재단, 봉제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



- Fiber forward Rule(섬유원료기준) : 최종제품이 사, 직물 또는 의류인 경우, FTA 체결국 내에서 섬유원료(Fiber)부터 원산지물품을 사용해서 원사를 방직하고, 직물을 짜고(제직·편직), 의류를 재단·봉제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

- Fabric forward Rule(직물기준) : 최종제품이 직물 또는 의류인 경우, FTA 체결국 내에서 생산된 비원산지 원사로 직물을 짜고(제직·편직), 의류를 재단, 봉제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

- Cut & Sew Criteria(재단·봉제 공정기준) : 섬유류의 원산지 결정에 있어 재단·봉제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

·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

: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협정대상물품이 당사국들의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신청을 받아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근거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 **원산지(Country of Origin)**

: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

· **원산지 증빙서류(원산지증명서+원산지확인서류)(Supporting Documents)**

: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

· **원산지검증(원산지조사)(Origin Verification)**

: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를 확인 및 조사

- ▶ **간접검증**: 수입국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서 등 서면에 의하여 확인된 원산지의 진정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수출국 관세당국에 의문점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 확인하는 방식
- ▶ **직접검증**: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입국의 수입자 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를 확인하는 방식

· **원산지결정기준(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of origin)**

: 물품의 원산지 결정을 위하여 적용되는 판단기준으로서 결정기준에 따라 정해진 원산지는 관세특혜 적용, 원산지표시, 무역통계 등에 이용

▶ **FTA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구분		종류
일반기준 (GR)	기본원칙	완전생산기준 / 역내가공원칙 / 총본가공원칙 / 직접운송원칙
	분야별 특례규정	누적기준 / 최소허용수준 / 중간재 / 대체가능물품 / 간접재료 / 부속품·예비부품·공구 / 소매용 포장·용기 / 운송용 포장·용기 / 세트물품 / 재수입물품 / 제3국 보세전시용품
품목별기준 (PSR)	개별기준	단일기준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 가공공정기준) 선택기준 / 결합기준

· **원산지물품 또는 원산지재료(Originating Goods or Originating Materials)**

: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이 규칙에 따라 해당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가 대한민국 또는 체약상대국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재료

· **원산지포괄증명**

: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적되거나 수입신고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각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

·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 ▶ 원산지소명서 : 수출물품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이유를 소명하는 증명서류
- ▶ 원산지확인서 : 수출업체에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공급하는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 상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상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

- ▶ **특혜 원산지증명서** : 일반적 또는 쌍방적으로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데 적용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한-미국 FTA 원산지증명서



한-중국 FTA 원산지증명서

- ▶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제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무역통계작성 등 무역정책상 물품의 원산지 구별이 필요한 경우 관세혜택 이외의 목적에 적용

· 재료(Materials)

: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구성물품·부분품 또는 부속품

- **조정가격**(AV : Adjusted Value)
 :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서 제8조,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까지의 모든 운송비, 보험료, 서비스비용, 부과금 또는 경비를 제외한 가치
- **중간재**(Intermediate Materials)
 : 최종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로서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를 의미하며 역내산의 요건을 충족한 중간재는 최종제품 역내부가가치 계산시 중간재 전체 가격이 역내 부가가치로 계산
- **계약상대국**(The other party)
 :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
-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Customs authority)
 : 계약상대국의 관세 관련 법령 또는 협정(관세분야에 한함)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
-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De minimis or tolerance rule)
 : 어떤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당해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가격 또는 중량)이 아주 미미한 경우에는 협정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
- **최혜국대우**(MFN :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 관세 등 양국간 관계에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
- **충분가공원칙**
 : 생산과정에 역외산 재료가 투입되는 불완전생산품은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수행한 경우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원칙
- **품목번호, 세번**(HS code)
 : WCO HS협약(국제협약)에 따라 물품을 1류부터 99류까지 대분류하고 통계산출, 과표근거, 통관조건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물품마다 부여하는 국제기준의 코드를 말하며 국제적으로 6단위 체계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0단위 체계를 사용
-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 Product Specific Rules)
 : 각 품목별(HS코드별)로 원산지 인정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통상 협정문의 별표에 모든 물품을 품목번호 순으로 규정
- **협정관세**(Conventional Tariff)
 : 협정에 따라 계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

[협정에서 요구하는 직접운송 요건 및 입증서류]

구분	협정	비당사국 경우 요건			
		세관 통제	사유	불인정	인정
					(공통) 하역, 재선적, 상품보존 및 운송 필요 공정
FTA 특혜	중국	○	지리·운송	거래·소비	운송 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의 분리, 일시보관
	인도	○		거래·소비	
	아세안		지리·운송	거래·소비	
	베트남		지리·운송	거래·소비	
	싱가포르	○			상자포장, 포장과 재포장
	중미	○			재포장
	페루	○		거래·교역	재포장
	칠레	○			상자포장, 포장과 재포장
	EU	○			
	터키	○			
	EFTA	○			탁송품 분리, 파이프라인 운송
	콜롬비아	○		거래·소비	운송 상의 이유로 인한 분리
	뉴질랜드	○			보관, 운송 상의 이유로 인한 분리
	호주	○			재포장, 재라벨링, 운송 상의 이유로 인한 분리, 보관
	캐나다	○		거래·소비	운송 상의 이유로 인한 분리
미국	○				

* (한-아세안) "통과선하증권"은 물품이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이동하는 전체 운송여정을 담고 있는 모든 운송서류

비당사국 경유시 직접운송 입증서류

전체운송경로	세관 통제	비조작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전체 운송경로가 포함된 복합(결합) 운송서류 등 (통과·환적 또는 보관·컨테이너 적출 時)	관세당국 또는 권한있는 기관 발행 서류 (보관·컨테이너 적출 時)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세관통제서류	
통과선하증권*	직접운송을 증빙하는 서류	
통과선하증권	직접운송을 증빙하는 서류	
	세관문서 사본	수입자가 제출하는 정보 또는 상업서류
단일운송서류, 통과운송서류	관세당국 또는 권한있는 기관 서류	수입국 세관을 만족시키는 서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복합(결합) 운송서류 등 (경유·환적 또는 보관 時)	관세당국 또는 권한있는 기관 서류(보관 時)	
송장, 선하증권, 화물운송장 등		
단일운송서류	관세당국 발행 서류	환적 또는 보관 상황 증거
단일운송서류	관세당국 발행 서류	환적 또는 보관 상황 증거

요청시 수입국 법령에 따름

	관세당국 발행 서류	환적 또는 보관 상황 증거
--	------------	----------------

적절한 서류

3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서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15조제3항제1호 관련)

<p>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p>	<p>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¹⁾)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²⁾ preferential origin.</p> <p>.....³⁾ (Place and date)</p> <p>.....⁴⁾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p> <p>.....⁵⁾ (Remarks)</p>
<p>작성방법</p>	<p>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영문으로 작성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는 해당 국가의 국명 또는 다음과 같이 ISO 알파 2 단위 부호를 적습니다. ① 대한민국: KR ② 아이슬란드: IS ③ 노르웨이: NO ④ 스위스(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다): CH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역외가공된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다음의 문구를 적습니다. "The provisions of Appendix 4 to Annex I(Exemptions from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have been applied"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15조제6항 관련)

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문안 (영어본)	<p>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¹⁾)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²⁾ preferential origin.</p> <p>.....³⁾ (Place and date)</p> <p>.....⁴⁾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p>
작성방법	<p>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 본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6 제5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II (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15조제7항제2호 관련)

항목	기재요령										
신고문안	<p>다음의 신고문안을 적습니다.</p> <p>“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authorization No.....¹⁾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goods are of.....²⁾ preferential origin,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origin criteria.....³⁾”</p> <p>* 한글번역문: “이 문서(인증번호.....¹⁾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는, 달리 분명하게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상품들이.....²⁾의 원산지 상품임을 다음 원산지 기준³⁾에 근거하여 신고한다.”</p> <p>【세부 기재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는 다음과 같이 해당 국가의 국명을 적습니다. ① Korea ② Peru * 한글번역문: ① 대한민국 ② 페루 3)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70%;">원산지결정기준</th> <th style="width: 30%;">기재 문구</th> </tr> </thead> <tbody> <tr> <td>가)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완전생산된 물품</td> <td style="text-align: center;">WO</td> </tr> <tr> <td>나)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td> <td style="text-align: center;">WP</td> </tr> <tr> <td>다) 별표 7 제3호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명시된 세번변경 요건, 역내 부가가치 비율 요건, 공정 요건이나 그 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어느 한 쪽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td> <td style="text-align: center;">PSR⁽¹⁾</td> </tr> <tr> <td>라) 페루와의 협정 제3.15조(영역 원칙)를 적용받는 물품</td> <td style="text-align: center;">OP</td> </tr> </tbody> </table> <p>(1) 해당 물품이 역내 부가가치 비율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비율과 함께 “BD”(공제법인 경우) 또는 “BU”(집적법인 경우)를 적습니다.</p>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문구	가)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	WP	다) 별표 7 제3호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명시된 세번변경 요건, 역내 부가가치 비율 요건, 공정 요건이나 그 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어느 한 쪽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PSR ⁽¹⁾	라) 페루와의 협정 제3.15조(영역 원칙)를 적용받는 물품	OP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문구										
가)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	WP										
다) 별표 7 제3호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명시된 세번변경 요건, 역내 부가가치 비율 요건, 공정 요건이나 그 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어느 한 쪽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PSR ⁽¹⁾										
라) 페루와의 협정 제3.15조(영역 원칙)를 적용받는 물품	OP										
장소 및 날짜 (Place and date)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날짜를 영문으로 적습니다.										
수출자의 성명 및 서명 (Signature of the exporter)	수출자의 성명을 영문으로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비고 (Remarks)	<p>특별한 사항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물품이 페루와의 협정 제3.15조(영역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다음의 문구를 적습니다.</p> <p>“Article 3.15 has been applied.”</p> <p>* 한글번역문: 제3.15조가 적용되었음.</p>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15조제9항 관련)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p>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p> <p style="text-align: center;">..... (Place and date)</p> <p style="text-align: center;">.....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p>
작성방법	<p>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영문으로 작성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산지신고문안은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타이핑 · 스탬핑 · 프린팅 등의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수기로 작성할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되,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2. 문안의 ...에는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3. 장소 및 일자란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성명 및 서명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적고, 수기로 서명을 합니다. 5. 터키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9 제4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II(a)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6. 터키와의 협정 제14조에 따라 제3국 전신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신회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15조제13항제1호 관련)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p>I.....¹⁾ being the²⁾ hereby declare that the goods enumerated on this invoice are originating from³⁾ in that they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Chapter 3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of the Kore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p> <p>Observations: ⁴⁾</p> <p>Signature _____ Date: _____ ⁵⁾</p>
작성방법	<p>위 원산지신고 문안을 송품장 또는 물품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이하 "송품장등"이라 한다)에 영문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성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성명 및 직책을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 신원확인 정보를 얻기 위한 상세연락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수출자(exporter), 생산자(producer) 또는 생산자 및 수출자(producer and exporter) 중 택일하여 기재합니다. 3.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the Republic of Korea 또는 New Zealand)를 기재합니다. 4. 비고(Observations)란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송품장등에 이미 그러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물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나. 물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경우에 한한다) 다. 물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라.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HS Code)에 따른 6단위 세번 및 상품명 마. 해당 물품이 충족하는 원산지 기준 바. 원산지 신고일 사. 협정 제3.19조제7항나호의 규정에 따른 포괄신고의 경우에는 원산지신고가 증명하는 포괄기간 5. 서명일을 기재합니다.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15조제17항 관련)

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문안 (영어본)	<p>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¹⁾)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²⁾ preferential origin.</p> <p>.....³⁾ (Place and date)</p> <p>.....⁴⁾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p>
작성방법	<p>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국문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15의3제5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II (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국문본	<p>이 서류(세관인증번호...¹⁾)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²⁾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p>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Issuing Number :				
1: Exporter (Name and Address)				
Tax ID No.				
2: Producer (Name and Address)			3: Importer (Name and Address)	
Tax ID No.				
4. Description of Good(s)	5. HS No	6. Preference Criterion	7. Regional Value Content	8. Country of origin
9. Remarks:				
10: Certification of Origin				
I certify th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re has been no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2 of the Agreement.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Name (Print or Type)			Title	
Date (MM/DD/YY)			Telephone / Fax / E-mail	

210mm × 297mm [복상지 80g/㎡ (재활용품)]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CONTINUATION SHEET

Issuing Number :

2. Producer	4. Description of Good(s)	5. HS No	6. Preference Criterion	7. Regional Value Content	8. Country of origin

210mm×297mm[백상지 80g/㎡(저활용품)]

작성방법		
번호	기재항목	기재요령
	Issuing Number (발급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련번호 기재
1	Exporter (수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자의 이름, 주소(국가포함), 사업자등록번호(칠레: Unique Tax Number) 기재.
2	Producer (생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자 1명일 경우: 생산자 이름, 주소(국가, 전화번호, FAX, E-mail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생산자 2명 이상일 경우: "VARIOUS"를 기재하고 모든 생산자의 리스트를 첨부(생산자 이름, 주소, 국가, 전화번호, FAX, E-mail, 사업자등록번호) 생산자와 수출자와 같을 경우: "SAME" 기재 생산자를 모를 경우: "UNKNOWN" 기재 비밀로 할 경우: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 기재
3	Importer (수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자 이름, 주소(국가포함) 기재 수입자를 알지 못할 경우: "UNKNOWN" 기재 수입자가 다수일 경우: "VARIOUS" 기재 HS 및 송품장과 관련시킬 수 있는 상세한 상품의 설명을 기재
4	Description of Good(s) (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품장번호 기재 송품장번호를 모를 경우 shipping order, purchase order 등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번호 기재
5	HS No (품목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목4의 각 물품의 HS번호 6단위까지 기재
6	Preference Criterion (특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목4의 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혜기준(A-D) 기재 A: 역내국에서만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 B: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생산되고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부속서(annex 4)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및 협정 4장에 규정된 다른 적용가능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C: 물품이 협정 제4.2조 제1(a)부터 제1(d)의 기준에 의한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재료로만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생산된 경우 D: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내에서 생산되었으나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재료가 협정 4.2.1 C(i, ii) 규정에 해당하여 세번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
7	Regional value Content (역내부가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 물품으로 - 공제법(build-down method)에 의해 계산한 경우: "BD" - 집적법(build-up method)에 의해 계산한 경우: "BU" 기재
8	Country of Origin (원산지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가 한국일 경우: "KR" 원산지가 칠레일 경우: "CL" 기재
9	Remarks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작성되었을 경우 작성자 이름, 회사명 주소를 기재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1. Exporter:	REPUBLIC OF SINGAPOR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NO. NO UNAUTHORIZED ADDITION/ALTERATION MAY BE MADE TO THIS CERTIFICATE	
2. Consignee:		
3. Departure Date:		
4. Vessel's Name/Flight No.:	8 DECLARATION BY THE EXPORTER We hereby declare that the details and statements provided in this Certificate are true and correct. Signature: Name: Designation: Stamp Date:	
5. Port of Discharge:		
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7. Country of Origin of Goods:		
9. Marks & Numbers	10. No. & Kind of Packages:	11. Quantity & Unit
	Description of Goods: (include brand names if necessary) HS Subheading: Origin Criterion:	
12. CERTIFIC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We hereby certify that evidence has been produced to satisfy us that the goods specified above originate in the country shown in box 7.		

210mm × 297mm [백상지 80g/㎡ (저활용품)]

작성요령		
번호	기재항목	기재요령
1	Exporter(수출자)	수출자의 중앙등록번호(Central Registration Number), 성명, 주소를 적습니다. 중앙등록번호는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수출입업체에 발급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2	Consignee(수하인)	수입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3	Departure Date(출항일)	선박이나 항공기가 항만이나 공항을 출항한 날짜를 적습니다.
4	Vessel's Name/Flight No. (선명/편명)	선박명이나 항공기의 편명을 적습니다.
5	Port of Discharge (양륙항)	물품이 하선이나 하기될 최종 목적(도착)항을 적습니다. 물품이 환적 되는 경우, 운송경로에 대한 추가 기재사항들은 10번란이나 별지에 적습니다.
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최종 목적국)	최종목적국은 "한국(Korea)"으로 적습니다.
7	Country of Origin of Goods (물품의 원산지)	원산지는 "싱가포르(Singapore)"로 적습니다.
8	Declaration by the Exporter (수출자 신고)	수출자의 서명을 적습니다.
9	Marks & Numbers (표시 및 일련번호)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에 적습니다.
10	Number &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포장 개수 및 종류, 품명)	다음 사항을 적습니다. - 물품의 품명(송품장에 기재된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물품에 대한 HS 6단위 품목번호 -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의 기준
11	Quantity & Unit (수량 및 단위)	물품의 수량과 측정단위(Kg 등)를 적습니다.
12	Certific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증명서 발급기관)	싱가포르 관세당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서명하고, 싱가포르 관세당국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Certificate Reference Number (증명서 발급번호)	모든 증명서에는 싱가포르 관세당국에서 부여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

1. Exporter			Reference No. : KOREA - 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2. Importer					
3. Departure Date:			4. Vessel's Name/Flight No.:		
5. Port of Discharge and Route:					
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7. Country of Origin:		
8. Item Number	9. Description of Goods	10. HS No.	11. Marks & Numbers	12. Quantity & Unit	13. Origin Criterion
14.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_____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_____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5.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Korea,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 성 요 령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Exporter(수출자) : 수출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Importer(수입자) : 수입자의 성명, 주소 및 수입국을 적습니다.
3. Departure Date(출항일) :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출항일을 적습니다.
4. Vessel's Name/Flight No.(선명/편명) : 선박명이나 항공기의 편명을 적습니다.
5. Port of Discharge and Route(적재항 및 운송경로) : 물품을 선적이나 기적하는 최종 항만이나 공항을 적습니다. 물품이 운송도중 제3국에서 환적되는 경우에는 본 란 또는 별지에 환적국가와 환적장소 등 모든 운송경로를 적습니다.
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최종 목적국) : 물품의 최종 목적국이 싱가포르인 때에는 "REPUBLIC OF SINGAPORE" 로 적습니다.
7. Country of Origin(원산지) : 물품의 원산지는 "REPUBLIC OF KOREA" 로 적습니다.
8. Item Number(품목번호) :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9. Description of Goods(품명) : 송품장에 기재된 품명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10. HS No.(품목번호) : 물품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11. Marks & Numbers(표시 및 일련번호) : 물품의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2. Quantity & Unit(수량 및 단위) : 물품의 수량 및 측정단위(pieces, Kg 등)를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3. Origin Criterion(원산지결정 기준) :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하여 적용된 원산지결정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영문으로 표시합니다.
 - 가.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Wholly Obtained Rule)
 - 나.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 : "CTC"(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 다.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 : "VAC"(Value Added Criterion)
 - 라.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 "CTC & VAC"
 - 마. 역외가공 적용품목 : "OP"(Outward Process)
 - 바. 개성공단 적용품목 : "Gaesung Products"
 - 사. 최소기준 적용품목 : "De Minimis"
 - 야. 그 밖의 기준 적용품목 : "Others"

※ 제8란부터 제13란까지의 기재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14. Declaration by exporter(수출자 신고) :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신청일자, 장소, 수출국명 및 수입국명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15. Certification(증명) 및 Reference No(증명서 발급번호)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발급장소를 적고, 발급담당자가 서명을 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우측 상단의 Reference No에는 증명서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스위스치즈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Authenticity	
1. Exporter (full name and address) (수출자)	CERTIFICATE for cheese designated as (Code of the Harmonized System Nomenclature) Nr. ORIGINAL
2. Consignee (full name and address) (수하인)	3. Authorized Organization (증명기관)
Notes	4. Number and date of the invoice (상업송장번호 및 발행일자)
5. Marks and numbers - Number and nature of the packages (포장의 표시 및 일련번호)	6. Gross weight (kg) (총중량)
	7. Net weight (kg) (순중량)
8. Visa of the Authorized Organization (증명기관의 인증)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invoice contains the designated Swiss cheese in conformity to the description in Appendix to Annex I of the Free Trade Agreement on Agricultural product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Switzerland (위에서 언급된 송품장은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I의 부록에 따라 지정된 스위스 치즈를 포함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Place and date: Signature: Seal of the Authorized Organization: (발행일자 및 장소) (서명) (증명기관 직인)	
9. Reserved for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세관용)	

210mm×297mm[복사지 80g/㎡(재활용품)]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Original(Duplicate/Triplicate)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4. For Official Use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input type="checkbox"/> Third Country Invoicing <input type="checkbox"/> Exhibition <input type="checkbox"/> Back-to-Back CO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국가에 적용됩니다.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9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 제2란에는 수입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 제3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항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 제4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 제5란에는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6란에는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제7란에는 포장개수·포장형태·품명·수량·품목번호 등을 적습니다.
 -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고, 상표도 적습니다.
 - 품목번호(HS No.)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 제8란에는 수출자(제조사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W0
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협약」(HS)상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CTH 또는 RVC 40%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3) 일정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물품)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예: 재단 및 봉제공정)	CTC W0-AK RVC % (예: RVC 45%) CTH + RVC % Specific Process
라.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6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Rule 6

-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과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부선인도가격(FOB가격)을 적습니다.
- 제10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 제11란에는 수출자(제조사 및 생산자 포함)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 제12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제13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 표시를 합니다.
 -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제7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
 -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의 전시를 위해 수출당사국에서 제3국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제3국에서 전시 도중 또는 전시 후에 수입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해 판매된 경우 "전시(Exhibition)"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연결원산지증명서인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Original(Duplicate/Triplicate) (Additional Page)					
Reference No.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p>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p> <p>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p> <p>..... (Country)</p> <p>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p> <p>..... (Importing Country)</p> <p>.....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p>			<p>12. Certification</p> <p>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p> <p>.....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p>		
<p>13. <input type="checkbox"/> Third Country Invoicing <input type="checkbox"/> Exhibition <input type="checkbox"/> Back-to-Back CO</p>					

Page _ of _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Certificate of Origin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Original (Duplicate/Triplicate/Quadruplicate)

1. Exporter (name, address, country, e-mail address, telephone number, fax number)		Reference No.: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Issued in _____(Country) _____		
2. Produc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5. For Official Use		
3. Import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6. Remarks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optional)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7. HS Code (6 digit)	8.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9. Gross weight and value (FOB)	10. Origin criterion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3.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issuing authority		
14. □Third country invoicing(name, address, country)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나. 인도와의 협정 제3.15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다. 인도와의 협정 제3장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제2란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4. 제3란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5. 제4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 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6. 제5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7. 제6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급한 경우에는 “소급발급”, 재발급한 경우에는 “진정등본” 표시를 합니다.
8. 제7란에는 품목번호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9. 제8란의 품명은 그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습니다.
10.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 및 본선인도가격을 적습니다.
11. 제10란에는 수출자(제조사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인도와의 협정 제3.4제1항제나호를 충족하는 물품	CTSH + RVC 35%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3)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 (6) 기타	CC, CTH, CTSH RVC % CC, CTH, CTSH 또는 RVC % CC, CTH, CTSH + RVC % SP Others
라. 인도와의 협정 3.14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OP

12. 제11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13. 제12란에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14. 제13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15. 제14란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주소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4-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KOREA-PERU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2. Blanket Period: From: YYYY MM DD To: YYYY MM DD ___/___/___/ ___/___/___/			
3. Produc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optional): E-Mail (optional):		4. Im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5. Description of Good(s)	6. HS Tariff Classification#	7. Origin Criterion	8. Producer	9. Value Test	10. Country of Origin
11. Remarks:					
<p>I certify th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 Peru Free Trade Agreement. <p>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p>					
12.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Title:			
Date: YYYY MM DD ___/___/___/		Telephone:		Fax: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수출자, 생산자가 명료하고 충분히 작성해야 하며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타자로 치거나 인쇄체로 기재해야 합니다.

항목	기재 내용										
1. 수출자 정보	○ 수출자의 법적이름과 주소(국가 및 도시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2. 포괄확인기간	○ 이 증명서가 12개월(포괄확인기간)까지의 특정 기간 동일한 수입자에 의해 대한민국 또는 페루로 수입되는 제5란에 기술된 바와 같은 동일 물품이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하여 선적되는 경우 작성합니다. ○ "부터"는 증명서가 포괄 증명서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적용가능한 날이며(증명서 서명일 보다 이전일 수 있음), "까지"는 포괄확인기간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의 선적은 이 기간 동안 선적되어야 합니다.										
3. 생산자 정보	○ 단일의 생산자일 경우, 해당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국가 및 도시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선택) 및 전자우편주소(선택)를 기재합니다. ○ 다수의 생산자일 경우, "VARIOUS"로 기재하며, 제5란에 기재된 상품(들)과 상호 참조된 모든 생산자의 법적이름, 주소(국가 및 도시를 포함한다), 전화번호(선택), 전자우편주소(선택)를 포함하여 모든 생산자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AVAILABLE UPON REQUEST" 이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수입자 정보	○ 수입자의 법적이름, 주소(국가 및 도시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합니다.										
5. 물품명세	○ 각 물품의 물품명세를 기재합니다. 물품명세는 상품장상의 품명 및 물품의 품목번호(HS No.)와 연계할 수 있게 충분히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증명서가 단일 선적 분에만 한정되는 경우, 해당 선적분의 각 물품 수량,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다만, 상품장번호(선택) 및 단위(선택)는 기재 가능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 다만, 상품장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각 물품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양식의 번호와 같은 고유의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6. 품목번호(HS No.)	○ 제5란에 기재된 각 상품에 대해 품목번호(HS No.)를 8단위(8-digit)까지 기재합니다.										
7. 원산지 결정기준	○ 제5란의 기재된 각 물품에 대해, 아래 표를 참고하여 기준(A부터 D까지) 중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 지를 확인하여 하나의 코드를 기재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 및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원산지결정기준 표										
	<table border="1"> <thead> <tr> <th>원산지결정기준</th> <th>기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해당 물품이 협정 제3.1조제1항다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td> <td>A</td> </tr> <tr> <td>○ 해당 물품이 협정 제3.1조제1항나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td> <td>B</td> </tr> <tr> <td>○ 해당 물품이 협정 제3.1조제1항다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td> <td>C</td> </tr> <tr> <td>○ 해당 물품이 협정 제3.15조(영역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td> <td>D</td> </tr> </tbody> </table>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 해당 물품이 협정 제3.1조제1항다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A	○ 해당 물품이 협정 제3.1조제1항나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B	○ 해당 물품이 협정 제3.1조제1항다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C	○ 해당 물품이 협정 제3.15조(영역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D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 해당 물품이 협정 제3.1조제1항다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A										
○ 해당 물품이 협정 제3.1조제1항나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B										
○ 해당 물품이 협정 제3.1조제1항다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C										
○ 해당 물품이 협정 제3.15조(영역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D										
8. 생산자	○ 제5란에 기재된 각 물품에 대해, 작성자가 물품의 생산자인 경우 "YES"를 기재합니다. ○ 작성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NO"를 기재하고 이 증명서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1), (2) 또는 (3)을 기재합니다. (1) 물품이 원산지물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작성자의 인지 (2) 물품이 원산지물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 증명서 이외)에 대한 작성자의 신뢰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물품을 위해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증명서										
9. 부가가치 산출 기준	○ 제5란에 기재된 각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이 역내부가가치기준의 적용을 받는 경우, 역내부가가치비율이 공제법에 따라 산출된 경우에는 "BD"를, 점적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U"를 기재합니다. [참조 : 협정제3.3조(역내가치포함비율)]										
10. 원산지	○ 원산지 국가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 페루로 수출되는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KR",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PE"를 기재합니다.										
11. 비고	○ 제5란에 기재된 물품이 품목분류 또는 재료의 가치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인 경우와 같이 이 증명서와 관련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예) - 사전심사 결정물품일 경우, 사전심사 결정문 발급 당국, 발급번호 및 발급일을 기재합니다. - 협정 제3.7조(최소허용수준)가 적용되는 경우										
12. 서명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합니다. 다만, 날짜는 해당 증명서가 작성·서명된 날입니다.										
참조	○ 작성방법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며, 인쇄시 해당 증명서만 출력합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Certificate of Origin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 (수출자)	Name (성명)			2. Blanket Period (원산지포괄증명기간)		
	Address(주소)					
	Telephone (전화)			YYYY MM DD	YYYY MM DD	
	Fax (팩스)			(년) (월) (일)	(년) (월) (일)	
	E-mail (전자주소)			From _____ / _____ / _____	To _____ / _____ / _____	
			(부타)		(까지)	
3. Producer (생산자)	Name (성명)			4. Importer (수입자)	Name (성명)	
	Address(주소)				Address(주소)	
	Telephone (전화)				Telephone (전화)	
	Fax (팩스)				Fax (팩스)	
	E-mail (전자주소)				E-mail (전자주소)	
5. 원산지 증명 대상 물품 내역						
Serial No. (연번)	Description of Good(s) (품명·규격)	Quantity & Unit (수량 및 단위)	HS No. (품목번호 HS 위)	HS 6단	Preference Criterion ¹⁾ (원산지결정기준)	Country of Origin (원산지 국가)
6. Observations: (특이사항)						
I certify that: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상기 서식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증명서 또는 이와 관련한 허위 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본인은 이 증명서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며, 오차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뿐 아니라, 이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동사항에 대해서 이 증명서를 받은 관계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에 동의합니다.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해당 물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이 증명서는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총 _____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Authorized Signature (서명권자의 서명)				Company (회사명)		
Name: (작성자 성명)				Title (직위)		
YYYY MM DD (년) (월) (일)				Telephone : (전화번호)		Fax: (팩스번호)

1)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WO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PSR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c)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다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PE
 * 수입자, 생산자 란은 기재 선택 가능하며, 한글본과 영문본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수출자에 의해 명료하고 충분히 작성되어야 하며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 수입자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수출자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작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타자로 치거나 인쇄되어야 합니다. 작성을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식별번호(선택기재)를 적습니다.
- 제2란은 이 증명서가 제5란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복수 선적에 적용될 경우 12개월을 넘지 않는 포괄증명기간을 적습니다. 'FROM'은 증명서가 포괄증명물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며(이 증명서의 서명일보다 앞설 수도 있습니다), 'TO'는 포괄증명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물품의 수입은 두 날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제3란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식별번호(선택기재)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증명서에 포함될 경우에는 "VARIOUS"로 적고, 제5란의 증명물품과 관련된 모든 생산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식별번호(선택기재)가 적힌 생산자 목록을 첨부합니다. 수출자가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로 적습니다.
- 제4란에는 제1란에 정의된 수입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를 적습니다.
- 제5란에는 각 물품에 대한 상세한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송품장 및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물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될 경우에는 각 물품의 수량, 측정단위 및 고유의 참조번호(송품장번호, 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물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번호 등)를 적습니다.
- 제6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 제7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콜롬비아와의 협정(이하 "협정") 제3장(원산지규정) 및 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재 문구	원산지결정기준
A	협정 제3.1조가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B	협정 제3.1조나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C	협정 제3.1조다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D	협정 제3.16조(영역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 제8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해 본인이 생산자인 경우 'YES' 를 적습니다. 본인이 생산자가 아닐 경우 'NO' 를 적고, 이 증명서의 작성 근거를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기재 문구	증명서 작성 근거
(1)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본인의 인지
(2)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증명서는 제외한다)에 대한 본인의 신뢰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물품을 위해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증명서

- 제9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역내부가가치비율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에 의해 계산되었다면 'BD' , 집적법에 의해 계산되었다면 'BU' 를 적습니다.(협정 제3.3조 참조)
- 제10란에는 원산지 국가명을 적습니다. 콜롬비아로 수출되는 원산지물품에 대해서는 'KR' ,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원산지물품에 대해서는 'CO' 를 적습니다.
- 제11란에는 제5란의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나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등 이 증명서와 관련된 다른 참고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 발급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식별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 제12란은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수출자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이어야 합니다.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호주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한정한다)이 명료하고 충분히 작성해야 하며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타자로 치거나 인쇄체로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을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 제1란에는 증명서의 고유번호(발급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제2란에는 수출자의 성명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 제3란에는 이 증명서가 제6란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복수 선적에 적용될 경우 포괄증명기간을 적습니다. "FROM"은 증명서가 포괄증명물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며(이 증명서의 서명일보다 앞설 수도 있습니다), "TO"는 포괄증명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물품의 수입은 두 날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제4란의 기재는 선택사항으로 생산자의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 제5란의 기재는 선택사항으로 수입자의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 제6란에는 각 물품에 대한 상세한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송품장 및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명세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물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될 경우에는 각 물품의 수량, 측정단위(가능한 경우 일련번호를 포함한다)와 상업 송품장에 표시된 송품장번호를 적습니다. 송품장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유의 참조번호(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물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번호 등)를 적습니다.
- 제7란에는 제6란의 각 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 제8란에는 제6란의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호주와의 협정(이하 "협정") 제3장(원산지규정) 및 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재 문구	원산지결정기준
WO	협정 제3.1조 가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PE	협정 제3.1조 나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PSR	협정 제3.1조 다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Other	협정 제3장(원산지규정)에 따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9란에는 제6란의 각 물품에 대해 사전심사를 받거나 비당사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되는 경우 등 이 증명서와 관련된 다른 참고사항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 제11란에는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수출자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호주의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권한 있는 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권한 있는 기관은 이 란을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고, 관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이 란의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이어야 합니다.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Certificate of Origin Korea-Canada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Reference No.			2. Blanket Period: From: ____/____/____ YYYY MM DD To: ____/____/____ YYYY MM DD		
3. Producers' 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Reference No.			4. Importer' 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Reference No.		
5. Description of Good(s)	6. HS Tariff Classification #	7. Preference Criterion	8. Producer	9. Value Test	10. Country of Origin
<p>I certify th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Canada Free Trade Agreement. •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1.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Title:		
Date: ____/____/____ YYYY MM DD			Telephone:		Fax: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수출자가 명료하고 충분히 작성하여야 하며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수출자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타자로 치거나 인쇄체로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을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및 참조번호(선택기재사항)를 적습니다.
- 제2란은 이 증명서가 제6란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복수 선적에 적용될 경우 12개월을 넘지 않는 포괄증명기간을 적습니다. "FROM"은 증명서가 포괄증명물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며(이 증명서의 서명일보다 앞설 수도 있습니다), "TO"는 포괄증명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물품의 수입은 두 날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제3란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및 참조번호(선택기재사항)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증명서에 포함될 경우에는 "VARIOUS"라고 적고, 제5란의 증명물품과 상호 참조된 모든 생산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및 참조번호(선택기재사항)가 적힌 생산자 목록을 첨부합니다. 수출자가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라고 적어야 합니다.
- 제4란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를 적습니다.
- 제5란에는 각 물품에 대한 상세한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송품장 및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물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될 경우에는 각 물품의 수량, 측정단위(가능한 경우 일련번호를 포함한다) 및 상업 송품장에 표시된 송품장번호를 적습니다. 송품장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유의 참조번호(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물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번호 등)를 적습니다.
- 제6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 제7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캐나다와의 협정(이하 "협정") 제3장(원산지규정) 및 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재 문구	원산지결정기준
A	협정 제3.2조에 따라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B	협정 제3.1조 가호 1목·2목·3목에 따라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C	협정 제3장, 제3.1조 나호, 부속서3-가에 따라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D	부속서3-가의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협정 제3.3조 제2항 및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

- 제8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해 본인이 생산자일 경우에는 "YES"를 적습니다. 본인이 생산자가 아닐 경우에는 "NO"를 적고, 이 증명서의 작성 근거를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예시: NO(1)]

기재 문구	증명서 작성근거
(1)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본인의 인지
(2)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증명서를 제외한다)에 대한 본인의 신뢰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물품을 위해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증명서

- 제9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이 부가가치계산방법으로 순원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NC" 또는 거래가격이나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TV"로 적습니다. 일정 기간에 걸쳐 순원가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계산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YYYY/MM/DD-YYYY/MM/DD)을 적어야 합니다.
- 제10란에는 캐나다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물품의 경우에는 "KR"을 적고, 한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물품의 경우에는 "CA"를 적습니다.
- 제11란은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수출자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이어야 합니다.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작성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송품장 등에 기재방식이 아닌 신고서 방식으로 작성하고자 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이 서식을 명료하게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타자로 치거나 인쇄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을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 제1란에는 수출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참조번호(선택 사항)를 적습니다.
- 제2란은 이 증명서가 제5란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복수 선적에 적용될 경우 포괄증명기간(최대 12개월)을 적습니다. "FROM"은 증명서가 포괄증명물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며(이 증명서의 서명일보다 앞설 수도 있습니다), "TO"는 포괄증명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이 이루어 지는 물품의 수입은 두 날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제3란의 생산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제1란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그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참조번호(선택사항)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신고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수"로 기재하고 제5란의 물품과 상호 참조되는, 모든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참조 번호(선택사항)를 포함하여 모든 생산자의 목록을 첨부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밀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 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제4란에는 수입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 제5란에는 각 물품에 대한 상세한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송품장 및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물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될 경우에는 각 물품의 수량, 측정단위(가능한 경우 일련번호를 포함한다) 및 상업 송품장에 표시된 송품장번호를 적습니다. 송품장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유의 참조번호(배출주번호, 구매주번호 또는 물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번호 등)를 적습니다.
- 제6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 제7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뉴질랜드와의 협정(이하 "협정") 제3장(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 및 부속서3-가(품목별원산지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재 문구	원산지결정기준
A	협정 제3.2조 가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B	협정 제3.2조 다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C	협정 제3.2조 나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고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D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지만 특정 비원산지 재료가 필요한 세번변경을 거치지 않아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E	협정 부속서 3-나(한반도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 근거하여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 제8란에는 제5란의 물품을 작성자가 생산한 경우 'YES' 라고 적습니다. 작성자가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NO' 를 적고 그 옆에 아래의 표에 따라 (1), (2), (3)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기재 문구	원산지증명서 작성근거
(1)	물품이 원산지물품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작성자의 인지
(2)	물품이 원산지물품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진술(원산지신고서를 제외한다)에 대한 작성자의 신뢰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원산지신고서(해당 물품에 대하여 작성되고 서명)

- 제9란에는 제5란의 물품이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협정 제3.4조의 공제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 'BD', 집적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 'BU' 를 적습니다.
- 제10란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KR' 또는 'NZ')를 기재합니다.
- 제11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해 사전심사, 품목분류 및 역내부가가치 등에 대한 판정을 받은 경우 이 증명서와 관련된 다른 참고사항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발급당국, 참조번호 및 발급날짜 포함)
- 제12란에는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수출자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이 란의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이어야 합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Original(Duplicate/Triplicate)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KOREA-VIETNAM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KV Issued in 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4. For Official Use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Viet Nam Free Trade Agreement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_____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code of the good in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Overleaf Notes)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Viet Nam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Remarks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국가에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베트남과의 협정 제3.8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베트남과의 협정 제3장의 원산지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 제2란에는 수입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 제3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항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 제4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 제5란에는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6란에는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제7란에는 포장개수·포장형태·품명·수량·품목번호 등을 적습니다.
 -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고, 상표도 적습니다.
 - 품목번호(HS)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 제8란에는 수출자(제조사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제11란에 기재된 수출당사국의 생산 또는 제조환경	제8란 기입사항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역내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3) 세번변경기준+역내부가가치기준 등 결합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4) 특정공정기준을 충족한 물품	"CTC" "RVC %"(예: RVC 45%) "CTH+RVC 40%" 등 "Specific Processes"
다. 원산지자료로만 전적으로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PE"
라. 베트남과의 협정 제3.5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Article 3.5"

-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을 기재하고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역내부가가치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FOB가격까지 적습니다.
- 제10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 제11란에는 수출자(제조사 및 생산자 포함)가 원산지,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 제12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합니다.
- 제13란에는 필요 시 그 밖의 비교사항들을 적습니다. 특히, 계약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에서 송장이 발급된 경우 반드시 "비당사국송장(Non-Party Invoicing)"이라 적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앞쪽)

Original(Duplicate/Triplicate) (Additional Page)					
Reference No.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code of the good in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Overleaf Notes)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p>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p> <p>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p> <p style="text-align: center;">..... (Country)</p> <p>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Viet Nam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p> <p style="text-align: center;">..... (Importing Country)</p> <p>.....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p>			<p>12. Certification</p> <p>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p> <p style="text-align: center;">.....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p>		
<p>13. Remarks</p>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ORIGINAL

(왼쪽)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country:		Certificate No.: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country:		CERTIFICATE OF ORIGIN Form for Korea-China FTA Issued in _____ (see Overleaf Instruction)					
3. Consignee's name and address, country: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Flight/Train/Vehicle No.: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		5. Remarks:					
6. Item number (Max 20)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9. HS code (Six-digit code)	10. Origin criterion	11. Gross weight,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s (liters, m ³ , etc.)	12. Number and date of invoice	
13.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TA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4. Certification: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China FTA.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 제1란에는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를 적습니다.
- 제2란에는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생산자의 물품이 증명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를 적습니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러한 정도의 비밀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 라고 기재할 수 있으며,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SAME' 이라고 적습니다.
- 제3란에는 한국 또는 중국에 거주하는 수하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를 적습니다.
- 제4란에는 운송수단 및 경로, 출발일자, 운송수단의 번호, 선적항 및 하역항을 적습니다.
- 제5란에는 비당사국의 운영인에 의하여 송품장이 발행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이름을 적습니다. 또한, 증명서가 소급 발급된 경우에는 'ISSUED RETROACTIVELY', 인증된 진본의 경우에는 'CERTIFIED TRUE COPY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 (발행번호) dated (날짜)' 를 적습니다.
- 제6란에는 물품의 연번(최대 20개)을 적습니다.
- 제7란에는 물품의 포장에 표시된 확인(shipping marks) 및 번호를 적습니다. 확인이 문자나 숫자가 아닌 이미지나 기호인 경우에는 'IMAGE OR SYMBOL(I/S)' 를 기재하며, 그 외에는 'NO MARKS AND NUMBERS(N/M)' 를 적습니다.
- 제8란에는 포장의 수량 및 종류를 적습니다. 품명은 송품장 및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물품이 포장되지 아니한 경우 'IN BULK' 라고 적습니다.
- 제9란에는 제8란의 각 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 제10란에는 제8란의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중국과의 협정(이하 "협정") 제3장(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이행절차) 및 부속서3-가(품목별원산지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재 료구	원산지결정기준
WO	협정 제3.4조 및 부속서3-가(품목별원산지기준)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WP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협정 제3장에 부합하는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PSR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세번변경, 역내부가가치비율, 특정공정요건 또는 부속서3-가에 명시된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여 생산된 경우
OP	협정 제3.3조(특정상품의 취급)를 적용받는 경우

- 제11란에는 킬로그램(Kg)으로 표시된 총중량을 적습니다. 관례적으로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정 단위(예: 물품의 부피 또는 개수)를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 제12란에는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을 적습니다. 비당사국의 운영인에 의하여 송품장이 발행되어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된 원본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을 적습니다.
- 제13란은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 제14란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의 권한 있는 발급담당자가 작성, 서명, 날짜를 기재하고 발급인장을 날인합니다.

작성 방법

- 제1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선택) 및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 제2란: 이 증명서가 제5란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복수 선적에 적용될 경우 1년을 넘지 않는 포괄증명기간을 적습니다. "FROM"은 증명서가 포괄증명물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며(이 증명서가 서명된 날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TO"는 포괄증명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계 적용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물품의 선적은 두 날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제3란: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증명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VARIOUS"로 적고, 제5란의 증명물품과 관련된 모든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가 적힌 생산자 목록을 첨부합니다. 수출자가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로 적습니다.
- 제4란: 수입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선택) 및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 제5란: 각 물품에 대한 상세한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송품장 및 HS(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물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될 경우에는 상업증장에 기재된 송장번호를 적고,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배송주번호, 구매주번호 또는 물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번호 등을 적습니다. 다만, 그 물품에 대하여 수출 당사국의 영역 밖에 소재하는 인에 의하여 송장이 발부된 경우, 이전 정보의 포함은 선택사항입니다.
- 제6란: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하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세번 6단위까지 적습니다.
- 제7란: 제5란에 기술된 각 물품에 대하여 아래 기준(A부터 D까지) 중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적습니다(택일한다). 원산지 규정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과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재문구	원산지 기준
A	협정 제3.1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B	협정 제3.1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C	협정 제3.1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D	협정 제3.15조(역외가공)의 적용을 받는 경우

- 제8란: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하여 본인이 생산자인 경우 "YES"를 적습니다. 본인이 생산자가 아닌 경우, "NO"를 적고 이 증명서의 작성 근거를 아래 표에 따라 적습니다.

기재문구	증명서 작성 근거
(1)	물품이 원산지 물품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본인의 인지
(2)	물품이 원산지 물품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증명서는 제외한다)에 대한 본인의 신뢰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물품을 위해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증명서

- 제9란: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역내부가치포함비를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이 공제법에 의해 계산되었다면 "BD", 짐적법에 의해 계산되었다면 "BU"를 적습니다. [참조: 협정 제3.3조(역내가치포함비율(RVC))]

- 제10란: 모든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국가의 이름을 적습니다: 한국(KR), 코스타리카(CR), 엘살바도르(SV), 온두라스(HN), 니카라과(NI), 파나마(PA).

- 제11란: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또는 재료가치에 대한 사전심사 또는 심사를 받은 경우 등 이 증명서에 관하여 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에 발급 당국, 참조 번호 및 발급 날짜를 적습니다. 또한, 제3.6조(누적), 제3.7조(최소허용수준), 제3.8조(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또는 제3.9조(세트)가 적용되는 경우, 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제3국에서 송장이 발부된 경우, 이 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제12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이어야 합니다.

참조: 이 작성방법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므로, 뒤쪽에 기재되거나 인쇄될 필요는 없습니다.

4

한 눈에 보는 FTA

구분	통관절차						직접 운송 규정	역외 가공
	원산지증명서							
	협정발효일	발급방식	발급주체	서식	유효기간	제출면제		
칠레	'04.4.1.	자율	수출자	통일서식	2년	US \$1,000 이하	X	X
싱가포르	'06.3.2.	기관	(싱)관세당국 (한) 세관, 상의	각자 증명서식	1년		O	O
EFTA	'06.9.1.	자율 스위스치즈 (기관)	수출자, 생산자	송품장	1년	US \$1,000 이하 (EFTA로 수입하는 소포는 € 500 여행자 개인 수화물은 € 1,200 이하)	O	O
ASEAN	'07.6.1. (국가별상이)	기관	(아) 정부기관 (한) 세관, 상의	통일서식 (AK Form)	1년	FOB \$200 이하 (상품 또는 우편물)	O	O
인도	'10.1.1.	기관	(인)수출검사위원회 등 (한) 세관, 상의	통일서식	1년	개인소포, 여행자 수화물 (금액제한없음)	O	O
EU	'11.7.1.	자율	6천유로 초과시 인증수출자	송품장	1년	US \$1,000 이하 (EU로 수입하는 소포는 € 500 여행자 개인 수화물은 € 1,200 이하)	O	O
페루	'11.8.1.	자율	수출자, 생산자	통일서식	1년	US \$1,000 이하	O	O
미국	'12.3.15.	자율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자율(권고서식)	4년	US \$1,000 이하	X	O
터키	'13.5.1.	자율	수출자	송품장	1년		O	O
호주	'14.12.12.	자율 (호)기관병행	자율(수출자, 생산자) (호)상공회의소, 산업협회	표준(권고) 서식	2년	(한)US \$1,000 이하 (호) 호주달러 \$1,000이하	O	O
캐나다	'15.1.1.	자율	수출자, 생산자	통일서식	2년	US \$1,000 이하	X	O
중국	'15.12.20.	기관	(중)해관, 국제무역촉진위 (한)세관, 상의	통일서식	1년	US \$700 이하	O	O
베트남	'15.12.20.	기관	(베)산업무역부 (한)세관, 상의	통일서식	1년	FOB \$600 이하	O	O
뉴질랜드	'15.12.20.	자율	수출자, 생산자	송품장/ 권고서식	2년	US \$1,000 이하	O	O
콜롬비아	'16.7.15.	자율	수출자, 생산자	통일서식	1년		O	O
중미	'19.10.1. (국가별상이)	자율	수출자, 생산자	통일서식	1년		O	O

원산지검증				부가가치비율계산방법			
검증		회신		계산방법	부가가치기준	기준가격	비고
검증방식	검증주체	회신기간	회신주체				
직접	수입국세관	30일 (서면요청)	조사대상자	집적법 공제법	RVC(45~80%)	조정가격	(혼합주스)공제법 80%이상
직접	수입국세관	30일 (서면요청)	조사대상자	공제법	RVC(45~55%)	FOB기초 조정된 관세 가격	-
간접	수출국세관 (수입국참관 가능)	15개월	수출국 세관	MC법	MC(30~60%)	공장도가격	비원산지재료 비율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원칙)간접 (예외)직접	(한)수출국세관 (아)검증기관,세관	2개월 (6개월 범위내 연장가능)	(한)한국세관 (아)발급기관	집적법 공제법	RVC(35~60%)	FOB	집적법과 공제법 중 국가 선택 (한국: 공제법)
	(한)수출국세관 (인)검증기관, 수입국세관	3개월	(한)한국세관 (인)발급기관	공제법	RVC(25~40%)	FOB (관세평가에 따라 결정)	(일반기준) CTSH+RVC35%
간접	수출국세관 (공동조사 가능)	10개월	수출국 세관	MC법	MC(20~50%)	공장도가격	비원산지재료 비율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간접, 직접	(간)수출국세관 (직)수입국세관	(간)150일 (직)90일 (서면요청)	(간)수출국세관 (직)조사대상자	집적법 공제법	RVC(20~50%)	FOB	대부분 공제법 (일부품목 선택 가능)
직접 (섬유)간접	(간)수출국세관 (직)수입국세관	(간)12개월이내 (직)30일 (서면요청)	(간)수출국세관 (직)조사대상자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	RVC(35~60%)	조정가치 순원가	(자동차) 순원가법 선택 가능
간접	수출국세관 (수입국 참관 가능)	10개월	수출국세관	MC법	MC(20~50%)	공장도가격	비원산지재료 비율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직접(호주 지원 요청 가능)	수입국세관	30일 (서면요청)	(간)호주 : 발급기관 (직)조사대상자	집적법 공제법	RVC(30~40%)	조정가치	비원산지재료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직접	수입국세관	30일 (서면요청)	조사대상자	MC법 집적법 순원가법	MC(10~65%)	공장도가격 (거래가격) 순원가	(자동차) 순원가법 선택 가능
간접 후 직접	수출국세관 수입국세관	6개월 (간접검증시)	수출국세관	공제법	RVC(40~60%)	FOB (관세평가에 따라 결정)	-
(원칙)간접 (예외)직접	(한) 세관 (베)발급기관	6개월 (간접검증시)	(한) 세관 (베)발급기관	집적법 공제법	RVC(40~45%)	FOB (관세평가에 따라 결정)	-
직접	수입국세관	90일 (서면요청)	조사대상자	집적법 공제법	RVC(30~40%)	FOB	-
간접, 직접	(간)수출국세관 (직)수입국세관	(간)150일 (직)30일 (서면요청)	(간)수출국세관 (직)조사대상자	집적법 공제법	RVC(30~60%)	조정가치	(자동차) 순원가법 선택 가능
간접, 직접	(간)수출국세관 (직)수입국세관	(간)150일 (직)30일 (서면요청)	(간)수출국세관 (직)조사대상자	집적법 공제법	RVC(20~50%)	FOB	-

참고문헌 및 사이트

〈참고 협정문〉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국,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국,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콜롬비아, 한-중미 FTA 협정문

〈참고 법령 등〉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FTA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참고 사이트〉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관세청 FTA포털) <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
(관세청 법령정보) <http://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청 유니패스) <http://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관세국경관리연수원) <http://cti.customs.go.kr>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기타〉

(사진 참고) www.freepik.com
(플래티콘) www.flaticon.com
<https://thenounproject.com>
(폰트) <http://sejongkorea.org/>

* 본 책자에 삽입된 그림 · 플래티콘(이모티콘)은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한 것입니다.



스스로 찾아가는
FTA 단계별
문고 답하기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인 김 정 울산세관장

발행처 울산세관 기업지원팀

제 작 최연재 통관지원과장

서희정, 서미경, 최진영, 조현경, 이영현, 원종찬

검 토 배상우, 김영호

문 의 울산세관 기업지원팀(052-278-2247)

펴낸곳 바니디자인(주)(052-276-6687)

본 책자의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원활한 FTA 활용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내용을 유권해석, 업무처리, 관세 관련 소송 등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스스로 찾아가는

FTA 단계별 묻고 답하기



울산세관 기업지원팀

(44736)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90번길 27